공공형어린이집 성과 평가 및 발전 방안 연구

유해미 김아름 박기원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머리말

0~5세아 무상보육의 실현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의 아동 학대 사건 등이 불거지는 등 영유아를 둔 부모님들의 기관 불신이 존재하고, 출산율 제고 등 정책효과도 의문시되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 민간 인프라 위주의 공급 구조에 기인한 것으로, 공보육 인프라 확충은 무상보육 시대에 보다 강조되고 있다. 지속적인 보육료 지원 확대로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은 급증하였으나, 이들 기관의 부모만족도는 전반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2014년 말 기준으로 88.2%를 차지하는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의 서비스 질적 개선은 무상보육 시대의 핵심적인 과제라고 하겠다. 그동안 정부는 이들 민간 인프라의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자 2011년 시범사업을 거쳐 2012년부터 공공형어린이집 제도를 운영해왔다.

이 연구는 무상보육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개선이 일차적인 과제임에 주목하여 공공형어린이집의 성과를 분석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공공형어린이집 제도 연혁을 다루고, 유사한 제도 인 서울형어린이집과 비교 분석하였으며, 공공형어린이집 이용 부모 707명의 서비스 만족도와 기관 운영 평가를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부모 697명과 비교하여 그 성과를 규명하였다. 이로써 아동이 행복하고 존중받으며, 부모들이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 확대되기를 기대해본다.

이 연구를 위해 설문조사와 심층면담에 응해주신 영유아를 둔 부모님들과 어린이집 원장님 등과 유익한 검토 의견을 주신 전문가들께도 감사를 전한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육아정책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님을 밝혀 둔다.

2015년 9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우남희**

차 례

요약1
I. 서론 9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9 2. 연구 내용 10 3. 연구 방법 10 4. 선행연구 검토 15
 Ⅱ. 공공형어린이집 인증 현황 및 기관 특성
 Ⅲ. 공공형어린이집 제도 변화와 유사기관 비교 39 1. 공공형어린이집 제도 변화 39 2. 유사기관 관련 규정 68 3. 종합 비교 및 시사점 76
IV. 공공형어린이집 성과 분석 90 1. 보육 공공성 인식 수준 90 2. 서비스 만족도 및 요구 97 3. 소결 112
V. 정책 방안 115 1. 운영 방향 115 2. 발전 방안 117
참고문헌 ····································
부록

표 차례

		응답자 이용기관 특성11
〈丑	I -3-2>	응답자 가구 특성12
〈丑	I -3-3>	설문조사 내용 - 어린이집 이용 부모 대상13
〈丑	I -3-4>	심층면담 시행 일정 및 내용-공공형/서울형어린이집 원장 대상 $\cdot 14$
〈丑	I -3-5>	심층면담 대상자 일반적 특성-공공형어린이집 원장14
〈丑	I -3-6>	심층면담 대상자 일반적 특성-서울형어린이집 원장14
〈丑	I -4-1>	어린이집 운영의 공공성 구성 요소17
〈丑	I -4-2>	공공형어린이집 성과 관련 선행연구20
〈丑	I -4- 3>	공공형어린이집 개선 방안 관련 선행연구23
〈丑	I -4-4>	서울형어린이집 성과 평가 관련 선행연구25
〈丑	I -4-5>	서울형어린이집 개선 방안 관련 선행연구27
〈丑	□-1-1 >	연도별 공공형어린이집 확충 (2011-2014)28
〈丑	□-1-2 >	시·도별 공공형어린이집 현황(2015) ······28
〈丑	□-2-1 >	규모별 공공형어린이집 정원/현원/보육교사 수(2015. 6) ············· 29
〈丑	□-2-2 >	시·도별 공공형어린이집 유형(2011-2015)30
〈丑	□-2-3 >	지역규모별/설립유형별 공공형어린이집 현황(2011-2015)31
〈丑	□-2-4 >	지역규모별 공공형어린이집 정원/현원/보육교사 수(2015. 6) \cdots 32
〈丑	□-2-5 >	공공형어린이집의 건물 소유 형태 (2011-2015) ·······32
〈丑	□-2-6 >	공공형어린이집의 1급 보육교사 비율 (2012-2015) ·······33
〈丑	□-2-7 >	공공형어린이집의 평가인증 점수 (2013-2015)33
〈丑	□-2-8 >	공공형어린이집의 취약보육 실시 비율 (2015) ······34
〈丑	□-2-9 >	공공형어린이집의 대표자와 원장 동일 여부 (2015. 6)35
〈丑	□-2-1 0	› 기관유형별 총 세입 대비 항목별 비율 (2015. 6) ······36
〈丑	□-2-11	› 기관유형/기관규모별 아동 1인당 기타 필요경비 지출(2015. 6) 36
〈丑	II-2-12 ⟩	기관유형/기관규모별 아동 1인당 기타 운영비 지출 비율(2015. 6)37
〈丑	Ⅱ-2-1 3>	공공형어린이집 건물 소유 여부별 아동 1인당 항목별 금액(2015) 38
〈丑	Ⅲ-1-1 >	공공형어린이집의 목표, 추진 절차, 방향 및 내용
〈丑	Ⅲ-1-2 >	공공형어린이집 선정대상 및 참여 요건 (2015)40

〈丑	. Ⅲ-1-3>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지유	원 현황 (201	5)	•••••	··· 4 0
〈丑	. Ⅲ-1-4〉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지유	원 변경사항	(2015)	••••••	··· 4 1
〈丑	. Ⅲ-1-5>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제외	대상 어린	기집 (2015) ······	•••••	··· 42
〈丑	. Ⅲ-1-6〉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제외	대상 주요	변경사항 (2012	-2015)	··· 45
〈丑	. Ⅲ-1-7>	공공형어린이집	세부 선정	기준 (2015)	•••••		··· 47
〈丑	. Ⅲ-1-8>	공공형어린이집	세부 선정	기준 주요	변경사항 (2012	-2015)	··· 51
〈丑	. Ⅲ-1-9〉	공공형어린이집	운영 기준	주요 변경/	사항 (2012-201 5)		··· 61
〈丑	. Ⅲ-1-10〉	>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내용	· 주요 변경	사항(2012-2015	5)	66
〈丑	. Ⅲ-2-1〉	서울형어린이집	공인 시설	현황(2014-2	2015)		··· 70
		서울형어린이집					
〈丑	. Ⅲ-2-3>	서울형어린이집	지원 내용		•••••		··· 76
〈丑	. Ⅲ-3-1>	서울형어린이집,	/공공형어린	<u></u> 이집 신청	대상 비교	•••••	··· 78
		서울형어린이집,					
		서울형어린이집,					
		서울형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					
		공공형어린이집					
		기관 선택 시 공					
· ·	•	공공형어린이집!					
		현재 이용 중인					
		공공형어린이집:				•	
		국공립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과거 이용기관유					
		기관 이용 중단					
		어린이집 입소 1					
		어린이집 이용시					
		어린이집 이용시					
		어린이집 이용시					
•		월 평균 추가 이					
〈丑	IV-2-8>	특별활동 참여 기	개수	•••••	•••••	•••••	·· 102

〈班 IV-2-9〉	특별활동 참여 선택 가능 여부	· 103
〈丑 IV-2-10〉	이용 만족도-전반(5첨 척도)	· 104
〈廷 IV-2-11〉	기관 이용 부모의 평가-운영 전반	· 104
〈	기관 이용 부모의 평가-건강·영양관리 부문(5첨 척도)	105
〈廷 IV-2-13〉	기관 이용 부모의 평가-보육환경/안전관리 부문(5첨 척도)	106
〈丑 IV-2-14〉	기관 이용 부모의 평가-보육교사/상호작용 부문(5첨 척도)	106
〈廷 IV-2-15〉	기관 이용 부모의 평가-운영 관리 부문(5첨 척도)	107
〈廷 IV-2-16〉	대기 신청기관 유무 및 대기 신청 중인 기관 수	108
〈廷 IV-2-17〉	대기 신청 기관유형(중복응답)	· 109
〈丑 IV-2-18〉	타 기관 대기 신청 이유	· 109
〈廷 IV-2-19〉	현재 이용 중인 어린이집의 불만족스러운 내용	· 110
〈廷 IV-2-20〉	현재 이용 중인 어린이집 권유 의향(5점 척도)	· 110
〈	어린이집 희망 이용-등원 시각(평일 기준)	· 111
〈	어린이집 희망 이용-하원 시각(평일 기준)	· 111
〈	국공립어린이집의 장점	· 112

그림 차례

16	요소	3대 영역과 구	보육 공공성의 2	I -4-1]	[그림
91		제도 이해 정	공공형어린이집	IV-1-1]	[그림
92		제도 인지 경	공공형어린이집	IV-1-2]	[그림
의향 여부 … 96		이용 부모의 =	공공형어린이집	IV-1-3]	[그림

요 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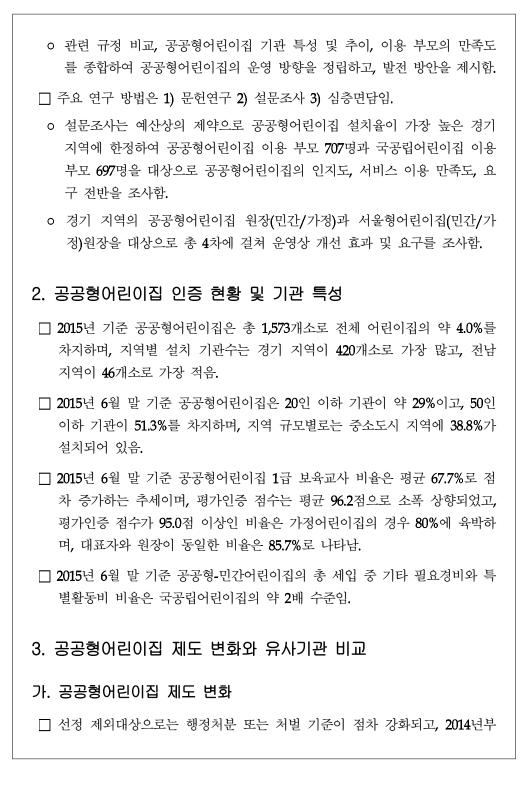
1. 서론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 출산율 제고와 여성고용 촉진 등 보육서비스의 정책 효과는 높은 서비스 질을 전제로 하므로 민간 인프라 공급 구조 하에서 보육료 지원을 확대하는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되어 왔음.
- □ 이에 따라 정부는 민간보육시설에 운영비를 지원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자 2011년 시범사업을 거쳐 2012년부터 공공형어린이집 제 도를 운영하고 있음.
- □ 공공형어린이집 제도는 관련 규정을 지속적으로 보완해왔음에도 불구하고 □ 성과가 의문시되며, 국공립어린이집의 대체 기능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되어 왔음.
- □ 이 연구는 공공형어린이집의 기관 특성을 파악하고, 특히 그 효과성이 미흡 하다고 지적되어 온 이용 부모의 만족도를 중심으로 성과를 분석함.

나. 연구 내용 및 방법

- □ 주요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음.
 - o 공공형어린이집 제도 연혁을 분석하되, 특히 선정 기준, 운영 기준, 지원내용, 사후관리 차원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서울형어린이집과 비교하여 보육공상성 차원의 시사점을 도출함.
 - o 공공형어린이집의 기관유형과 기관 규모, 운영 관리, 재무구조상 특성 및 추이를 분석하고 함의를 모색함.
 - o 공공형어린이집 이용 부모의 서비스 만족도와 운영 평가 결과를 국공립어 린이집 이용 부모와 비교하여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 제고 측면의 성과를 평가함.



터는 월 임대료 및 융자금 상환액 요건이 추가되었으며, 2013년부터 대표자와 원장 동일인 경우, 2014년부터 맞벌이 자녀 재원률에 각각 가점이 부여됨.
] 운영 기준은 2014년 이후 사후품질관리가 강화되고, 정보 공개 범위가 확대

□ 운영 기준은 2014년 이후 사후품질관리가 강화되고, 정보 공개 범위가 확대 되었으며, 2014년 선정 당시 기준으로 재평가를 시행하는 내용이 포함됨.

□ 지원 내용은 2012년 이후 운영비 지원이 기관규모에 따라 일괄 지급되었으나, 2015년에 보육교사 급여상승분, 유아반 운영비, 교육·환경개선비 항목으로 구분하여 지급되는 방식으로 전환함.

나. 유사 기관 관련 규정

□ 유사기관인 국공립어린이집과 서울형어린이집의 운영 기준 등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 o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시에는 원장 인건비 80%, 영아반 교사 인건비 80%, 유아반 교사 인건비 30%를 지원하며, 방과후 교사와 대체교직원, 시간제 보육교사 인건비가 지원됨.
- o 서울형어린이집의 선정 기준은 필수항목 이외에도 기본 요건(평가인증 점수), 안심보육(시설안전, 급식·위생), 회계 투명성, 보육인력 전문성 등을 평가하는 현장 실사의 비중이 높고, 운영 기준은 어린이집 관리시스템을 통한 회계관리가 강조되며, 지원 내용은 국공립어린이집에 준함.

다. 종합 비교 및 시사점

- □ 공공형어린이집 제도를 서울형어린이집 제도와 비교하면 주요 내용은 다음 과 같음.
 - o 공공형어린이집의 선정 기준은 안심보육과 회계 투명성 점검 위주의 현장 실사가 강조되는 서울형어린이집에 비해 한계를 지님.
 - o 공공형어린이집의 운영 기준은 서울형어린이집에 비해 안심보육 운영과 회계관리 사항이 미비함.
 - o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원 내용은 2014년까지 운영비 지원기준이 기관규모별로 일괄 적용되고 2015년부터는 특정 항목별로 구분되어 지급되나, 교사인건비는 물론 보조인력 지원이 이루어지는 서울형어린이집에 비해 지원 수

준이 미흡함.

4. 공공형어린이집 성과 분석

경기 지역의 공공형어린이집 이용 부모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용기관의 인지도 및 공공성 인식, 서비스 이용 실태 및 만족도 등을 파악하고, 이를 동일 지역의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부모와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가. 보육 공공성 인식 수준

- □ 공공형어린이집임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99.0%이며, 이들이 공공 형어린이집이라는 점이 기관 선택 시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한 비율은 85.3%로 나타나, 비교적 높은 인지도를 보임.
- □ 공공형어린이집 이용 부모가 이용 중인 공공형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 과 유사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80.6%이며,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변경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6.7%에 그치나, 해당 사유로는 비용 문제가 지적되므로 주목할 필요가 있음.
- □ 공공형어린이집의 장점으로는 '자녀가 안전하게 보호됨'이 37.0%, '질 높은 보육프로그램 운영됨'이 15.4%로 나타나며, 기관을 선택한 이유는 1순위 기준으로 '교사와 원장에 대해 신뢰가 가서'가 48.1%로 가장 높게 나타나 서비스 질적 개선 효과가 있다고 판단됨.
- □ 그러나 공공형어린이집 제도를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3.4%에 그 치며, '들어는 봤으나 내용을 잘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이 34.2%에 달하여 지속적인 제도 홍보 노력이 필요함.

나. 서비스 만족도 및 요구

1) 서비스 이용 실태 및 만족도

- □ 이용시간/이용비용
 - o 공공형어린이집의 평일 등원 시각과 하원 시각은 각각 평균 오전 9시와 오후 5시로 국공립어린이집과 유사하나, 월평균 추가 이용비용은 91,387원 으로, 국공립어린이집 62,259원에 비해 높게 나타남.

- o 공공형어린이집 이용 부모의 특별활동 참여 개수는 평균 2.14개로 국공립 어린이집과 동일하나, 기관유형별로 차이를 보여 공공형-민간어린이집은 2.56개이고, '모두 의무 수강해야 한다'는 응답률이 31.9%로 국공립어린이 집과 공공형-가정어린이집에 비해 높게 나타남.
- □ 공공형어린이집의 서비스 만족도와 운영 평가
 - o 부문별 서비스 만족도는 모든 항목에서 5점 만점에 4.20점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며, 특히 원장과 교사에 대해서는 각각 4.58점과 4.56점으로 가장 높 은 만족도를 보인 반면, 물리적 환경 부문(주변 환경과 시설 설비 등)에 대한 만족도는 각각 4.28점과 4.31점으로 낮은 수준을 보임.
 - マ공립어린이집 이용 부모와 서비스 만족도를 비교하면, 공공형어린이집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 아니며, 이용비용의 경우는 5점 만점에 4.33점으로 국공립어린이집 4.46점에 비해 낮고, 특히 해당 부모의 공공형-민간어린이집의 만족도는 4.24점으로 낮은 수준임.
 - o 공공형어린이집 유형별로 서비스 만족도를 비교하면, 공공형-민간에 비해 공공형-가정어린집의 서비스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남.
 - o 부문별 기관 운영 평가는 보육교사/상호작용 부문이 5점 만점에 4.58점으로 가장 높고, 보육환경과 안전관리 부문이 4.36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 o 기관유형별 운영 평가는 보육교사/상호작용, 보육환경/안전관리 부문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부모보다 공공형어린이집 이용 부모가 높게 평가하 였고, 건강·영양관리, 보육교사/상호작용, 운영관리 항목에서는 공공형-가 정어린이집이 공공형-민간어린이집보다 높게 평가됨.

2) 수요

- □ 공공형어린이집 이용 부모가 현재 이용 중인 기관 이외에 대기 신청을 해 둔 비율은 8.6%에 불과하였으며, 대기 기관 수는 평균 1.49개로서 국공립어 린이집 이용 부모의 평균 대기 기관 수인 1.45개와 유사한 수준임.
 - o 대기 신청 기관은 국공립어린이집이 61.6%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타 기관 신청 이유로는 '국공립 기관에 보내고 싶어서'가 22.2%로 나타나,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선호가 여전함을 알 수 있음.

□ 공공형-민간어린이집 이용 부모의 경우 타 기관 대기 신청 사유로서 '국공립 기관에 보내고 싶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39.4%에 달하는 반면, 공공형 -가정어린이집 이용 부모의 해당 응답은 전무하여 대조를 이룸.
다. 소결
□ 보육 공공성 차원에서 공공형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을 대체할 수준에 는 미치지 못하나, 인지도가 높고 국공립어린이집과 유사한 기관으로 인식 하는 수준도 대체로 높다고 판단됨.
□ 수요자의 이용 만족도와 운영 평가에 의하면, 교사 전문성 부문에서 개선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나, 이용비용 규제 측면에서 성과가 미흡함.
o 교사와 원장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가 가장 높고, 보육교사와의 상호작용에 대해서도 높은 평가를 보이나, 이용비용 측면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에 비해 서비스 만족도가 낮고, 추가 이용비용도 국공립어린이집보다 높게 나타남.
□ 공공형-가정어린이집은 공공형-민간어린이집에 비해 서비스 질적 개선 효과 가 크고, 특히 비용 부문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보임.
5. 정책 방안
가. 운영 방향
□ 공공형어린이집 제도의 목표는 국공립어린이집의 대체 기능이 아니라, 민간 인프라의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 제고임을 명확히 하고 해당 목표에 일관되 게 부합하는 제도 운영 및 개선을 모색하여 제도를 안정화해야 함.
□ 일차적인 과제는 보육 공공성의 핵심 요소인 이용비용 부문의 개선임.
□ 제도 운영상 기관유형과 기관규모에 따라 그 성과가 달리 나타나므로 차별
화된 접근이 필요함.

나. 발전 방안

- □ 지리적 접근성 격차 해소
 - o 공공형어린이집 인증 시에 서비스 형평성 제고를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설 치 현황 등을 고려하여 지역적으로 고른 선정이 이루어지도록 함.
- □ 선정 요건 및 제외대상 기준 강화
 - o 제외대상으로 보수교육 이수 항목은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임대료 및 융자 금 상환액이 보육료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점차 하향 조정함.
- o 가·감점 항목은 전반적으로 그 비중을 축소하되, 대표자와 원장이 일치할 경우 가점을 부여하는 현행 방식은 감점으로 전환하고, 교사 역량 강화를 위한 기관 자체 노력 등은 가점으로 새롭게 고려할만함.
- o 세부 기준으로는 보육료 등 경비 수납의 투명성을 평가하는 항목을 추가함.
- □ 운영 기준 보완
 - o 공공형-민간어린이집의 특별활동 관리를 강화하고, 기관 공급 수준에 따라 장기적으로 회계관리시스템을 도입하며, 회계관리의 투명성을 견지함.
 - o 희망 이용시간은 현행 종일제 보육시간과 유사한 수준이므로, 종일제 운영 이 준수될 수 있도록 자율공부모임 등 교사 교육 시에 이를 거듭 강조함.
- □ 운영비 지원 강화: 보조인력 인건비 지원
 - o 비담임교사와 보육 도우미에 대한 인건비를 추가 지원하여 교사 전문성을 제고하되, 지원 방식은 기관 여건에 따라 비담임교사와 보육 도우미를 선택하게 하거나 가정어린이집의 경우는 비담임교사를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함.
- □ 사후품질관리 내실화
 - o 자율공부모임에 3년 또는 4년 이상 참여한 경우는 교육 방식을 맞춤형 보육컨설팅 지원으로 전환하여 현장 적용성을 높이고, 해당 기관에 대해서는 지역 내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우선 지원하도록 조치함.
 - o 보육컨설팅 지원 시에 기존 보육활동 이외에도 안심보육 부문을 포함하여 추가 시행함.

o 재무회계컨설팅은 재무회계 코디네이터의 전문성이 견지될 수 있도록 안 정적인 풀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일회성 컨설팅에 그치지 않도록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함.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정부는 그동안 저출산 대응 등을 위해 기관보육 지원에 주력해왔으나 민간 인프라 공급 구조하에서 보육료 지원을 확대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그 효과는 의문시되고 있다. 보육정책의 효과 즉 아동 발달 증진, 여성고용 증진, 나아가 출산율 제고는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전제로 하며, 이는 보육 공공성 확보 를 통해 가능하므로 민간 인프라를 활용한 비용지원만으로는 그 효과를 기대하 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되어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민간시설에 추가 운영비를 지원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2011년 시범사업을 거쳐 2012년부터 공공형어린이집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공공형어린이집 제도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정책과 미묘한 긴장을 이루면서 공공성 측면에서 기관 성격의 모호함도 지속되는 가운데, 매년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등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추구해왔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에 의하면, 공공형어린이집의 성과는 추가 운영비 지원에 따른 교사 급여 개선에 주로 한정되며, 부모 만족도 차원의 개선 효과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지적된다. 단적으로 말해 공공형어린이집은 선정 기준 등 지속적인 제도 보완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민간 인프라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국공립어린이집의 대체 기능을 수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된다(서문희·이혜민·이원선, 2014: 83-87). 그뿐만 아니라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에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 주요 과제로서 명시되고, 연도별 달성 목표치에 공공형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과 함께 포함됨에 따라 그 방향성에 대한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즉, 공공형어린이집이 공공성 차원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을 대체하는 수준에 이르렀는지에 대한 보다 면밀한 평가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2011년 시범사업 기간을 포함하여 5년 차에 접어든 공공형 어린이집이 서비스 질적 수준 측면에서 어느 지점에 있는지를 따져볼 것이다. 또한, 이를 토대로 공공형어린이집 서비스 질적 수준의 보장을 위해 보완해야 할 선정요건, 운영 기준, 그리고 사후관리 차원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11년 이후 공공형어린이집 관련 규정의 변화를 검토하고, 해당 규정들을 서울형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과 비교하여 공공성 차원의 보완 사항들을 도출한다. 또한, 기존 연구에서 그 효과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고 지적되는 수요자 측면에 주목하여, 공공형어린이집 이용 부모의 서비스 만족도 및 운영 평가 결과를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부모의 그것과 비교할 것이다.

2. 연구 내용

이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11년 이후의 공공형어린이집 관련 규정 변화를 분석한다. 즉, 선정 기준 및 배점, 운영 기준, 지원내용, 사후관리 차원에서의 주요 개정 사항과 현황을 파악한다. 또한, 이를 서울형어린이집 제도와 비교 분석한 후 성과 차원의 시사점을 도출한다.

둘째, 공공형어린이집의 특성 및 그 추이를 분석한다. 2011년 이후 공공형어린이집의 기관유형, 시설규모, 재무 구조 등 변화 양상을 분석한 후 함의를 모색한다.

셋째, 보육서비스 질 제고 측면에서 공공형어린이집의 성과를 평가한다. 특히 기존 연구에서 효과성이 미흡하다고 지적되는 수요자 측면을 포괄하여 공공형 어린이집 이용 부모의 공공성 인식 수준을 파악하고, 이용 만족도를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부모의 이용 만족도와 비교·분석한다.

넷째, 관련 규정 비교와 부모 만족도 평가를 종합하여 공공형어린이집 제도 의 운영 방향을 정립하고, 발전 방안을 제시한다.

3. 연구 방법

공공형어린이집에 대한 성과 평가는 각각 객관적 차원과 주관적 차원에서 분석하며, 공급자(기관)와 수요자 측면을 동시에 포괄하여 종합적으로 접근한다. 즉, 공급자 측면에서 어린이집 인적 구조(교사의 자격요건, 급여 수준)와 운영 내용, 재정 구조 등을 국공립어린이집과 비교하여 기관 운영 차원에서 공공성

수준을 검토함과 동시에 공공형어린이집 이용 부모의 만족도를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부모의 만족도와 비교하여 공공성 수준을 평가한다.

가. 문헌연구

공공형어린이집에 대한 기존의 성과 평가와 개선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주요 내용을 정리하였다.

공공형어린이집의 관련 규정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각 년도 보육사업안내와 공공형어린이집 업무 매뉴얼을 검토하고, 공공형어린이집 관련 규정을 서울형어 린이집과 비교하기 위해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및 관련 지침을 살펴보았다.

나. 설문조사

1) 조사 대상 및 규모

설문조사는 예산상 제약으로 경기 지역에 한정하여 실시하였다. 경기 지역의 공공형어린이집 수는 2015년 6월 기준으로 전체 공공형어린이집의 약 27.0%인 420개소로서,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설치율을 나타낸다.

이들 공공형어린이집 이용 부모에 대한 표집은 기관 특성이 반영되지 않도록 기관별로 최대 **3**인으로 제한하여 무작위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와 함께 공공형어린이집의 공공성 수준을 국공립어린이집과 비교·평가하기 위해 동일 지역내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부모를 유사한 규모로 표집하였다.

조사 대상자의 이용기관으로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전체 응답자의 **49.6%(697**명), 공공형어린이집이 **50.4%(707**명)를 차지하며, 공공형어린이집 중 민간어린이집이 **60.7%(429**명), 가정어린이집이 **39.3%(278**명)를 차지한다(표 **I-3-1** 참조).

또한, 응답자의 가구 특성으로는 월 가구소득은 400만원~499만원이 18.8%(264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총 자녀 수는 평균 약 1.9명이다(표 I-3-2 참조).

〈표 I-3-1〉 응답자 이용기관 특성

단위: %(명)

구분	비율(수)	구분	비율(수)
기관유형		지역 규모	
국공립어린이집	49.6(697)	중소도시	78.0(1,095)

(표 I-3-1 계속)

(<u>파 1-9-1</u> 게득)			
구분	비율(수)	구분	비율(수)
공공형어린이집	50.4(707)	읍면지역	22.0(309)
민간어린이집	60.7(429)	자녀연령	
가정어린이집	39.3(278)	만0세	1.0(14)
정원규모		만1세	8.0(112)
20인 이하	19.9(279)	만2세	19.8(278)
21~49인 이하	20.9(293)	만3세	26.4(371)
50~97인 이하	33.2(466)	만4세	19.9(279)
98~123인 이하	12.8(180)	만5세 이상	25.0(350)
124인 이상	13.2(186)		
계(수)	100	0.0(1,404)	

〈표 I-3-2〉 응답자 가구 특성

단우	١.	0/1	(명)
ニエ		/01	0'

 구분	비율(수)	구분	비율(수)
월평균 소득		자녀 연령	
149만원 이하	2.0(28)	만0세	1.0(14)
150 ~ 199만원	5.1(72)	만1세	8.0(112)
200 ~ 249만원	6.5(91)	만2세	19.8(278)
250 ~ 299만원	12.7(179)	만3세	26.4(371)
300 ~ 349만원	14.2(200)	만4세	19.9(279)
350 ~ 399만원	12.8(180)	만5세 이상	24.9(350)
400 ~ 499만원	18.8(264)	평균	3.41
500 ~ 599만원	14.2(200)	 총 자녀 수	0.11
600만원 이상	13.5(190)	1명	29.7(417)
자녀 출생순위		=	
첫째	59.3(832)	2명	55.0(772)
둘째	32.4(455)	3명	14.0(197)
셋째	7.5(105)	4명 이상	1.3(18)
넷째 이상	0.9(12)	평균	1.9
계(수)	100.0	(1,404)	

2) 조사 내용

조사 내용은 보육서비스 이용 실태, 만족도 및 수요, 공공형어린이집 인지 및 국공립어린이집과의 차별화 인식, 기관 변경 의향 및 사유 등이다. 특히 서비스 이용 실태와 만족도는 공공형어린이집과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부모 모두에게 질문하여 이들 간의 인식 차에 주목한다.

조사 영역	조사 항목
어린이집 이용 현황	- 이용 기간 - 기관 이용시간 및 만족도/희망 이용시간 - 이용비용 - 특별활동 이용 현황(신청 개수, 이용비용, 선택 가능 여부) - 타 기관 이용 경험 여부 및 해당 기관유형/기관 변경 사유 - 현 기관의 대기 현황/추가 대기 현황 및 사유
공공형어린이집 인지도 및 공공성 인식	 현 기관의 공공형어린이집 인지 여부/기관 선택 시 영향력 정도 공공형어린이집의 장점 공공형어린이집 제도에 대한 이해 및 인지 경로 현 이용기관 선택 사유 공공형어린이집의 국공립어린이집 대비 인식 및 주요 내용 국공립어린이집 변경 의향 및 사유
서비스 이용 만족도 및 수요	- 서비스 이용 만족도 - 부문별 질 평가: 보육환경/건강·영양관리/안전관리/교사 및 상호 작용/운영 관리 - 현 기관 소개 의향 여부 - 국공립어린이집의 장점
응답자 및 자녀 특성	- 자녀: 연령/출생순위/총 자녀 수 - 부모: 학력, 취업상태, 직업, 월 가구소득, 거주지역

〈표 I-3-3〉설문조사 내용-어린이집 이용 부모 대상

다. 심층면담

심층면담은 공공형어린이집 성과에 대한 현장 평가와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공공형어린이집과 서울형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각각 시행되었다.

공공형어린이집의 경우는 설문조사와 동일하게 경기 지역의 공공형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시행되었으며, 운영 실태 및 요구의 차별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관유형별(민간/가정) 및 집단별로 진행되었다. 조사 내용은 공공형어린이집의 신청 동기 및 개선 효과 인식,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요건 및 운영 기준의 적절성 인식, 서비스 이용 만족도 및 기관 선호도, 운영상 애로사항 및 개선 요구등이다.

서울형어린이집의 경우 역시 운영 실태 및 요구의 차별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관유형별(민간/가정) 및 집단별로 진행하였다. 조사 내용은 서울형어린이집의 신청 동기 및 개선 효과 인식, 서울형어린이집 선정 요건 및 운영 기준의적절성 인식과 공공형어린이집과의 비교, 서비스 이용 만족도 및 기관 선호도인식, 운영상 애로사항 및 개선 요구 등이다.

〈표 I-3-4〉심층면담 시행 일정 및 내용-공공형/서울형어린이집 원장 대상

횟수	시기	대상	방식	조사 내용
1차	2015. 7. 21.	공공형-민간 어린이집 원장	집단 (3인)	- 공공형어린이집 신청 동기 및 개선 효과 -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요건 및 운영 기준의 적절성 인식
2 차	2015. 7. 22.	공공형 - 가정 어린이집 원장	집단 (3인)	- 서비스 이용 만족도 및 기관 선호도 인식 - 운영 상 애로사항 및 개선 요구
3차	2015. 8. 13.	서울형-민간 어린이집 원장	집단 (3 인)	 서울형어린이집 신청 동기 및 개선 효과 서울형어린이집 선정 요건 및 운영 기준의 적절성/ 공공형어린이집과의 비교
4 차	2015. 8. 17.	서울형-가정 어린이집 원장	집단 (3인)	- 서비스 이용 만족도 및 기관 선호도 인식 - 운영상 애로사항 및 개선 요구

심층면담은 총 4차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징으로 먼저 학력은 전문대졸 이상이고, 현재 어린이집의 근무 기간은 최단 8년에서 최장 25년 6개월이며, 전공 분야는 유아교육학, 보육학, 사회복지학 및 간호학 등이다.

〈표 I-3-5〉심층면담 대상자 일반적 특성-공공형어린이집 원장

구 분	기관 유형	기관 소재지	최종 학력	성별	연령	근무 기간(현)	총 경력(교사)	전공
1	민간	경기 하남시	대학원 이상	여	만 48세	20년	4년	유아교육
2	민간	경기 광주시	4년제대졸	여	만 47세	15년	3년	유아교육
3	민간	경기 하남시	대학원 이상	남	만 69세	24년 6월	24년 6월	유아교 <i>육</i> /보육 /사회복지
4	가정	경기 성남시	4년제대졸	여	만 45세	8년	9년 6월	사회복지/간호학
5	가정	경기 성남시	전문대졸	여	만 55세	15년	16년 8월	유아교육
6	가정	경기 성남시	4년제대졸	여	만 54세	13년	13년	유아교육

〈표 I-3-6〉심층면담 대상자 일반적 특성-서울형어린이집 원장

구	기관	기관 소재지	최종 한력	યુના	여러	근무	 총	 전공
분	유형	기판 오세시	최종 학력	성별	건녕	기간(현)	경력(교사)	신궁
1	민간	서울 노원구	대학원 이상	여	만 50세	15년 6월	27년 6월	유아교육
2	민간	서울 노원구	대학원 이상	남	만 54세	20년 2월	20년 2월	신학
3	민간	서울 노원구	4년제대졸	여	만 49세	11년 3월	23년	보육
4	가정	서울 도봉구	4년제대졸	여	만 48세	10년 4월	13년 2월	사회복지
5	가정	서울 중구	4년제대졸	여	만 47세	16년	23년	유아교육

(표 I-3-6 계속)

구 분	기관 유형	기관 소재지	최종 학력	성별	연령	근무 기간(현)	총 경력(교사)	전공
6	가정	서울 중랑구	전문대졸	여	만 58세	25년 6월	25년 6월	유아교육

4. 선행연구 검토

이 절에서는 공공형어린이집의 성과 평가를 위한 평가요소를 도출하기 위해 보육의 공공성 개념 및 구성 요소에 관한 논의들을 살펴보았고, 다음으로 공공 형어린이집의 성과 평가와 개선 방안을 다루었다. 또한, 민간 인프라의 공공성 제고 차원에서 유사한 사업 성격을 지닌 서울형어린이집 제도에 관한 선행연구 를 검토하고 시사점을 모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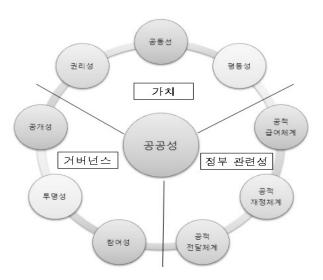
가. 보육 공공성의 구성 요소와 평가

1) 보육 공공성의 개념과 구성 요소

백선희(2011: 110)에 의하면, 보육의 공공성이란 "아동의 발달과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육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모든 아동과 가족들에게 국가와 사회의 공동 노력으로 그것을 권리로서 보장하고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이를 토대로 보육 공공성의 구성요소는 '가치-공동선, 권리성, 평등성', '정부관련성-공적 급여체계, 공적 전달체계, 공적 재정체계', '거버넌스-공개성, 투명성, 참여성'의 3가지 상위 차원 및 9가지 하위 차원으로 구분하였다(그림 I 4-1 참조). 보육 공공성의 하위 구성요소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가치라는 상위 차원의 하위체계인 공동선(common good)은 개인이 아닌 국가 등의 공동체를 위한 선(善)을 의미하며, 권리성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평등성은 기회와결과의 차별 모두의 배제를 의미한다. 다음으로, 정부 관련성 상위차원의 하위요소인 공적 급여체계는 보편적 급여체계를, 공적 전달체계는 서비스의 공급 및관리의 공적 진행을, 공적 재정체계는 재원 조달과 분배의 공공성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거버넌스의 하위차원 중 공개성은 정보뿐만 아니라 정책 또는 서비스의 과정 및 결과 공유를, 투명성은 공공정책 재정 및 인력 등의 투입에서의

투명성 보장, 참여성은 공공정책 집행에서 정부 및 관련 기관과 국민의 참여 보장이라고 제시한다.



자료: 백선희(2011).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 방안. p. 107.

[그림 1-4-1] 보육 공공성의 3대 영역과 구성 요소

안현미·김송이(2011: 112-114)는 "보육은 경제학적 공공재는 아니지만, 영유아뿐만 아니라 부모까지 포함하는 다수의 이해(interest)와 공정한 출발을 위한 보편적 권리로서 적극적인 국가 개입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또한, 보육의 공공성 확립 및 보장을 위해서는 "보육서비스 이용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공급자의 보육서비스 질을 담보할 수 있는 시스템"(안현미·김송이, 2011: 112-114)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미정(2012)은 우리나라 보육서비스의 공공성을 평가하기 위한 구성요소로 전달체계의 공공성, 정부의 보육재정 수준, 보육서비스 제공의 형평성, 그리고 보육서비스 내용 또는 질을 제시하였다. 각각의 요소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전달체계 공공성은 공보육의 확보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국공립어린이 집 공급 현황 즉, 전체 보육시설에서 국공립 보육시설이 차지하는 비율,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보육되는 영유아 비율 및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설치 현황 등을 의미한다. 둘째, 보육재정 수준은 보육예산의 증가폭 또는 국민 1인당 GDP 대 비 비율 등으로 측정되는, 보육 공공성 확보를 위해 투입되는 재정 규모라고 할 수 있다. 보육재정 수준에 대한 국제 현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OECD 국가의 국민 1인당 GDP 대비 보육예산 비율 평균은 0.7%이며, 1996년 유럽보육위원회 (ECNC: European Commission Network on Childcare)에서는 정부의 적절한 보육예산 수준을 최저 GDP의 1%로 제시하였다(OECD, 2008). 셋째, 보육서비스 제공의 형평성은 보육예산의 지역별 편차, 보육료 지원 및 가구소득별 비용부담에서의 편차, 보육시설 이용자와 미이용자 간의 정부지원 편차 등으로 설명될수 있다. 마지막으로 보육의 내용 또는 보육서비스 질은 보육시설 평가인증이나 교사의 처우 수준 등으로 대변될 수 있다.

양미선(2014)은 어린이집 유형별 보육서비스 공공성 정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어린이집 운영의 공공성 척도를 개발하였다. 여기에서 활용된 척도의 하위차원은 보편성, 공개성, 투명성, 참여성의 4하위 차원으로 각 차원의 내용은 <표 I -4-1>과 같다.

구성 요소	내용
비전성	일정 수준의 시설 및 환경에서 일정 수준의 교사가 모든 영유아 요구에
보편성	적합한 질이 보장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어린이집이 기관 운영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공개하여 수요자의 정보
고기서	접근성을 강화하고 정보 격차를 최소화하며, 정보 공개 요구에 적극적으
공개성	로 대처함으로써 이용자 및 외부로부터 신뢰감을 얻고, 공공서비스 제공
	기관의 역할을 다하는 것
투명성	어린이집 재정 운영의 투명한 관리
참여성	어린이집 운영자의 독단적인 결정에 의한 운영이 아닌 기관을 둘러싼 이해
	당사자 즉. 이용 부모. 보육교직원, 지역사회, 정부의 참여가 보장되는 것

〈표 I-4-1〉 어린이집 운영의 공공성 구성 요소

자료: 양미선(2014). 어린이집 운영의 공공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p. 35 <표 2>를 재구성함.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보육 공공성은 소득, 지역 등의 차별 없이 모든 영유아와 부모가 양질의 보육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평등한 기회 보장, 보육재정 및 서비스 전달체계에서의 공적 자원 투입, 인력 및 시스템 운영에서의 정부 참여의 활성화, 보육재정 및 서비스 제공 차원에서의 투명성, 그리고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보장된다고 할 수 있다.

2) 보육 공공성 평가

보육 공공성 추구의 주된 목표는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의 제고이므로 질적

차원의 논의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안현미·김송이(2011: 114)는 서울형어린이집이 공보육 인프라로서 적절한지를 평가하기 위해 보육서비스의 질적 분석 범주를 이용자 측면인 보육서비스의 접 근성과 공급자 측면인 운영의 투명성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지표를 제시하였다.1) 먼저 보육서비스 접근성 지표로는 "어린이집의 접근성, 보육비용의 접근성, 보 육교사 처우개선 및 전문성, 보육서비스 다양성, 보육서비스의 안정성"안현미· 김송이(2011: 114)이며, 운영의 투명성 지표로는 회계관리시스템 및 클린카드 이 용 실태 등을 제시하였다.

김정호(2011)는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 수단인 평가인증 제도는 자녀가 다니는 보육시설에 대한 부모의 알 권리 보장뿐만 아니라 정부의 2011년 시범사업인 공공형어린이집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연구자는 이외에도 보육료, 입소 아동 수, 취약계층 아동의 입소 비율, 부모에게 보육 정보제공 여부,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여부, 부모의 만족도, 보육교사 인건비 수준, 보육교사의 만족도, 정부의 관리비용 등과 같은 질적 평가지표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Howes, Philips와 Whitebook(1992) 그리고 Vandell과 Wolfe(2000)는 보육의 질은 구조적 측면(structural variables)과 과정적 측면(process variables)으로 정의될 수 있다고 보았다. 예를 들면, 보육 질의 구조적인 특성은 보육교사대 아동 비율, 학급 크기, 보육과정 및 교사 훈련 정도 등이며, 과정적인 특성은 교사의 준비도와 아동 발달에 적합한 반응 행동, 아동의 상호작용 행동, 아동에게 제공되는 언어 자극, 건강 및 안전 조치 등이라고 할 수 있다. Howes et al. (1992: 450)은 보육의 질에서 구조적인 측면은 통제 및 규제가 가능하나, 과정적인 측면은 전문가의 판단을 필요로 하는 등 비교적 규제가 불가능한 영역으로 보았다.

이한영(2014)은 Howes et al.(1992) 및 Vandell과 Wolfe(2000)의 관점을 바탕으로 공공형어린이집의 구조적인 보육의 질 평가 기준에 원장의 재직 경력, 교직원 자격, 근속비율, 보수교육 시행 등을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연구자는 공공형어린이집 보육서비스의 과정적인 질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보육교사의 질을 꼽았다. 이와 더불어 연구자는 공공형어린이집의 궁극적인 목표인 국공립어린이집 수준의 보육서비스

¹⁾ 안현미·김송이(2011)는 관련 선행연구의 이론적 근거를 토대로 '보육서비스 질 분석 범주와 분석지표'를 도출하였음.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보육교직원 대상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이를 위해 교직원 질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체계적인 정립 및 실행, 교사교육 프로 그램의 직급별, 직능별로의 구체화, 교사 교육에의 안정적인 참여를 위한 지원, 보육 교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전문가 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 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공공형어린이집 제도에 대한 부모의 인식 정도를 살펴본 임혜영·김현주(2014)의 연구에서는 어린이집 선택 시 부모가 가장 많이 고려하는 요인이 교사의 질적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공형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서류 업무 등 업무 부담이 다른 유형의 어린이집에 비해 과중하게 지워지는 면이 있으므로(서문희·양미선·도미향·송신영, 2011; 윤경미·전병주, 2014) 공공형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보육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보조교사 등과 같은 추가인력 지원 강화가 요구된다고 본다.

이상의 연구결과들을 종합하면, 보육서비스의 질적 평가 차원은 보육시설 환경, 투명한 운영, 보육교직원 전문성, 저렴한 보육비용, 맞춤보육 등 보육서비스다양성, 교사 대 아동 비율, 보육교사 훈련 과정 등으로 구성된다고 볼 수 있다.

나. 공공형어린이집의 성과 평가 및 개선 방안

1) 공공형어린이집의 성과

서문희 외(2011)는 2011년 7월부터 시작된 공공형어린이집 시범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였다. 긍정적인 성과로는, 공공형어린이집 선정으로 인한 유아 보육료 감소, 재정 상황 개선, 교사 급여 수준의 소폭 상향 등을 들고 있다. 반면에 공공형어린이집 전환에 따른 서류 업무 등 교사 업무량의 다소 증가, 부모의 서비스 개선에 대한 낮은 체감도 등 부정적인 측면도 지적된다.

또한, 서문희 외(2014)는 2012년에 본 사업으로 전환한 공공형어린이집 제도의 성과를 평가하였다. 이들은 2011년 공공형어린이집 도입 이후 선정 기준이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었으나, 일부 어린이집의 경우 필수 항목에서 점수가 미달하였음에도 가감 점수 적용으로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선정되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재정적 측면에서는 전반적으로 공공형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보다 수입이 낮고 상대적으로 취약하다고 평가하였으며, 운영 기준 측면에서는 서울형어린이집보다 공공형어린이집이 간소하다고 평가하였다.

한편, 양미선(2014)은 보편성, 공개성, 투명성 및 참여성 등과 같은 공공성 평가 척도를 통해 공공형어린이집이 공보육 인프라 성격을 지니는지를 평가하였다. 첫째, 보편성 측면은 국공립어린이집, 공공형 및 법인어린이집,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F=27.8, p<.001). 둘째, 공개성 측면은 공공형 및 국공립어린이집과 법인어린이집, 가정 및 민간어린이집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셋째, 투명성 측면은 국공립어린이집, 법인 및 공공형어린이집, 가정 및 민간어린이집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 넷째, 참여성 측면은 국공립어린이집, 공공형 및 법인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F=35.9, p<.001). 즉 공공형어린이집은 보육의 공공성을 가능하는 척도인 보편성, 공개성, 투명성 및 참여성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보다는 낮으나 법인어린이집과는 유사하거나 높은 수준을 보이며, 모든 차원에서 민간과 가정어린이집보다는 높은 수준을 보인다고 분석된다. 이상의 선행연구 결과를 표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I-4-2〉 공공형어린이집 성과 관련 선행연구

구분	평가 기준	성과 평가 결과
서문희·양미선· 도미향·송신영	- 선정 및 관리의 적절성 - 선정기관의 적절성 - 지원의 적절성	- 긍정적 성과: 유아 보육료 감소, 운영 비 지원으로 인한 재정 상황 개선, 교사 급여 증가
(2011)	- 효과성	- 부정적 성과: 교사의 업무량 증가, 부 모의 낮은 서비스 개선 체감도
서문화·이혜민· 이원선 (2014)	- 선정 기준 - 재정 구조 - 운영 기준 - 사후 관리	 긍정적 성과: 선정 기준의 공공성 유지 및 강화, 운영 기준의 간소 함, 사후관리 확대 및 강화 부정적 성과: 세부 선정 기준에서 가감 제도 등 점수 산정 문제, 국공립 대비 낮은 수입 및 취약한 재정 구조
양미선 (2014)	보편성공개성투명성참여성	국공립어린이집 대비 낮은 공공성 수준법인, 민간, 가정어린이집 대비 높은 공공성 수준

2) 공공형어린이집 개선 방안

서문희 외(2011)는 2011년에 수행한 공공형어린이집 시범사업의 효과 분석을 토대로 다음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기준에서 평가인증 점수 강화, 보육교직원(원장 및 교사)의 수상 실적, 보육료를 지원받는 아동 비율의 삭제, 비상재해대비시설 점수의 배점 강화 또는 필수 요건화, 1급 교사 비율 배점 간격 조정, 어린이집 설치 시 자기 자본 비율 강화, 시설 운영 자의 단일화 및 가·감점 항목 축소와 총점 항목의 비중 조정 등이다. 다음으로 운영 관리 기준 면에서는 정원 대비 현원 비율 기준의 상향 조정, 표준보육과정 운영 및 특별활동 지침 준수 강화, 재정운영의 투명화, 안전공제회 가입 의무화 및 정기 평가, 모니터링단 운영, 재무회계 지도 등 사후관리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비용 지원 및 수준면에서는 현원을 기준으로 한 구간 구분 방식 및 구간별 지원액에 대한 재고와 지원 수준의 현실화를 제시하였다.

이미정(2012)은 공공형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 수준의 공보육서비스 전달 체계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민간어린이집은 개인 소유로서 공보육 전달체계로 기능하는 데에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개 인 소유의 공공형어린이집을 법인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어린 이집의 표준보육과정 또는 평가인증 항목에서 실외놀이가 필수요건으로 규정되 어 있으므로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요건으로 놀이터 및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 를 의무 조항으로 규정하여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더불어,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기준에서 모든 항목 점수를 합한 총점제가 아닌, 항목별로 점수의 하한선을 두 어 한 항목이라도 하한선을 넘지 못하면 제외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을 제언하였 다. 둘째, 연구자는 보육재정 지원 면에서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교 사의 질 보장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공공형으로 선정된 어린이집에 운영비를 지 원하는 등의 포괄적인 형태가 아닌,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등 지원 항목이 명확 히 규정되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이와 함께 지원 금액의 현실화를 통해, 서비 스의 질과 재정적 측면이 비교적 안정적인 시설은 진입 의사를 낮추는 반면, 서 비스 질적 수준이 낮은 시설이 운영비를 지원받기 위해 진입하는 현재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셋째, 연구자는 지역 간 공교육 인프라 수준에서 차이가 나지 않도록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역별 고른 선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하 였다. 마지막으로,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 및 유지를 위해서는 공공형어린이집의 평가인증 점수를 상향 조정하는 등 엄격한 적용이 요구되며, 공공형어린이집 선

정 요건 중 하나인 보육교사 자격 또는 경력 등의 강화도 강조한다.

서문희 외(2014)는 공공형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에 준하는 서비스 질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현행 운영비 지원 수준을 보다 상향 조정하고, 이와 함께 선 정 기준, 운영 기준, 사후품질관리 강화가 요구된다고 주장하였다. 구체적인 개 선 사항으로 다음을 제시하였다. 첫째,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시 적용하는 선정 제외 기준을 강화하고 선정 기준 점수 산정에서 가·감점 항목 포함 여부 등 점 수 산정체계를 조정하여야 한다. 둘째, 취약보육 제공 등의 책무성 강화, 선정된 이후에도 선정 기준의 지속적 준수 및 엄격하고 투명한 재정 운영 등 공공형어 린이집의 운영 기준의 강화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공공형어린이집의 질 높은 보육서비스 유지를 위하여 교육 및 컨설팅 등의 사후관리 활성화가 필요한데 구체적으로, 재무회계, 정부의 운영 지침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운영 및 보육 과정에 대한 컨설팅 지원이 필요하다.

정두석(2014)은 경기도 공공형어린이집의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선정 기준, 운영비 지원, 및 홍보 부문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선정 기준 관련해서는 세부 선정기준 점수가 상향되어 공공형어린이집의 선정이 매우 저조하다는 점이 지적된다. 따라서 공공형어린이집 활성화를 위해서는 선정 기준 및 조건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공공형어린이집 지침의 잦은 변경으로 인해 공공형어린이집 진입을 희망하는 시설이 이를 준비하는 데 혼란을 겪으므로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 지침 및 매뉴얼을 제공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이와 함께 정두석(2014)은 보육료는 정부지원금과 동일한 반면, 보육교사의 월 급여는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의 1호봉 이상을 지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며, 그 결과 공공형어린이집에 대한 정부의 지원금보다 공공형어린이집 운 영비가 더 소요되는 재정 운영상 애로사항이 발생한다고 지적하고, 현실적인 수 준의 재정지원이 요구된다고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홍보 관련해서는 공공형어린 이집의 특성 및 기능을 영유아 부모가 쉽게 인지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 결과를 표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I-4-3〉 공공형어린이집 개선 방안 관련 선행연구

구분	개선 방안
정두석 (2014)	 진입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 공공형어린이집의 세부 선정 기준 점수 하향 조정 등 선정 기준의 조정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매뉴얼 제공 운영지원금의 현실화, 공공형어린이집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홍보 필요
서문희·양미선· 도미향·송신영 (2011)	 선정 기준 측면: 평가인증 점수 강화, 보육교직원 수상 실적 및 보육료 지원아 비율 삭제, 비상재해대비시설 점수 배점 강화, 1 급 교사비율에 대한 배점 간격 조정, 어린이집 설치 시 자기 자본 비율 강화, 시설 운영자 단일화 여부 항목 포함, 가감점 항목 축소, 총점 항목의 비중 조정 등 운영 관리 기준 측면: 정원 대비 현원 비율 기준 상향 조정, 표준보육과정 운영 및 특별활동 지침 준수 강화, 재정운영 투명화, 안전공제회 가입 의무화 및 정기 평가, 모니터링단 운영, 재무회계 지도 등의 사후관리 강화 비용 지원 및 수준 측면: 현원을 기준으로 한 구간 구분 방식 및 구간별 지원액에 대한 제고 및 지원액의 현실화
이미정 (2012)	 개인 소유의 공공형어린이집을 법인으로 전환 놀이터 및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의 의무화 선정 기준에서 총점제가 아닌 항목별 하한제로 전환 운영비 지원과 같은 포괄적 지원 형태가 아닌 보육교사 인건비지원 등 지원 항목 명확화 및 지원 금액의 현실화 공공형어린이집의 경우에는 평가인증 점수 별도로 상향 조정 보육교사의 자격 및 경력 요건 등의 강화
서문희·이혜민· 이원선 (2014)	 운영지원비 상향 조정 선정 및 운영 기준의 강화: 선정 제외 기준 강화, 가감점 항목 등에 대한 점수 산정체계 조정, 취약 보육 제공 등의 책무성 강화, 선정된 이후에도 선정 기준의 지속적 준수 및 엄격하고 투명한 재정 운영 등의 운영 기준 강화 서비스 질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재무회계, 정부의 운영 지침 및 보육과정에 대한 컨설팅 활성화

다. 서울형어린이집 성과 평가 및 개선 방안

1) 서울형어린이집 성과

안현미·박소영(2010)은 시설장, 보육교사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서울형어린이 집 보육서비스가 질적 차원으로 어느 정도 개선되었다고 느끼는지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시설장, 보육교사, 학부모 순으로 질적 개선 정도를 체

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형어린이집과 비서울형어린이집 보육교사 급여 만족도를 비교한 결과, 서울형어린이집 보육교사의 만족도(M=2.4, SD=0.7)가 비서울형어린이집 보육교사의 만족도(M=1.9, SD=0.8)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4.42, p<.001).2) 그 밖에도 서울형어린이집의 주요 정책 효과는 인건비 지원이며, 주치의제의 정책 효과가 가장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해(2011)는 서울형어린이집이 시설 환경, 보육교사 처우 측면에서는 부분적인 성과를 보이나, 보육서비스의 질, 양육자의 재정적 부담 완화 측면에서는 거의 효과가 없다고 평가하였다. 이를 토대로 보육서비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적 자금 투입뿐만 아니라 서비스 전달체계의 공공성이 담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안현미·김송이(2011: 114)는 보육서비스 질적 차원을 "어린이집의 접근성, 보 육비용의 접근성, 보육교사 처우개선 및 전문성, 보육서비스 다양성, 보육서비스 의 안정성" 등의 이용자 측면과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 등 공급자 측면으로 구분하고, 범주별로 서울형어린이집의 서비스 질적 향상 정도를 평가하였다.3) 그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서울형어린이집 접근성 면에서는 서울 지역의 전체 어린이집 중 서울형어린이집이 차지하는 비중은 42.1%로 비교적 접근성이 높다 고 분석하였다.4) 둘째, 보육비용 접근성 면에서는 서울시에서 서울형어린이집에 시설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서울형어린이집의 3세 이상 유아 보육료는 보육료 차액5)만큼 인하되어 영유아 부모의 보육비용 부담은 감소한 반면, 입학금, 특별 활동과 같은 기타 필요경비는 증가하여 보육비용 접근성의 개선 효과는 미흡하 다고 평가하였다. 셋째, 서울형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월 급여가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 수준으로 개선된 한편, 월 급여에서 보육교사의 경력 미산정 문제와 초과 근무 시 시설장에 의해 제공되어야 할 시간외근무수당이 대다수 민간·가 정어린이집에서는 미지급되는 문제점 등이 남아 있다고 지적하였다. 넷째, 위생 및 안전성 측면에서는 급간식 위생은 개선되었으나, 시설 안전 수준은 낮다고 평가하였다. 다섯째, 공급자 측면에서는 회계관리시스템 및 클린카드 등 투명성

²⁾ 매우 불만족(1), 대체로 불만족(2), 대체로 만족(3), 매우 만족(4)의 4점 척도임.

³⁾ 안현미·김송이(2011)이 제시한 보육서비스 질적 차원은 안현미·박소영(2010) 연구와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에서 운영하는 '안심보육 모니터링단 운영'이라는 프로젝트 수행 결과를 토대로 안현미·김송이(2011)이 재분석하여 도출한 것임.

⁴⁾ 이 수치는 2011년 6월 기준의 서울형어린이집 현황임(자료: 서울시 내부자료, 안현미·김송이, 2011, p. 121 <표 5>에서 재인용).

⁵⁾ 정부미지원시설 보육료 수납한도액과 정부지원 보육료 차이분을 부모가 부담하는 금액

제고를 위한 시스템이 정립되었다고 평가하였다.

김예린·김근세(2013)는 서울형 인증 및 미인증 어린이집 간에 제공되는 보육 서비스 구조, 과정 및 만족도 차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주요 결과로 첫째, 보육 서비스 구조면에서는 인증시설과 미인증시설 간의 급여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김예린·김근세, 2013: 151). 한편, 교사와 아동의 상호작 용, 교사의 직무만족 그리고 교사의 조직몰입이라는 하위 차원으로 구성된 보육 서비스의 과정적 측면에서는 교사와 아동의 상호작용 하위 측면인 '의미 있는 존재라는 인식 제공', '부모와의 의사소통 채널 존재' 등과 같은 감성 영역, '배 려적 사고의 훈련', '아동의 지속적 대화 유도'와 같은 인지·물리 영역, 그리고 '경험을 바탕으로 한 교육'과 같은 외부환경과의 연계 면에서 인증시설과 미인 증시설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다음으로, '직무에 대한 만족', '감독자에 대한 만족' 등에서 인증 여부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교사 조직몰입에서는 '직장에 대한 긍정적 인식', '시설에 대한 소속감' 등과 같은 영 역에서 인증시설과 미인증시설 간에 차이가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보육서비스 만족도는 "유형성, 신뢰성, 대응성, 확신성, 공감성의 5가지 영역과 전반적 만족 도"(김예린·김근세, 2013: 157)로 평가하였는데, 이들 중 유형성, 신뢰성, 공감성, 전반적 만족도 부분에서 차이를 보인다고 분석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 결과를 표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Ⅰ-4-4〉서울형어린이집 성과 평가 관련 선행연구

저자	평가 기준	성과 평가 결과
안현미.	- 보육서비스질적 체감도	- 시설장 > 보육교사 > 학부모
박소영	- 급여 만족도	- 서울형 보육교사 > 비서울형 보육교사
	거케중기 이사	- 가장 효과적인 정책: 인건비 지원
(2010)	- 정책효과 인식	- 가장 비효과적인 정책: 주치의제
	- 시설환경	- 긍정적인 성과: 시설환경 개선, 보육교사
김종해	- 보육교사 처우	처우 개선
(2011)	- 보육서비스 질	- 부정적인 성과: 보육서비스의 질,
` '	- 보육비용	양육자의 재정 부담
 김예린·		- 보육서비스 구조 측면인 급여 수준의
	- 보육서비스 구조, 과정	개선
김근세	및 만족도	- 감성, 물리, 외부환경 등의 보육서비스
(2013)		세부과정 측면의 개선

(표 I-4-4 계속)

	•	
저자	평가 기준	성과 평가 결과
안현미· 김송이 (2011)	- 보육서비스 질의 이용자 측면 - 보육서비스 질의 공급자 측면	- 이용자 측면: 다소 높아진 어린이집 접근성, 보육료 차액만큼의 부모 부담 감소 등 보육비용의 접근성 향상, 월 급여 상승 등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효과, 급간식 위생 등의 보육 안정성 증가, - 공급자 측면: 회계관리, 클린카드 시스템 정립 등의 성과 달성

2) 서울형어린이집 개선 방안

김재환(2009)은 보육교사와 시설장의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에 대한 인식 경향을 파악하여 다음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안심보육 평가 기준 중에서 1시설 1인 주치의제를 적용할 경우 의료기관에 대한 현황 조사 등을 통한 실현가능성 여부 고려, 보육교사 승급 및 보수교육의 기회 확장, 맞춤보육 관리·지원, 서울형어린이집의 융통적인 운영을 위해 회계관리 투명성을 위한 클린카드실시 등의 규제 완화, 전문성을 갖추고 질적으로 우수한 교사를 확보하기 위한다양한 유인책 또는 성과급 제공, 그리고 평가인증과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제도의 단일화를 통한 공공기관 및 보육시설의 행정업무 완화 등을 제안하였다.

안현미·박소영(2010)은 서울형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질적 개선 방안을 보육서비스 내실화 방안과 서울형어린이집 장기 발전 방안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구체적인 내실화 방안으로는 서울형어린이집 서비스 접근성 확대, 기타 비용에 대한 상한제 도입, '365일 통합서비스 거점 어린이집' 시범사업을 통한 맞춤 보육시행, 회계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규칙적인 교육 지원 제공 등의 보육서비스 인프라 내실화 방안과 자율장학제도 지원 체계 구축, 지역 내 보건소 중심의 의료진(주치의 및 간호사) 협조체계 구축, 식재료 공동구매 심의위원회 구성, 서울형어린이집 평가 정례화 등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서울형어린이집 장기발전 방안으로는 서울형어린이집 운영지원 제어탑 구축, "서울형표준보육서비스모델" 개발, 서울형어린이집 평가체계 개발, 서울형어린이집 교사 지원을 위한교육 지원 서비스 정례화, 보육담당 공무원 교육, 서울보육포털 정보 제공 확대등을 제안하였다(안현미·박소영, 2010: 161-166).

윤경준·지경빈(2011)은 보육서비스 질 개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보육교사의 자질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서울형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이직 의도를 중점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통해 서울형어린이집의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서울형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이직할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는 보육교사의 전공, 하루 평균 휴식을 취하는 시간, 월 평균 야근 일수, 1년 동안의 휴가 일수, 일주일 동안의 퇴근 후평균 재택 근무시간 및 급여여 만족도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연구진은 보육교사 보수 지급 기준의 상향 조정 등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상의 선행연구 결과를 표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Ⅰ-4-5〉서울형어린이집 개선 방안 관련 선행연구

저자	개선 방안
	- 1시설 1인 주치의제 적용 시 주변의 의료기관 현황 등에 대한 선
	행 조사 시행
김재환	- 보육교사 승급 및 보수교육 기회의 확장
(2009)	- 질적으로 우수한 교사 확보를 위한 다양한 장려책 및 성과급 제공
,	- 평가인증과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제도 단일화를 위한 공공기관 및
	보육시설 행정업무 조정
안현미·박소영 (2010)	 보육서비스 인프라 내실화 방안: 서울형어린이집 서비스 접근성확대, 기타비용에 대한 상한제 도입, '365'일 통합서비스 거점어린이집시범사업을 통한 맞춤보육실시 및 회계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규칙적인 교육 지원 제공 서울형어린이집 보육서비스 과정 내실화 방안: 자율장학제도 제원체계 구축, 지역 내 보건소 중심의 의료진(주치의 및 간호사) 협조체계 구축, 식재료 공동구매 심의위원회 구성 및 서울형어린이집평가 정례화 서울형어린이집 장기 발전 방안: 서울형어린이집 운영지원 제어탑구축, '서울형표준보육서비스모델'개발, 서울형어린이집 평가 체계개발, 서울형어린이집 교사 지원을 위한 교육 지원 서비스 정례화, 보육담당 공무원 교육, 서울보육 포털 정보 제공확대 등
윤경준·지경빈	- 보육교사의 질적 수준 개선 방안: 보육교사 보수지급 기준의 상향
(2011)	조정, 국공립과 민간어린이집 간의 보육교사 처우 격차 해소

Ⅱ. 공공형어린이집 인증 현황 및 기관 특성

이 장에서는 공공형어린이집의 인증 현황을 살펴보고, 기관유형 및 규모 등 기관 특성과 보육 공공성의 주된 요소인 기관 평가(평가인증), 취약보육 등 운영 사항,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과 일반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 대비 재무구조의 차별성을 파악하였다.

1. 공공형어린이집 인증 현황

공공형어린이집은 2011년 시범사업을 거쳐 2013년에는 전년 대비 약 2배 가까운 사업 확장을 통해 2014년에는 총 1,621개소 8만7천명이 이용하였고, 해당예산은 2012년 170억 원에서 2014년 385억 원으로 약 2배 이상 증가하였다(보건복지부, 2015c, 표 Ⅱ-1-1 참조). 공공형어린이집 지원은 기관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이루어지며, 2013년에는 정원 구간을 기존 6개에서 10개로 세분화하고, 지원 수준도 상향 조정되었다(보건복지부, 2015c).

〈표 Ⅱ-1-1〉 연도별 공공형어린이집 확충(2011-2014)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선정 현황	679개소	778개소	1,492개소	1,621개소
이용 아동	32천명	41천명	75천명	87천명
예산 현황	80억	170억	334억	385억

자료: 보건복지부(2015c). 내부자료.

〈표 II-1-2〉시·도별 공공형어린이집 현황(2015)

구	부	대	인	광	대	울	세	경	강	·충	충	전	전	경	경	제	——
분	산	구	천	주	전	산	종	기	원	북	남	북	남	북	남	주	계
																	1,573

자료: 한국보육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cpi.or.kr, 검색일 2015년 7월 26일).

2015년 6월 말 기준 공공형어린이집 수는 총 1,573개소이며, 시·도별 설치 현

황은 위의 <표 Ⅱ-1-2>와 같다. 경기 지역의 기관 수가 420개소로 가장 많고 경 북과 경남 지역이 각각 101개소와 110개소로 많은 편이며, 세종시와 전남 지역 은 각각 10개소와 46개소에 불과하여 지역적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난다(한국보 육진흥원 홈페이지, 검색일 2015년 7월 26일).

2. 기관 특성 및 추이

공공형어린이집 인증기관의 기관유형별, 지역 규모별 추이 변화와 운영 관리 상의 주요 특성들을 파악하면 다음과 같다.

가. 기관유형/지역규모별 특성

2015년 기준 6월 말 기준으로 공공형어린이집 규모별 정원, 현원, 그리고 교 사 수를 살펴보면 다음 <표 Ⅱ-2-1>과 같다.

〈표 II-2-1〉 규모별 공공형어린이집 정원/현원/보육교사 수(2015. 6)

단위: 개소, 명, %

————	20인	21~	36~	50~	63~	77~	87~	98~	112~	124인	حاا
구분	이하	35인	49인	62인	76인	86인	97인	111인	123인	이상	계
시설 수	498	105	205	121	116	104	108	140	41	135	1,573
(비율)	31.7	6.7	13.0	7.7	7.4	6.6	6.9	8.9	2.6	8.6	100.0
정원											
평균	18.6	29.3	42.8	56.1	69.2	81.3	91.8	101.4	116.9	149.5	-
(표준편차)	2.3	3.8	4.6	3.9	4.0	3.0	3.1	4.0	3.2	26.0	-
(수)	9,250	3,072	12,157	6,788	8,028	8,451	17,074	14,193	4,793	20,183	103,989
현원											
평균	16.3	25.8	37.3	48.6	60.2	70.2	81.3	88.9	98.8	130.9	-
(표준편차)	3.6	5.5	6.9	8.8	8.1	10.9	12.2	14.1	17.0	28.4	-
(수)	8,096	2,706	10,582	5,882	6,984	7,303	15,115	12,449	4,052	17,669	90,838
보육교사 수											
평균	3.1	4.0	5.0	6.2	7.3	8.0	9.0	9.7	10.7	13.3	-
(표준편차)	1.0	1.0	1.3	1.3	1.5	1.2	1.5	2.0	2.5	3.0	-
(수)	1,552	423	1,425	745	843	827	1,682	1,354	440	1,796	11,087

주: 1) 이 자료는 가정, 민간, 법인단체등 및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이 모두 포함된 수치임.

자료: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2015). 공공형어린이집 현황 자료(2015년 6월 말 기준).

²⁾ 서문희 외(2014). 공공형어린이집 제도 개선 및 발전 방안. p. 10 <표 Ⅱ-1-1>를 2015 년 자료로 재구성함.

우선 2015년 6월 기준 공공형어린이집 수는 총 1,573개소로, 전체 어린이집 43,742개소의 약 4.0%를 차지한다(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2015, 표 Ⅱ-2-1 참조). 이들 중 20인 이하 공공형어린이집의 비율이 가장 높아 31.7%(498개소)를 차지하고, 이들 기관의 평균 정원과 현원은 각각 18.6명과 16.3명이며, 50인 미만 기관 수는 전체의 51.4%를 차지한다. 20인 이하 기관 수의 비율은 2014년 4월 기준으로 34.6%(서문희 외, 2014: 10)로 나타나, 2015년에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87인 이상 기관 수의 비율은 27%로 2014년 24.1%(서문희 외, 2014: 10)에 비해 대비 소폭 증가하였다. 이들 기관의 증가에 따라 2015년 정원수와 현원 수는 87인 이상 기관에서 급증하여 124인 이상 기관의 총인원은 각각 20,183명과 17,669명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변화는 2015년 운영비 지원 방식이 기존의 규모에서 아동 수로 변경된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보인다.

다음으로 2015년 기준 공공형어린이집에 속한 보육교사는 총11,087명으로, 기관 규모별로 20인 이하 기관의 경우는 평균 3.1명이고, 124명 이상 기관의 경우는 13.3명으로, 2014년 대비(서문희 외, 2014: 10) 21인~76인 이하 기관에서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시·도별 공공형어린이집의 기관유형 분포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가정어린이집이 민간어린이집의 수의 약 절반 수준이며, 2015년 기준으로 가정 498개소와민간 1,064개소로 나타난다(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각 년도, 표 II-2-2 참조). 전체 어린이집의 해당 기관 비중을 고려하면, 대부분 지역에서 가정어린이집의제도 유입이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지역별로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공공형어린이집 수가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경기 지역의 경우는 2014년 이후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의 인증 기관 수가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설치율이 낮은 지역의 경우 가정어린이집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성을 보인다.

〈표 II-2-2〉 시·도별 공공형어린이집 유형(2011-2015)

단위: 개소

시도		2011			2012			2013			2014			2015			계	
기도	전체	만난	기정	전체	만난	기정	전체	만간	기정	전체	만난	기정	전체	만난	기정	전체	만난	기정
전체	695	463	232	776	523	253	1,473	955	518	1,613	1,085	528	1,562	1,064	498	6,119	4,090	2,029
부산	20	9	11	48	18	30	84	31	53	98	41	57	92	41	51	342	140	202
대구	46	40	6	55	48	7	86	71	15	96	78	18	95	78	17	378	315	63
인천	33	23	10	30	21	9	69	49	20	79	57	22	79	57	22	290	207	83

/		<u>' '' '</u>																
시도		2011			2012			2013			2014			2015			계	
기도	전체	만간	기정	전체	만간	기정	전체	만간	기정	전체	만난	기정	전체	만난	기정	전체	만간	가정
광주	22	19	3	26	21	5	40	29	11	47	36	11	44	33	11	179	138	41
대전	44	31	13	47	33	14	87	56	31	94	66	28	86	61	25	358	247	111
울산	41	28	13	39	27	12	59	42	17	60	45	15	57	44	13	256	186	70
세종	-	-	-	2	1	1	8	5	3	10	7	3	10	7	3	30	20	10
경기	188	83	105	196	96	100	396	179	217	431	206	225	415	201	214	1,626	765	861
강원	32	22	10	43	28	15	89	53	36	92	58	34	91	57	34	347	218	129
충북	34	29	5	31	27	4	67	57	10	72	64	8	71	63	8	275	240	35
충남	24	20	4	28	24	4	96	65	31	95	66	29	94	66	28	337	241	96
전북	41	23	18	40	22	18	71	43	28	83	54	29	81	54	27	316	196	120
전남	27	22	5	29	25	4	46	41	5	48	43	5	48	43	5	198	174	24
경북	41	39	2	49	47	2	79	78	1	104	102	2	101	100	1	374	366	8
경남	74	50	24	83	61	22	117	90	27	113	88	25	110	87	23	497	376	121
제주	28	25	3	30	24	6	79	66	13	91	74	17	88	72	16	316	261	55
				-												•		

주: 1) 서문희 외(2014). 공공형어린이집 제도 개선 및 발전 방안. p. 11 <표 Ⅱ-1-2>를 수정·보완함.

〈표 Ⅱ-2-3〉지역규모별/설립유형별 공공형어린이집 현황(2011-2015)

단위: 개소(%)

																	- 11-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계	
丁证	전체	만	가정	전체	만간	기정	전체	만간	가정	전체	만난	가정	전체	만간	가정	전체	만간	가정
시설수																		
대도시	191	144	47	223	159	64	384	258	126	431	299	132	412	290	122	1,641	1,150	491
중소도시	310	161	149	313	169	144	584	306	278	625	342	283	606	335	271	2,438	1,313	1,125
농어촌	194	158	36	240	195	45	505	391	114	557	444	113	544	439	105	2,040	1,627	413
전체	695	463	232	776	523	253	1,473	955	518	1,613	1,085	528	1,562	1,064	498	6,119	4,090	2,029
비율																		
대도시	27.5	31.1	20.3	28.7	30.4	25.3	26.1	27.0	24.3	26.7	27.6	25.0	26.4	27.3	24.5	26.8	28.1	24.2
중소도시	44.6	34.8	64.2	40.3	32.3	56.9	39.6	32.0	53.7	38.7	31.5	53.6	38.8	31.5	54.4	39.8	32.1	55.4
농어촌	27.9	34.1	15.5	30.9	37.3	17.8	34.3	40.9	22.0	34.5	40.9	21.4	34.8	41.3	21.1	33.3	39.8	20.4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Z)	TT =1	<u>ما رہ</u>	204.4	-7-	フラン	1-1-1	71 -	1) —	1] >]	ו לדו	ו ונ	괴시시		40	_	- 4 0	=	ムコ

주: 서문희 외(2014). 공공형어린이집 제도 개선 및 발전 방안. p. 12 <표 Ⅱ-1-3>를 수정· 보완함.

자료: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각 년도). 공공형어린이집 현황 자료.

지역규모별로는 2012년 이후 중소도시 지역의 기관 비중이 가장 높은 경향을 보이는 반면 대도시 지역은 가장 낮아, 2015년 기준으로 각각 38.8%와 26.4%를 나타낸다(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각 년도, 표 II-2-3 참조). 기관유형 분포는

²⁾ 이 자료는 가정 및 민간어린이집만 포함된 수치임. 자료: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각 년도). 공공형어린이집 현황 자료.

지역별로 차이를 보여 중소도시 지역의 경우 가정어린이집의 비율은 50%를 넘어서는 반면, 농어촌 지역의 경우는 민간어린이집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 한편 지역규모별 정원, 현원, 보육교사 수는 중소도시 지역이 약간 적은 경향을 보이나, 대체로 유사한 수준을 보인다.

〈표 Ⅱ-2-4〉지역규모별 공공형어린이집 정원/현원/보육교사 수(2015. 6)

단위: 명(개소)

구분		평균(표준편차)		(수)
一一	정원	현원	교사 수	(+)
전체	59.3(41.9)	51.7(37.7)	6.3(3.6)	(1,562)
대도시	61.0(39.9)	54.5(37.6)	6.7(3.6)	(412)
중소도시	47.9(38.1)	43.6(35.3)	5.5(3.3)	(606)
농어촌	70.8(44.0)	58.8(38.6)	7.0(3.7)	(544)

주: 서문희 외(2014). 공공형어린이집 제도 개선 및 발전 방안. p. 13 <표 Ⅱ-1-4>를 2015년 자료로 재구성함.

자료: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2015). 공공형어린이집 현황 자료(2015년 6월 말 기준).

공공형어린이집의 건물 소유 형태를 살펴보면, 월세 비율은 2013년 이후 소폭 감소하여 2015년에 10.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각 년도). 해당 비율은 가정에 비해 민간어린이집에서 높게 나타나 2015년 기준으로 14.3%이다.

〈표 II-2-5〉 공공형어린이집의 건물 소유 형태(2011-2015)

단위: %(개소)

												1 , - (11 —)
 구분								집		가정	, –	' H
丁亚	자가	전세	월세	계(수)	자가	전세	월세	계(수)	자가	전세	월세	계(수)
2011	83.3	4.6	12.1	100.0(695)	80.3	3.7	16.0	100.0(463)	89.2	6.5	4.3	100.0(232)
2012	86.0	3.7	10.3	100.0(776)	82.8	3.3	14.0	100.0(523)	92.5	4.7	2.8	100.0(253)
2013	85.1	2.5	12.4	100.0(1,473)	80.2	2.9	16.9	100.0(955)	94.0	1.7	4.2	100.0(518)
2014	88.2	1.5	11.0	100.0(1,613)	83.4	1.8	14.7	100.0(1,085)	96.0	0.8	3.2	100.0(528)
2015	87.5	1.7	10.8	100.0(1,562)	83.6	2.2	14.3	100.0(1,064)	96.0	0.8	3.2	100.0(498)

주: 서문희 외(2014). 공공형어린이집 제도 개선 및 발전 방안. p. 15 <표 Ⅱ-1-8>를 수정· 보완함.

자료: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각 년도). 공공형어린이집 현황 자료.

나. 운영관리 특성

운영관리 측면에서 보육서비스 질과 직결되는 1급 보육교사 비율, 평가인증

점수와 취약보육 시행 현황, 대표자와 원장 동일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급 보육교사의 비율은 2012년 이후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2015년에는 평균 67.7%이고, 70%~100% 미만 24.3%, 100%가 19.4%를 차지한다(한국보건복 지정보개발원, 각 년도). 2012년 대비 2015년 평균 1급 보육교사의 비율은 약 7.0%p 상승한 데 그쳐 추가 운영비가 인건비 지출에 주로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그 증가세는 미흡한 수준이다.

〈표 II-2-6〉 공공형어린이집의 1급 보육교사 비율(2012-2015)

단위: %(개소)

										/ = (- 11 /
	구분	 없음	10~30%	30~50%	50~70%	70~100%	100%	계(수)	평균	표준 편차
	丁七	故古	미만	미만	미만	미만	100%	州(十)	정진	편차
٠	2012	2.3	7.7	15.9	40.7	20.4	13.0	100.0(776)	60.3	24.0
	2013	1.4	3.1	13.4	43.9	23.3	15.1	100.0(1,473)	64.8	21.7
	2014	0.9^{1}	3.0	11.3	41.2	25.7	17.9	100.0(1,613)	67.3	21.6
	2015	1.0^{2}	3.0	11.0	41.2	24.3	19.4	100.0(1,562)	67.7	22.0

- 주: 1) 2014년의 1급 보육교사 비율 '없음'칸에는 보육교사 및 1급 보육교사 수가 조사되지 않은 어린이집 3곳을 포함한 수치임.
 - 2) 2015년의 1급 보육교사 비율 '없음'칸에는 보육교사 및 1급 보육교사 수가 조사되지 않은 어린이집 2곳을 포함한 수치임.
 - 3) 서문희 외(2014). 공공형어린이집 제도 개선 및 발전 방안. p. 14 <표 Ⅱ-1-6>을 수 정·보완함.
 - 4) 보육교사 수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기준임.
 - 5) 보육교사 1급은 최종자격 기준이며, 보육교사 1급 최종자격은 2012년도 이상 자료만 존재함.

자료: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각 년도). 공공형어린이집 현황 자료.

공공형어린이집의 평가인증 점수를 살펴보면, 2013년에 평균 94점이었으나 2015년에는 95점 이상의 비율은 71.8%이고, 평균은 96.2점으로 소폭 상향되었음을 알 수 있다(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2013-2015). 기관유형별로는 매년 95점 이상 기관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특히 2015년 가정어린이집의 해당비율은 8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II-2-7〉 공공형어린이집의 평가인증 점수(2013-2015)

다위: %(개소) 전

						71. 70(711土7, 口
구분	79점 이하	80~89점	90~94점	95~100점	계(수)	평균(표준편차)
전체						
2013	0.1	8.0	45.5	46.5	100.0(1,471)	94.0(4.8)

(표 **Ⅱ-2-7** 계속)

(H H-Z-7 /7	17)					
구분	79점 이하	80~89점	90~94점	95~100점	계(수)	평균(표준편차)
2014	_	2.0	31.7	66.3	100.0(1,606)	95.7(2.9)
2015	_	1.1	27.1	71.8	100.0(1,558)	96.2(2.7)
민간						
2013^{1}	0.1	9.3	49.9	40.6	100.0(953)	93.5(5.4)
$2014^{2)}$	_	2.6	35.6	61.8	100.0(1,080)	95.4(2.9)
2015^{3}	_	1.5	30.8	67.7	100.0(1,060)	95.9(2.8)
가정						
2013	_	5.4	37.3	57.3	100.0(518)	94.9(3.1)
2014^{4}	_	0.8	23.6	75.7	100.0(526)	96.4(2.7)
2015	-	0.2	19.3	80.5	100.0(498)	96.8(2.4)

- 주: 1) 2013년 민간어린이집 중 평가인증점수를 보고하지 않은 2개소를 제외한 수치임.
 - 2) 2014년 민간어린이집 중 평가인증점수를 보고하지 않은 5개소를 제외한 수치임.
 - 3) 2015년 민간어린이집 중 평가인증점수를 보고하지 않은 4개소를 제외한 수치임.
 - 4) 2014년 가정어린이집 중 평가인증점수를 보고하지 않은 2개소를 제외한 수치임.
 - 5) 서문희 외(2014). 공공형어린이집 제도 개선 및 발전 방안. p. 13 <표 **Ⅱ-1-5>**를 수정·보완함.
 - 6) 평가인증 점수 정보공시 기준과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기준 일자가 다르며 이 자료 에는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선정된 이후의 재인증 점수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기준보다 낮은 90.0점 미만의 점수를 가진 기관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음.
- 7) 정보공시 기준의 평가인증 점수는 2013년 이상만 존재함. 자료: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2013-2015). 공공형어린이집 현황 자료.

〈표 II-2-8〉 공공형어린이집의 취약보육 실시 비율(2015)

단위: %(개소)

	기리 시리시기	공공형어린이집							
구분	전체 어린이집	전체	민간	<u></u> 가정					
전체	26.3	85.3	92.5	70.1					
영아전담	1.4	_	_	_					
장애아전담	0.4	-	-	-					
장애아통합	2.1	2.2	3.2	-					
방과후전담	0.3	_	-	-					
방과후통합	0.5	1.6	2.3	-					
시간연장형	20.3	36.9	35.0	41.2					
휴일보육	0.7	0.8	0.9	0.6					
24시간실시	0.6	0.3	0.3	0.4					
(수)	(42,978)	(1,562)	(1,064)	(498)					

주: 서문희 외(2014). 공공형어린이집 제도 개선 및 발전 방안. p. 15 <표 Ⅱ-1-7>을 2015년 자료로 재구성함.

자료: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2015). 공공형어린이집 현황 자료(2015년 6월 말 기준).

취약보육 시행 기관은 2015년 기준으로 전체 어린이집은 26.3%를 차지하나, 공공형어린이집의 해당 비율은 85.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한국보건복지 정보개발원, 2015, 표 Ⅱ-2-8 참조). 특히 시간연장형 보육은 전체 어린이집에서 20.3%를 실시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나, 공공형어린이집의 해당 비율은 36.9%로 두드러지게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14년 시간연장형 실시 비율이 전체 어린이집의 19.9%, 공공형어린이집 전체의 36.9%(서문희 외, 2014: 15)이며 2015년에도 이와 유사한 수준을 보임을 알 수 있다.

한편 2015년 6월 현재 공공형어린이집에서 대표자와 원장이 동일한 비율은 85.7%이며, 가정(95.4%)에 비해 민간어린이집의 해당 비율이 81.2%로 좀 더 높 음을 알 수 있다.

〈표 Ⅱ-2-9〉 공공형어린이집의 대표자와 원장 동일 여부(2015. 6)

단위: %(개소)

							<u></u>		
구브	전	전체		전체 민간				-정	ᅰ(스)
丁亚	동일	다름	동일	다름	동일	다름	/N(十)		
2015	85.7	14.3	81.2	18.8	95.4	4.6	100.0(1,562)		

주: 서문희 외(2014). 공공형어린이집 제도 개선 및 발전 방안. p. 16 <표 Ⅱ-1-9>를 2015년 자료로 재구성함.

자료: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2015). 공공형어린이집 현황 자료(2015년 6월 말 기준).

다. 재무구조 특성

공공형어린이집의 총 세입 구조를 국공립어린이집과 일반가정 및 민간어린이 집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국공립어린이집과는 기타 필요경비, 특별활동비, 인건비 보조 항목에서 차이를 보인다. 인건비 보조 항목은 현재 기관에 대한 인건비 지원 수준이 다른 데 따른 것으로, 해당 비율은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는 40.6%를 차지하나, 공공 형-민간어린이집과 공공형-가정어린이집의 해당 비율은 각각 2.6%와 6.9%로 가 장 큰 차이를 보인다(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2015). 반면 기타 필요경비와 특 별활동비의 세입 비율은 국공립어린이집에 비해 일반 민간어린이집과 공공형-민 간어린이집이 2배 이상 높은 비중을 보인다.

다음으로 일반 어린이집과는 비교해보면, 공공형어린이집은 운영비 지원에 따라 민간과 가정어린이집 모두에서 일반 어린이집에 비해 기타 지원금의 비중 이 높게 나타난다. 또한, 공공형어린이집은 부모로부터 받는 보육료를 정부지원

단가와 동일하게 수납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보육료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일반 어린이집에 비해 약간 낮게 나타난다. 그러나 공공형어린이집 특히 공공형-민간어린이집의 기타 필요경비와 특별활동비 항목의 비중은 일반 민간어린이집과 비교하여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아, 특별활동 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표 II-2-10〉 기관유형별 총 세입 대비 항목별 비율(2015. 6)

													단의	위: %	(개소)
	-	국공립]		민간		공공	·형 -	민간		가정		공	공형-7	<u>'</u> '}정
구분	평균	표준 평차	중위 수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중위 수	평균	표준 편차	중위 수	평균	표준 편차	중위 수
기타필요경비	2.6	3.3	1.3	5.8	5.7	4.2	5.7	4.8	4.7	2.4	3.3	1.1	2.8	2.9	2.0
특별활동비	3.8	2.8	3.9	7.2	4.7	7.2	7.5	4.3	7.5	2.6	2.7	2.2	1.9	1.9	1.6
보육료수입	43.7	8.5	44.6	57.4	10.9	59.2	50.1	6.9	50.3	55.7	11.4	57.4	48.4	8.6	49.1
기업지원금	-	-	-	-	-	-	-	-	-	-	-	-	-	-	-
인건비보조	40.6	11.2	39.5	3.8	9.9	-	2.6	3.7	1.7	3.8	8.5	-	6.9	6.8	5.4
기본보육료	0.8	3.7	-	14.3	8.5	13.5	9.4	5.3	8.7	26.9	8.1	27.6	22.7	5.5	23.1
기타지원금	6.9	6.1	6.4	6.2	5.2	5.7	22.5	6.3	21.8	3.7	5.3	1.5	14.0	6.8	12.4
자본보조금	0.6	4.7	-	0.1	1.6	-	0.2	2.2	-	0.1	1.7	-	0.3	2.6	-
기타수입	0.7	2.9	-	0.9	4.7	-	0.8	3.6	-	1.2	8.2	-	1.3	5.6	-
(수)	((2,557)	(13,441)	((1,064)	(21,754	1)		(496)	

주: 1) 서문희 외(2014). 공공형어린이집 제도 개선 및 발전 방안. p. 48 <표 Ⅲ-2-2>를 2015 년 자료로 재구성함.

아동 1인당 필요경비 지출 비용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국공립어린이집과 일반어린이집에 비해 공공형-민간과 공공형-가정어린이집의 비율이 더 높게 나 타나 우려를 자아낸다. 이러한 경향은 기관규모별로 일관되게 나타난다. 특히 98인에서 123인 이하 규모의 공공형어린이집에서는 해당 비율이 90%를 육박하 여 28,000원을 넘어서고 있다(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2015).

〈표 II-2-11〉기관유형/기관규모별 아동 1인당 기타 필요경비 지출(2015. 6)

										단위	: %(원), 개소
	공공	공공형-민간/공공형-가정 국공립						일반 민간/가정				
구분	지출	ᆏ그	표준	(2.3)	지출	ᆏ그	표준	(2.3)	지출	평균	표준	(2.3)
	비율	생긴	편차	(子)**	비율	정판	편차	(子)**	비율	생긴	편차	(子)**
20인 이하	75.3	18,885	15,574	(374)	46.1	15,182	17,627	(35)	56.8	15,627	14,210	(12,399)
21~35인	82.9	21,463	19,612	(87)	62.0	17,317	15,431	(165)	69.5	20,223	19,097	(2,520)
36~49인	84.8	22,270	20,054	(173)	63.5	16,700	17,097	(301)	75.7	21,486	20,372	(3,180)

²⁾ 이 자료는 정상운영 중인 어린이집 중 재무회계를 보고한 어린이집의 자료임. 자료: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2015). 공공형어린이집 재무회계 현황 자료(2015년 6월 말 기준).

(- " "/												
	공공	형-민간	/공공형	-가정		국	공립		일반 민간/가정				
구분	지출	허그	표준 편차	(3)3)	지출	허그	표준	(3)3)	지출	허 그	표준	* 73)	
	비율	생판	편차	(全)"	비율	평균	표군 편차	(全)。	비율	평균	표군 편차 ^{(*}	个)"	
50~62인	86.3	27,910	24,752	(101)	64.6					24,503	22,045 (770)	
63~76인	86.0	22,749	20,077	(98)	74.1	17,231	20,344	(263)	85.0	25,799	21,699 (896)	
77~86인	90.1	25,235	21,184	(91)	66.8	14,462	12,615	(258)	87.4	26,027	22,472 (633)	
87~97인	86.1	25,213	18,415	(93)	75.4	14,544	13,156	(178)	86.7	26,849	24,144 (600)	
98~111인	95.7	28,716	20,306	(134)	70.9	14,727	16,208	(134)	88.1	26,173	21,299 (590)	
112~123શ	97.6	29,053	21,343	(40)	79.7	17,675	19,480	(59)	87.8	28,520	23,595 (296)	
124인 이상	92.5	25,950	16,757	(124)	76.0	22,101	121,883	(165)	88.6	32,066	26,995 (1,095)	
주: 1) 사	문희	외(2014). 공공	형어린	이집 7	세도 개	선 및	발전 별	방안. r	. 66 <	丑 Ⅲ-2-	17> 을	
20	ท5ษ์	자료로	재구성:	함.									

- 2) 이 자료는 정상운영 중인 어린이집 중 재무회계를 보고한 어린이집의 자료임.
- 3) 이 수치는 기타 필요경비 지출이 0인 어린이집을 제외한 수치임.

자료: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2015). 공공형어린이집 재무회계 현황 자료(2015년 6월 말 기준).

아동 1인당 기타 운영비 지출 비율은 공공형어린이집에 대한 운영비 지원에 따라 일반 어린이집과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기관규모에 따라 상이한 양상을 보인다. 즉 해당 비율은 20인 이하 기관에서는 64.2%로 일반 어린이집에 비해 낮고, 77인 이상 기관에서는 대체로 일반 어린이집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2015).

한편 국공립어린이집의 해당 비율은 20% 미만으로, 최대 2만원을 넘지 않으나, 공공형어린이집의 경우 해당 비율은 최저 64.2%이고, 최대 33,090원선으로나타난다(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2015, 표 Ⅱ-2-12 참조). 그러나 전반적으로규모가 작은 기관의 경우는 일반어린이집에 비해 해당 비율이 낮은 경향을 보인다. 이는 기관규모가 큰 경우 회계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추가적인 운영기준이 요구됨을 암시한다.

〈표 Ⅱ-2-12〉기관유형/기관규모별 아동 1인당 기타 운영비 지출 비율(2015. 6)

단위: %(원), 개소

										,	1. ,0(-/, - 11 —
	공공형	공공형-민간/공공형-가정				국	공립		일반 민간/가정			
구분	지출	평균	표준	(23)	지출	평균	표준 편차	(2.3)	지출	ᆏ그	표준	(介) ³⁾
	비율	정판	표군 편차	(1) "	비율	생긴	편차	(수) ³⁾	비율	평균	편차	(子)**
20인 이하	64.2	25,436	18,678	(319)	18.4	19,589	14,632	(14)	77.0	36,742	26,519	(16,825)
21~35인	68.3	33,090	34,906	(71)	13.2	12,135	9,680	(35)	80.1	35,134	25,107	(2,902)
36~49인	77.9	20,692	12,502	(159)	15.8	13,391	8,634	(75)	79.9	31,289	26,391	(3,360)
50~62인	79.3	23,148	14,707	(92)	14.7	11,201	7,627	(42)	83.2	29,696	22,247	(765)

(표 Ⅱ-2-12 계속)

<u> </u>	., .,											
-	공공형-민간/공공형-가정				국	공립		일반 민간/가정				
구분	지출	허그	표준	(3)3)	지출	평균	표준	(3)	지출	평균	표준	(3)3)
	비율	평균	편차	(†) ³⁾	비율	생판	편차	(수) ³⁾	비율	생판	편차	(수) ³⁾
63~76인	82.5	22,341	14,328	(94)	17.7	10,614	6,624	(63)	82.0	27,405	22,022	(864)
77~86인	87.1	22,272	16,374	(88)	16.1	15,654	38,630	(62)	82.9	26,793	18,469	(600)
87~97인	93.5	21,210	13,979	(101)	16.1	10,621	10,039	(38)	83.1	25,890	16,589	(574)
98~111인	87.9	23,580	14,393	(123)	18.5	10,933	8,878	(35)	86.3	24,397	20,626	(572)
112~123인	85.4	20,480	11,796	(35)	13.5	5,592	3,553	(10)	87.2	25,023	15,404	(293)
124인 이상	94.0	21,353	13,604	(126)	15.2	6,810	6,595	(33)	86.2	24,706	15,480	(1,060)

- 주: 1) 서문희 외(2014). 공공형어린이집 제도 개선 및 발전 방안. p. 66 <표 Ⅲ-2-18>을 2015년 자료로 수정·보완함.
 - 2) 이 자료는 정상운영 중인 어린이집 중 재무회계를 보고한 어린이집의 자료임. 3) 이 수치는 기타 운영비 지출이 0인 어린이집을 제외한 수치임.
- 3) 이 누시는 기타 운영미 시물이 U인 어딘이집을 세되한 누시임. 자료: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2015). 공공형어린이집 재무회계 현황 자료(2015년 6월 말 기준).

공공형어린이집 건물 소유 형태별로 아동 1인당 지출 비율을 살펴보면, 자가인 경우에 비해 특히 월세인 경우 특별활동비와 기타 필요경비, 기타 운영비의지출 수준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2015, 표 Ⅱ -2-13 참조). 이는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시 건물 소유 여부에 따른 제외 기준이조정될 필요가 있으며 월 임대료와 융자금 상환액이 보육료 수입에서 차지하는비율 또한 현재의 10% 이하보다 하향 조정될 필요성이 있음을 암시한다.

〈표 Ⅱ-2-13〉 공공형어린이집 건물 소유 여부별 아동 1인당 항목별 금액(2015)

단위: %, 원(명)

												_ / /	•, =(0)
		자가				전	.세		월세				
구분	지출	허그	표준	(人)	지출	허크	표준	(수)	지출	퍼 그	표준	(ふ)	F
	비율	병판	편차	(T)	비율	병판	편차	(十)	비율	병판	편차	(T)	
급간식비	100.0	44,644	13,330	(1,367)	100.0	39,603	11,237	(27)	99.5	453,39	12,287	(166)	2.20
교재교구비	74.0	16,822	14,374	(1,011)	66.7	14,719	13,204	(18)	80.8	19,569	16,037	(135)	2.37
특별활동비	83.2	34,408	21,051	(1,138)	96.3	33,336	25,295	(26)	86.2	39,449	24,013	(144)	3.83*
기타필요경비	84.5	22,923	18,877	(1,155)	88.9	19,830	14,330	(24)	81.4	27,562	22,722	(136)	3.69*
기타 운영비	76.5	22,981	17,717	(1,046)	77.8	19,527	13,304	(21)	85.0	28,257	15,291	(142)	6.33***
즈 1\ 서도	그히 ㅇ	1/201/	77.7	^고 혀어;	리이지	겠ㄷ	게서	미 비	-저 비	-0} n	67 .	<i>-</i>	T_2_10〜三

- 주: 1) 서문희 외(2014). 공공형어린이집 제도 개선 및 발전 방안. p. 67 <표 Ⅲ-2-19>를 2015년 자료로 재구성함.
 - 2) 이 자료는 정상운영 중인 어린이집 중 재무회계를 보고한 어린이집의 자료임.
- 3) 이 수치는 각 항목별 지출이 0인 어린이집을 제외한 수치임.

자료: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2015). 공공형어린이집 재무회계 현황 자료(2015년 6월 말 기준). *p < .05, ***p < .001.

Ⅲ. 공공형어린이집 제도 변화와 유사기관 비교

이 장에서는 공공형어린이집 제도의 연혁 즉 선정 기준, 운영 기준, 지원내용의 변화 및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국공립어린이집, 서울형어린이집과 비교·분석한 후 공공성 차원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1. 공공형어린이집 제도 변화

정부는 급속히 증가하는 보육 수요에 대응하고 서비스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2011년 7월에 국공립 수준의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선정 및 지원하는 공공형어린이집 제도를 도입하였다. 공공형어린이집은 "우수한 어린이집이 안정적인 운영과 품질 관리를 위한 운영비를 지원받으면서 국공립어린이집 수준의 공공 보육 인프라로서 기능하는 새로운 유형의 어린이집"(보건복지부, 2011: 5)을 말한다. 공공형어린이집의 목표는 자녀 돌봄을 위탁 시 신뢰할 수 있는 어린이집의 확충으로, 우수한 민간어린이집이 부족한 지역에 설치, 평가인증을 강화한체계적인 품질 향상을 추구한다(한국보육진흥원 홈페이지, 검색일 2015년 4월 13일, 표 III-1-1 참조).

〈표 Ⅲ-1-1〉 공공형어린이집의 목표, 추진 절차, 방향 및 내용

구분	주요 내용								
목표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확충								
추진 절차	 2010. 9: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시 '공공형어린이집' 사업 추진 결정 2011. 5: 관계부처와의 협의, 공청회 등을 거쳐 사업 계획 수립 2011. 7~2012. 6: 시범사업 시행 2012. 7: 본 사업으로 전환 								
추진 방향	- 민간어린이집의 체계적인 품질 향상 - 공공형어린이집 운영 모델 창출 - 취약지역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자료: 1) 보건복지부(2011). 공공형·자율형어린이집 시범사업 공청회 자료집. p. 5.

²⁾ 한국보육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cpi.or.kr/thebcc, 검색일 2015년 4월 13일).

한편, 2015년 기준 공공형어린이집 참여 요건은 <표 Ⅲ-1-2>와 같다. 공공형어린이집의 선정 대상은 인건비를 지원받는 정부지원어린이집, 공공기관 또는고용보험기금 등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직장어린이집 등 이미 공적 자금이 지원되는 어린이집은 제외된다. 또한, 공공형어린이집 선정에 참여할 때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요건은 평가인증 점수, 정원 충족률 및 관련 법령 및 지침을준수하는 어린이집으로 규정하고 있다(보건복지부2015b: 15).

〈표 Ⅲ-1-2〉 공공형어린이집 선정대상 및 참여 요건(2015)

구분	기준
선정대상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어린이집 '2015년 보육사업안내'에 따라 인건비를 지원받는 정부지원어린이집 제외 공공기관 또는 고용보험기금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직장어린이집 제외
참여 기본요건	 사·도별 사업계획 공고일 현재, 평가인증 유효 기간 내의 점수가 90.0점 이상인 어린이집 사·도별 사업계획 공고일이 속한 월 이전 6개월 간 해당 어린이 집별 정원 충족률(현원/정원×100)이 평균적으로 80.0%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다만, 농어촌 지역은 50.0%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령 및 지침에 따라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

주: 정·현원은 종일반 아동을 기준으로 하며, 종일반 아동의 정·현원에 포함되지 않는 시 간연장, 시간제, 방과후아동은 제외함. 또한, 농어촌 지역은 농어촌 지역뿐만 아니라 농 어촌 특례 지역 모두 포함함.

자료: 보건복지부(2015b). 2015 공공형어린이집 업무 매뉴얼. p. 15.

〈표 Ⅲ-1-3〉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현황(2015)

									(단위: 만원
구분					기관	한 규모				
 정원	20명	21~	36~	50~	63~	77~	87~	98~	112~	124명
78전	이하	35명	49명	62명	76명	86명	97명	111명	123명	이상
월 지원액	116	253	268	445	460	565	580	829	844	875

주: 2015년 9월 현재 운영 중인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위의 표를 따름. 자료: 보건복지부(2015b). 2015 공공형어린이집 업무 매뉴얼. p. 32.

또한,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은 어린이집 규모(정원)에 따라 차등적으로 이루어진다. 공공형어린이집 지원금과 함께 기본보육료도 계속 지급되며, 해당

지자체 예산 범위 내에서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선정된 어린이집에 운영비, 종사 자 인건비, 환경개선비 등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보건복지부, 2015b: 33).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원 금액은 구체적으로 위의 <표 Ⅲ-1-3>과 같다. 단, 2015년 에 운영비 지원체계가 개편되어 2015년의 신규 및 재선정기관에 대해서는 보육 교사 급여상승분과 유아반 운영비, 교육환경개선비 등으로 구분하여 지급하며, 전월 현황자료를 기준으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된다(보건복지부, 2015c).

	\ \	1/ 000410	
구분	단가	기준	세부사항
보육교사	35만원	종일반	- 현원 1명 이상, 담임교사가 배치된 반 기준
급여상승분	33단전	1개소당	- 방과후, 시간연장, 시간제 제외
유아반 운영비	60만원	3-5세반 1개소당	 3세: 현원 8인 이상인 반 4세 이상: 현원 11인 이상인 반 * 단, 지급기준 인원수를 채우지 못한 경우라도 현원 5인 이상인 반에 대해서는 단가의 50% 지급
교육환경	1.5만원	재원아동	- 현원 기준(방과 후 아동 제외)
개선비	1.5인편	1인당	- 기관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

〈표 Ⅲ-1-4〉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변경사항(2015)

가. 선정 요건 및 지표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요건을 제시할 때 선정 제외 기관을 별도로 명시하고, 참여 기본 요건과 세부 선정 기준을 제시한다. 2012년 이후 해당 요건들은 거의 매년 그 내용이 변경되어 왔는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신청 대상

「영유아보육법」제10조의 어린이집은 공공형어린이집 사업을 신청할 수 있 다. 다만, 2015년 보육사업안내에 따라 인건비를 지원받는 "정부지원어린이집" 과 공공기관 또는 고용보험기금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직장어린이집은 신 청대상에서 제외된다(보건복지부, 2015b: 15). 2012년에는 민간어린이집, 가정어 린이집 및 정부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법인단체등어린이집만을 그 신 청 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나 2013년부터는 모든 종류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 되, 정부지원어린이집과 운영비를 지원받는 직장어린이집을 신청 대상에서 제외

주: 2015년 신규 및 재선정된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위의 표를 따름. 자료: 보건복지부(2015c). 내부자료.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보건복지부, 2013: 1).

2) 참여 기본요건

공공형어린이집 참여 요건은 시·도별 사업계획 공고일 현재, 평가인증 유효기간 내의 점수가 90.0점 이상이고, 시·도별 사업계획 공고일이 속한 월 이전 6개월간 해당 어린이집별 정원 충족률(현원/정원×100)이 평균적으로 80.0% 이상 (농어촌 지역은 50.0% 이상)을 유지하는 어린이집이다(보건복지부, 2015b: 15). 또한, 영유아보육법령 및 지침에 따라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어야 한다. 2012년까지는 사업계획 공고일이 속한 월 이전 3개월간 보육 반편성 연령상 유아 현원이 해당 어린이집 총 영유아 현원의 30.0% 이상을 평균적으로 유지할 것을기본 요건으로 하였으나, 2013년부터는 중요도를 낮추어 가점 대상으로 변경하였다가 2015년에는 지표에서 삭제하였다(보건복지부, 2013: 2; 보건복지부, 2015b: 9). 이는 제도 자체가 소규모 어린이집을 포함한 이상 유아 현원 비율을요건으로 처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서문회 외, 2014: 17)에 따른 것으로보인다.

3) 선정 제외 대상

선정 제외 기준은 학대 발생 등 각종 행정처분 대상 기관, 시설 설비 기준(비 상재해대비시설 등), 보수교육, 월 임대료 및 융자금, 정보 공시 등의 규정 준수가 미흡한 기관이다(보건복지부, 2015b: 16-18).

〈표 Ⅲ-1-5〉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제외 대상 어린이집(2015)

제외대상 기준	비고
시·도별 사업계획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로부터 2년	
이내 행정처분 또는 처벌 등을 받은 이력이 있는 어린이집	
및 행정처분 또는 처벌 등 제재 중인 어린이집, 행정처분 또	_
는 처벌절차가 진행 중인 어린이집	
시·도별 사업계획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로부터 2년	
이내 행정처분 또는 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는 자가 원장으로	-
근무하는 어린이집	
사도별 사업계획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로부터 2년 이	
내에 어린이집 영유아 학대로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어린이집	_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시설 설치 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어린이집	-

(표 Ⅲ-1-5 계속)

제외대상 기준	비고
영유아보육법령에 따른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어린이집	-
놀이터(옥외, 옥내, 인근 놀이터를 말한다)를 갖추지 못한 어 린이집	-50인 미만 어린이 집에 대해 2013년 부터 별도 설치기 준 제시(기존 적용 대상 제외)
사업 계획 공고일 현재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선정 후 포기 또는 취소된 경우, 선정취소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어린이집	-
어린이집 원장이 다른 시설(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설치·운영 하거나, 설치·운영자가 다른 시설(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설 치·운영 또는 원장으로 재직 중인 어린이집	-2013년 신설
월 임대료 및 융자금 상환액이 보육료 수입의 10% 이상	-2014년 신설 -2015년 15%에서 10% 로기준상향
아이사랑보육포털 어린이집 정보공시를 하지 아니한 어린이집	-2014년 신설
영유아보육법령에 따른 원장 및 보육교사 보수교육 미이수자	-2014년 신설
가 근무하고 있는 어린이집	-2015년 원장 포함
지역사회 내에서 다수 민원이 제기되는 등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선정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사도지사가 판단하는 어린이집	-

자료: 보건복지부(2015b). 2015 공공형어린이집 업무 매뉴얼. pp. 16-18.

2013년까지는 2년 이내 행정처분 또는 처벌 등을 받은 이력이 있는 어린이집 에 대해서만 선정 제외 대상으로 두었으나, 2014년에는 행정처분 또는 처벌 등 이 제재 중인 어린이집도 제외 대상에 포함하였으며, 2015년부터는 행정처분 또 는 처벌 절차가 진행 중인 어린이집까지도 제외대상에 포함하였다. 그리고 행정 처분 또는 처벌의 범위에 「영유아보육법」상의 행정처분뿐만 아니라「사회서 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6의 부당이득 징수, 「사회복 지사업법 제40조기에 따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의 처분

⁶⁾ 제21조(부당이득의 징수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사회서 비스 제공 비용을 지급받은 제공자에 대하여 그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 수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이용자가 거짓 보고 또는 증명 등을 한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이용 자에게 제공자와 연대하여 제1항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⁷⁾ 제40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 수·구청장은 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까지 대상을 확대하였다(보건복지부, 2013: 12; 보건복지부, 2014: 9-10).

한편, 2014년까지는 월 임대료 및 융자금 상환액이 보육료 수입의 15% 이상인 어린이집에 대해서만 제외 대상으로 둔 반면, 2015년부터는 10% 이상인 어린이집을 제외 대상으로 정함으로써 기준을 상향 조정하였다. 그 밖에도 2015년부터는 보수교육 대상자를 보육교사에서 원장으로 확대하여 원장 및 보육교사가해당 어린이집별 공공형어린이집 신청일 현재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보건복지부, 2014: 3; 보건복지부, 2015b: 7-8).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제외대상 내용의 변화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1.} 시설이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되었을 때

^{2.}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 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되었을 때

^{3.} 설치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그 밖의 사유로 계속하여 운영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

^{4.}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

^{5.} 제3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운영하였을 때

^{6.} 제36조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운영하지 아니하였을 때

^{7.} 정당한 이유 없이 제51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하였을 때

^{8.} 정당한 이유 없이 제51조제1항에 따른 검사·질문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였을 때

^{9.} 시설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성폭력 범죄 또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가 발생한 때

^{10. 1}년 이상 시설이 휴지상태에 있어 시장·군수·구청장이 재개를 권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개 하지 아니한 때

〈표 Ⅲ-1-6〉공공형어린이집 선정 제외 대상 주요 변경사항(2012-2015)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 놀이타(옥외, 옥내, 인근 놀이타를 말함를 갖추지 못한 어린이집 ○ 다만 「영유아보육법」상 놀이터 설치 의 무가 없는 50인 미만 어린이집의 경우는 기본요건에서 제외, 기점부여	□ 놀이터(옥외, 옥내, 인근 놀이터를 말함를 갖추지 못한 어란이집 ○ 법률상 놀이터 설치의무가 없는 50인 미만 어란이집도 놀이터를 갖추어야 함예외적용 없음 ○ 공공형어란이집 신청 대상 50인 미만 어린 이집에 대해서는 놀이터 설치 기준 별도 제시	-	-
□ 사도별 시압계획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부터 2년 이내 행정차분을 받은 이력 이 있는 어린이집 원장이 원장으로 근무하 는 어린이집	-	-	□ 사도별 시업계획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부터 2년 이내 <u>행정처분 또는 처벌을</u> 받은 이력이 있는 자가 원장으로 근무하는 어린이집
〈신 설〉	□ 당해 어란이집 원장이 다른 시설'어란이집 사회복지시설 및 유치원 등을 설치운영하고 있거나 당해 어란이집 설차운영자가 다른 시설을 설치운영 또는 원장으로 재직중인 어란이집 • 개인이 설치했던간, 가정) 어란이집에 적용 • 사회복지밥인, 법인단체 등, 작장, 부모협동어란이집 원장의 경우 다른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서는 안됨	-	-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	〈신 설〉	□ 월 임대료 및 융자금 상환액이 보육료 수입의 15% 이상인 어린이집 □ 아이사랑보육포털을 통해 어린이집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어린이집 □ 영유아보육법령에 따른 보육교사보수교육 미이수자가 근무하고 있는 어린이집	□ 월 임대료 및 융자금 상환액이 보육료 수입의 10% 이상인 어린이집 □ 영유아보육법령에 따른 원장 및 보육교사 보수교육 미이수자가 근무하고 있는 어린이집

자료: 1) 보건복지부(2015b). 2015 공공형어린이집 업무 매뉴얼. p. 7. 2) 보건복지부(2014). 2014 공공형어린이집 업무 매뉴얼. p. 3. 3) 보건복지부(2013). 2013 공공형어린이집 업무 매뉴얼. p. 3.

4) 세부 선정 기준

공공형어린이집을 선정할 때에는 참여 기본요건에 부합하고 선정 제외 대상 에 해당하지 않는 어린이집 중 세부 선정기준에 따라 점수화하여 고득점 순으 로 결정한다. 다만, 세부 선정기준에 의한 총 합계 점수가 85.0점 이상이어야 한 다(보건복지부, 2015b: 19). 2012년에는 현행과 같이 총 합계 점수가 85.0점 이상 인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나, 2013년에는 80.0점 이상인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였고, 2014년에 현재와 같이 다시 85.0점 이상으로 변경하였다(보건 복지부, 2013: 2; 보건복지부, 2014: 3).

〈표 Ⅲ-1-7〉 공공형어린이집 세부 선정 기준(2015)

-			
기본점수 항목(100점)	가점 항목(최대 21점)	감점 항목(최대 8점)	
① 평가인증 점수(35점)	① 현 어린이집 근속 3년	① 월 융자 상환액 및 임	
② 건물 소유이용 형태(20점)	이상 교사비율(3점)	대료 합의 보육료 수입	
③ 1급 보육교사 비율(30점)	② 보육교사의 영유아관련	대비 비율(최대 5점)	
④ 원장으로서의 재직 경	학과 전문학사 학위 소	② 최근 3년간 대표자 변	
력(5점)	지자 비율(1점)	경(3점)	
⑤ 취약보육서비스 운영	③ 원장의 영유아관련학과		
여부(6점)	학위 소지자로서 보육교		
⑥ 지자체 특성화 지표(4점)	사 근무경력 기간(2점)		
	④ 원장의 현 어린이집 근		
	속 기간(2점)		
	⑤ 맞벌이 자녀 재원률(최		
	대 3점)		
	⑥ 대표자와 원장 동일인		
	(5점)		
	⑧ 담임 보육교사 급여 지		
	급 수준(최대 5점)		

- 1순위: 국공립어린이집 및 사회복지법인 및 공공형어린이집의 전국 평균 개소 수 비율(국공립어린이집·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ϕ /전체 어린이집 $\phi \times 100$)보다 국공립어린이집·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및 공공형어린이집이 적은 지역(사· 군구 단위로 산정, 행정구 포함)에 소재한 어린이집
- 2순위: 평가인증 점수가 높은 어린이집
- 3순위: 1급 보육교사 비율이 높은 어린이집
- 4순위: 대표자와 원장이 동일인인 어린이집

자료: 보건복지부(2015b). 2015 공공형어린이집 업무 매뉴얼. p. 19.

공공형어린이집 선정을 위한 세부지표는 100점 만점의 기본 점수와 가점 및

감점으로 구성된다. 가점은 2012년 12점까지 부여되었으나, 2013년 28점으로 큰폭으로 상향 조정되었고, 2014년에는 다시 20점으로 하향 조정되었다. 2015년에는 또다시 21점으로 상향되었다. 감점은 2012년과 2013년 모두 15점이었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다르고, 2014년에는 감점이 총 11점, 2015년에는 총 8점으로 점차 하향 조정되었다. 이러한 감정 점수의 하향 조정은 일부 항목이 참여 기본요건으로 변경된 데 따른 것이다(보건복지부, 2013: 1; 보건복지부, 2014: 31; 보건복지부, 2015b: 45).

가) 평가인증 점수

평가인증 점수는 90.0이상이어야 하는데, 평가인증 점수에 따라 25점부터 최대 35점까지 점수가 주어진다. 점수는 평가인증 총점 산식에 따라 환산하며, [환산점수=(평가인증 총점-90.0)+25] 산식에 따른다(보건복지부, 2015b: 20). 2012년 도와 2013년도에는 평가인증 점수를 4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점수를 주었으나, 2014년에 평가인증 총점 산식에 따른 환산 점수로 바뀌었다(보건복지부, 2014: 31; 보건복지부, 2013: 29).

나) 건물 소유·이용 형태

건물 소유·이용 형태에 대한 판단 시점은 시·도별 사업계획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보건복지부, 2015b: 20). 건물 소유·이용 형태는 자가 전용, 자가복합, 관리동, 임대 전용, 임대 복합 등으로 나누어 점수를 달리 주고 있다.

자기 소유 시설인 경우에는 자가로 판단하며, 자기 소유 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임대로 본다. 이용 여부에서는 단독 건물에 설치·운영되는 어린이집은 전용으로 판단하고, 한 건물에 어린이집 외의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복합으로 본다. 2013년까지는 아파트(공동주택) 내 가정어린이집의 이용 형태는 복합으로 구분하였으나, 2014년부터는 아파트 내 가정어린이집이라 하더라도 아파트 관리동내의 가정어린이집 이용 형태를 "전용"으로 구분하였다. 다만, 2015년부터는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은 모두 "전용"으로 구분하게 되었으며, 아파트 관리동 내어린이집은 이용 형태와 관계없이 새로운 소유·이용 형태로 구분하여 점수를 부여하였다(보건복지부, 2015b: 45; 보건복지부, 2014: 31; 보건복지부, 2013: 29).

한편, 월 임대료 및 융자금 상환액을 산출하여 그 합이 보육료 수입 대비 비율이 몇 퍼센트인지에 따라 배점을 달리하여 감점하고 있다. 초기 제도 도입 시에는 15%이상 시설에 대해 10점 감점하는 방식을 취했으나, 2014년부터는 15%

이상 시설, 2015년에는 10%이상 시설을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는 임대료나 융 자금 이자가 보육료 수입의 일정액을 넘어가게 되면 재정운영의 안정성이나 공 공성의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다) 보육교직원 전문성

1급 보육교사 비율은 2012년에는 20점 만점에 3구간으로 구분하여 배점하였으 나, 2013년에는 30점 만점에 4구간으로 구분하였고, 2015년에는 5구간으로 구분 하여 점수를 좀 더 세분화하였다(보건복지부, 2015b: 45; 보건복지부, 2013: 29).

원장의 자격요건에서는 2012년에는 원장의 최종학력이 보육 관련 석사학위 이 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산점을 주었으나 2013년부터는 보육 관련 학사학위 이상 이면서 보육교사 경력이 3년 이상인 경우에 가산점을 주었으며, 2015년에는 기 존 1점 가점에서 2점 가점으로 배점을 높였다. 한편, 제도 도입 시에는 원장으로 서의 재직경력에 따라 최대 10점을 주었는데, 2013년에 어린이집 근속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가점을 부여하게 됨에 따라 원장 재직 경력에 대한 점수는 최대 5점으로 하향 조정하였다(보건복지부, 2015b: 46; 보건복지부, 2013: 29-30).

그 밖에 보육교직원 관련하여 3년 이내 보수교육 미이수자가 있는 경우 1명 당 1점씩 감점하여 최대 5점을 감점하였으나, 2014년부터는 보수교육 미이수자 가 있는 어린이집은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4: 32).

라) 맞춤형 보육지원

취약서비스(시간연장, 휴일, 장애아, 다문화보육) 운영 여부에 대해서는, 도입 시에는 실시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4점을 부과하였고 1개를 실시하면 7점, 2 개 이상을 실시하면 만점인 10점을 부여하였으나, 2013년에는 미실시 1점, 1개 실시 3점, 2개 이상 실시 시 5점으로 배점을 낮추었다. 2014년에는 미실시한 경 우에는 점수를 부여하지 않고(0점), 1개 실시부터 4개 실시까지 4구간으로 나누 어 점수를 배분하여 최대 8점을 부여하였으나 2015년부터는 3개 실시 시 6점을 만점으로 하고 있다. 또한, 2014년에는 맞벌이 자녀 재원 비율에 따른 가점(3점) 을 부여하여 맞벌이 가구 양육지원 강화를 도모하였다(보건복지부**2015b: 9;** 보건 복지부, 2014: 4; 보건복지부, 2013: 3).

마) 지자체별 특성화 지표

지자체별 특성화 지표는 2012년 일시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집에 대하

여 5점을 배점하였으며, 2013년 그 대상을 건강 주치의제 실시 어린이집, 어린이집 석면 조사 미검출 어린이집, 공공성 확보를 위한 시범사업에 우선 참여한 어린이집 등으로 확대하였다. 2014년에는 배점을 2점으로 조정하였는데, 특성화 지표는 지자체가 결정해야 할 사항이므로 매뉴얼에 제시된 지표는 예시에 불과하며 지자체 특성에 맞는 추가 발굴 및 수정을 명시하고 배점을 4점으로 상향 조정하였다(보건복지부2015b: 46; 보건복지부, 2014: 33; 보건복지부, 2013: 30).

바) 기타 사항

2013년에는 최근 3년간 대표자나 원장이 변경된 바 없으면 3점의 가산점을 부여하였으나, 2014년에는 최근 3년간 대표자 변경이 있을 경우, 3점 감점으로 변경되었다. 한편, 대표자와 원장이 동일인인 경우 3점의 가산점을 주고 있었는데, 2015년부터는 5점으로 가점이 상향되었다(보건복지부2015b: 46; 보건복지부, 2014: 33; 보건복지부, 2013: 30).

그 밖에 현원 대비 유아 30% 이상 충족은 종래 기본요건이었으나 2013년부터 3점의 가점으로 변경되었고, 2015년에는 해당 기준이 삭제되었다.

한편, 2013년부터는 담임 보육교사 급여 지급 수준에 따라 최대 10점 가점을 부여하였는데, 2014년에는 최대 5점 가점으로 하향 조정하였다.

이상 공공형어린이집 세부 선정기준의 변화과정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Ⅲ-1-8〉 공공형어린이집 세부 선정 기준 주요 변경사항(2012-2015)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 건물 소유이용 형태	□ 건물 소유이용 형태	□ 건물 소유이용 형태	□ 건물 소유이용 형태
자가 전용 어린이집 20 자가 복합 어린이집 <u>10</u> 임대 전용 어린이집 <u>5</u> 임대 복합 어린이집 0	자가 전용 어린이집 20 자가 복합 어린이집 <u>15</u> 임대 전용 어린이집 <u>10</u> 임대 복합 어린이집 5	자가 전용 어린이집 20 자가 복합 어린이집 <u>10</u> 임대 전용 어린이집 <u>5</u> 임대 복합 어린이집 0	자가 전용 어린이집 20 자가 복합 어린이집 10 관리동 어린이집 10 임대 전용 어린이집 5
 〈신 설〉 ○ 월 임대료 및 융자금 상환액 합이 보육료 수입의 - 5% 미만 감점 3점 - 5% 이상 10% 미만 감점 5점 - 10% 이상 15% 미만 감점 7점 - 15% 이상 감점 10점 	 ○ 아파트(공동주택) 內 가정 어린이집의 이용형태는 복합으로 구분 ○ 월 임대료 및 융자금 상환액 합이 보육료 수입의 - 5% 미만 감점 2점 - 5% 이상 10% 미만 감점 3점 - 10% 이상 15% 미만 감점 7점 - 15% 이상 감점 10점 ○ 월 임대료 및 융자금 상환액 산정 시점 - 시·도별 공공형어린이집 사업계획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3개월 평균 	 아파트 관리동 內 가정 어린이집의 이용형태는 전용으로 구분 월 임대료 및 융자금 상환액합이 보육료 수입의 5% 미만 감점 2점 5% 이상 10% 미만 감점 5점 10% 이상 15% 미만 감점 8점 15% 이상 시설 제외 월 임대료 및 융자금 상환액산정시점 시·도별 공공형어린이집 사업계획공고일이속한월의 전월 6개월 명균 	 ○ 공동주택內 어린이집의 이용형 태는 전용으로 구분 ○ 아파트 관리동內 어린이집은 10점 ○ 월 임대료 및 융자금 상환액 합이 보육료 수입의 - 5% 미만 감점 2점 - 5% 이상 10% 미만 감점 5점 - 10% 이상 시설 제외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 평가인증 점수(4개 구간)		□ 평가인증 점수 ○ 퍼기이즈 출경 사사에 띠기 회사	-	
97.5점~100점	35점	* 환산점수: (평가인증 총점-90)+25		
95점~97.49점	32점			
92.5점~94.99점	30점			
90점~92.49점	28점			
□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 1급 보육교사 비율			□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 1급 보육교사 비율	
	상) 30		70% 이상(농어촌 50% 이상)	<u>30</u>
60% 이상 70% 미만(농어	<u></u>		60% 이상 70% 미만(농어촌	<u>25</u>
40% 이상 50% 미만)			40% 약광 50% 미린)	
50% 이상 60% 미만(농어 30% 이상 40% 미만)	촌 <u>13</u>	-	50% 이상 60% 미만(농어촌 30% 이상 40% 미만)	<u>15</u>
45% 이상 50% 미만(농어 25% 이상 30% 미만)	촌 <u>5</u>		45% 이상 50% 미맨(농어촌	7
	-		25% 이상 30% 미만	-
			45% 미맨농어촌 25% 미만	3
	□ 평가인증 점수(4개 구간) 97.5점~100점 95점~97.49점 92.5점~94.99점 90점~92.49점 □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 1급 보육교사 비율 - 〈삭 제〉 70% 이상(농어촌 50% 이산60% 이상 70% 미만(농어40% 이상 50% 미만) 50% 이상 60% 미만(농어30% 이상 40% 미만) 45% 이상 50% 미만(농어30% 이상 50% 미만)	□ 평가인증 점수(4개 구간) 97.5점~100점 35점 95점~97.49점 32점 92.5점~94.99점 30점 90점~92.49점 28점 □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 1급 보육교사 비율 - 〈삭 제〉 70% 이상(농어촌 50% 이상) 30 60% 이상 70% 미만(농어촌 40% 이상 50% 미만) 50% 이상 60% 미만(농어촌 30% 이상 40% 미만) 45% 이상 50% 미만(농어촌 5	□ 평가인증 점수(4개 구간) 97.5점~100점 35점 95점~97.49점 32점 92.5점~94.99점 30점 90점~92.49점 28점 □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 1급 보육교사 비율 - 〈삭 제〉 70% 이상(농어촌 50% 이상) 30 60% 이상 70% 미만(농어촌 40% 이상 50% 미만) 50% 이상 60% 미만(농어촌 30% 이상 40% 미만) 45% 이상 50% 미만(농어촌 5	□ 평가인증 점수(4개 구간) 97.5점~100점 35점 95점~97.49점 32점 92.5점~94.99점 30점 90점~92.49점 28점 □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 1급 보육교사 비율 - 〈삭 제〉 70% 이상(농어촌 50% 이상) 60% 이상 70% 미만(농어촌 40% 이상 50% 미만) 50% 이상 60% 미만(농어촌 30% 이상 40% 미만) 45% 이상 50% 미만(농어촌 25% 이상 30% 미만) 45% 이상 50% 미만(농어촌 25% 이상 30% 미만) 5 □ 평가인증 점수 ○ 평가인증 총점 산식에 따라 환산 * 한산점수: (평가인증 총점-90)+25 □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 1급 보육교사 비율 ○ 1상(농어촌 50% 이상) ○ 60% 이상 70% 미만(농어촌 40% 이상 50% 미만) ○ 50% 이상 60% 미만(농어촌 30% 이상 40% 미만) ○ 45% 이상 50% 미만(농어촌 25% 이상 30% 미만) ○ 평가인증 총점 산식에 따라 환산 * 한산점수: (평가인증 총점 -90)+25

(亞 III-1-8 계득)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 원장의 자격 및 재직경력 ○ 원장의 최종 학력이 아동한 유아교육학 등 보육 관련 2 - ① 학과전공 및 학위명에 유야, 아동의 단어가 포함된 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 런 교과목 최소 4과목 이상 상을 이수한 경우 인정	<u>석사 이상</u> 보육, (영) 된 경우, ② 는 보육 관	□ 원장의 자격 및 재직경력 ○ 원장이 아동학, 보육학 등 영유아 관련 학과 <u>호</u> 자로서 보육교사 경력○ 경우 1점 가점 - 학과 및 학위명에 보육, 동의 단어가 포함된 경우	, 유아교육학 <u> </u>	□ 원장의 자격 및 재직경력 ○ (좌 동) - 보육교사 경력은 보육교사로 임용되어 근무한 기간을 산정 -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직하는 경우, 보육교사 경력 산정에서 제외함	□ 원장의 자격 및 재직경력 ○ 원장이 아동학, 보육학, 유아교육 학 등 영유아 관련 학과 학사학 위 소지자로서 보육교사 경력이 3년 이상인 경우 2점 가점
○ 원장의 재직 경력		 현 어린이집에서 10년 원장 1점 가점 현 어린이집 근속 기간 사·도별 사업 계획 공고일 전월 말일 원장의 재직 경력 	판단 시점은	○ 현 어린이집에서 10년 이상 근속 한 원장 2점 가점	
15년 이상	10점	15년 이상	5점		
7년 이상 15년 미만	<u>7점</u>	7년 이상 15년 미만	<u>3점</u>		
7년 미만	<u>5점</u>	7년 미만	<u>1점</u>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 기타 보육교직원 관련 ○ 최근 3년 이내 보수교육 미이수자 1명 당 1점 감점(최대 5점 감점)	□ 기타 보육교직원 관련 ○ (좌 동)	□ 기타 보육교직원 관련 ○ 〈삭 제〉 제외 대상에 해당 〈신 설〉	□ 기타 보육교직원 관련 ○ 영유아 관련학과 전문학사를 소 지한 보육교사가 60% 이상인 경우 가점 부여(1점)
□ 취약보육서비스 운영 여부 ○ △시간연장보육, △휴일보육, △장애아 보육, △다문화보육 중 - 미실시 4점 - 1개 실시 7점 - 2개 이상 실시 10점 -	□ 취약보육서비스 운영 여부 ○ △시간연장보육, △휴일보육, △장애아 보육, △다문화보육 중 - 미실시 1점 - 1개 실시 3점 - 2개 이상 실시 5점	□ 취약보육서비스 운영 여부 ○ △시간연장보육, △휴일보육, △장 애아보육, △다문화보육 중 - <u>미실시 0점</u> - <u>1개 실시 2점</u> - <u>2개 실시 4점</u> - 3개 실시 6점 - 4개 실시 8점 □ 맞벌이 자녀 재원률 ○ 총 정원 대비 맞벌이 자녀의 재원 비율 - 50% 이상(농어촌 40% 이상) 가점 3점 - 40% 이상 50% 미만(농어촌 35% 이 상 40% 미만) 가점 2점 - 30% 이상 40% 미만(농어촌 30% 이상 35% 미만) 가점 1점	□ 취약보육서비스 운영 여부 ○ △시간연장보육, △휴일보육, △ 장애아보육, △다문화보육 중 - 미실시 0점 - 1개 실시 2점 - 2개 실시 4점 - 3개 이상 실시 6점

	2012131	20141317	20151317
		2014년도	2010년도
2012년도 □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가입여부(2점 가점) □ 지자체별 특성화 지표(5점) ○ 일시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집 등〈추 가〉	2013년도 <	2014년도 □ 지자체별 특성화 지표(2점) 〈특성화 지표 예시〉 ○ 지자체에서 시범사업 등을 통해 시행하는 시책사업에 참여하는 어린이집 ○ 일시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집	2015년도 □ 지자체별 특성화 지표(4점) - 하단의 지표는 예시이며, 지자체의 특성에 맞게 추가 발굴및 수정적용 가능 < 특성화 지표 예시〉 ○ 국공립 및 공공형 어린이집 이 없는 공보하셔서
		○ 건강주치의제 실시 어린이집 ○ 어린이집 석면 조사 실시하여 미검출 어린이집	 ○ 중소기업 밀집지역 ○ CCTV 어린이집 ○ 지자체에서 시범사업 등을
		○ 공공성 확보를 위한 시범사업 등에 우선 참여한 어린이집 등	통해 시행하는 시책사업에 참여하는 어린이집
			전강주치의제 실시 어린이집 어린이집 석면 조사 실시하여 미검출 어린이집 정부 시범사업 등에 우선 참여한 어린이집 등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 어린이집 정보 공개 여부 ○ 아이사랑보육포털에 보육료 등 비용, 예·결산 내역, 보육교직원 현황, 보육 과정, 평가인증 점수에 관한 정보 공 개 여부 - 모두 공개: 4점 - 3~4개 공개: 1점	-	〈삭 제〉(비공개시 선정 제외대상)	-
〈신 설〉	□ 총 현원 대비 유아 현원 30% 이상 충족 (가점 3점)	-	〈삭 제〉
-	□ 최근 3년간 <u>대표자 및 원장 미변경(가점</u> <u>3점)</u>	□ 최근 3년간 대표자 변경(감점 3점)	-
-	□ 대표자와 원장 동일인(가점 3점) ○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의 경우는 제외	-	□ 대표자와 원장 동일인(<u>가점 5점</u>)
_	□ 담임 보육교사 급여 지급 기준(국공립 보육교사 인건비 기준) - 급여는 기본급의 평균으로 시간외근무 수당, 처우개선비, 근무환경개선비 등 수당 미포함, 4대 보험료 중 자기부담 금을 포함한 세금 공제 전 금액	□ 담임 보육교사 급여 지급 기준 - 월 지급액: 기본급, 제수당 등 원 장이 보육교사에게 지급하는 수당 포함 - 처우개선비, 근무환경개선비 등 <u>국</u> 가지자체가 직접 교사에게 지급하	□ 담임 보육교사 급여 지급 <u>수준</u> - 방과후 보육교사, 시간연장형 보육교사, 시간제보육교사 등 은 담임 보육교사 급여 지급 기준 산정 시 제외 - 최대 <u>5점</u> 가점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 최대 <u>10점</u> 가점	는 비용 및 시간외근무수당은 미포함 - 최대 <u>5점</u> 가점	

자료: 1) 보건복지부(2015b). 2015 공공형어린이집 업무 매뉴얼. pp. 19-25.

- 2) 보건복지부(2014). 2014 공공형어린이집 업무 매뉴얼. pp. 3-5, 12-15. 3) 보건복지부(2013). 2013 공공형어린이집 업무 매뉴얼. pp. 2-4, 14-18.

나. 운영 기준

공공형어린이집의 운영 기준으로는 평가인증 점수를 유지하고, 지원 대상 측면에서 취약계층을 보육을 우선 시행하며, 이용비용, 운영 시간, 보육과정 운영, 어린이집 안전 공제회 의무 가입 등 현행 기준을 준수하고, 어린이집 정보를 공개해야 하며, 자율공부모임 등 사후품질관리의 의무 참여가 요구된다.

1) 평가인증 점수

평가인증 유효 기간 내의 점수가 90.0점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유효 기간은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선정이 확정된 달의 익월 1일부터 3년간 유효하다(보건복지부, 2015b: 29). 시범사업 기간(2011. 7~2012. 6)에 참여한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2012년 7월에서 2013년 6월까지 재인증에 참여하여 그 결과가 80.0점 이상이면 되었으나, 2013년 7월부터는 그 결과가 90.0점 이상이어야만 공공형어린이집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보건복지부, 2013: 23).

2) 취약계층 우선 보육 등

공공형어린이집은 취약계층에 대해 우선 보육을 수행하고, 국공립어린이집과 동일하게 입소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한다. 특히 관할 지자체에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시간연장, 장애아통합보육, 휴일보육, 다문화보육, 시간제보육 중 1개 이상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보건복지부, 2015b: 29).

3) 보육료 수납

부모로부터 받는 보육료를 정부지원단가(국공립어린이집 보육료)와 동일하게 수납하여야 한다. 이에 더하여 2013년부터는 공공형어린이집 선정으로 부모로부터 받는 보육료를 인하하는 대신 필요경비를 인상하여 추가로 수납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5b: 29; 보건복지부, 2013: 23).

4) 보육교사 급여

공공형어린이집은 보육교사 월 급여를 국공립어린이집 1호봉(2015년 기준 1,521,380원)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2013년부터는 이를 좀 더 명확히 하여 처우개선비, 근무환경개선비 등 국가·지자체가 직접 교사에게 지급하는 비용 및

시간외근무수당은 별도임을 명시하였고,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 급기준 개정사항과 연동하여 지급하도록 하였다. 또한, 선정 전 국공립어린이집 1호봉 이상으로 월 급여를 받는 보육교사의 경우는 종전 급여 수준을 유지해야 하며, 선정 후 월 급여를 낮추거나 근무시간을 늘려 실질 월 급여를 낮출 수 없 도록 하였다(보건복지부, 2015b: 29-30; 보건복지부, 2013: 23-24).

5) 운영 시간

2012년까지는 어린이집 운영 시간에 대해 별도의 규정이 없었으나, 2013년부 터 공공형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평일 오후 7시 30분까지 운영해야 한다. 또한, 지역 실정, 부모와의 협의를 이유로 단축하여 운 영할 수 없다(보건복지부, 2015b: 30; 보건복지부, 2013: 24).

6) 표준보육과정

공공형어린이집은 표준보육과정에 기반을 둔 연령별 보육프로그램을 필수적으 로 운영하고, 특별활동 적정 관리 방안을 준수하여야 한다(보건복지부, 2015b: 30).

7)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의무가입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의 영유아의 생명·신체상의 피해에 대한 공제상품에 반 드시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5b: 30). 이는 「영유아보육법」이 2011년 8월 개정을 통해 2012년 2월부터는 모든 어린이집이 안전공제회에 당연 히 가입하도록 규정되므로 당연한 조치로 보여진다.

8) 사후품질관리 의무참여

공공형어린이집은 보육진흥원이 주관하는 사후품질관리(자율공부모임, 필수교 육, 재무회계 컨설팅 등)에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한다(보건복지부, 2015b: 30).

9) 어린이집 정보 공개

공공형어린이집은 어린이집의 상세 정보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여 부모·지 역사회 등에 공개해야 한다. 현재는 ① 어린이집 시설, 설치·운영자, 보육교직원 등, ② 보육과정에 관한 사항, ③ 보육료와 필요경비에 관한 사항, ④ 어린이집

의 예·결산 등의 회계사항, ⑤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관리 사항 등을 공공 형어린이집 홈페이지와 아이사랑포털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보건복지 부, 2015b: 30).

이상 공공형어린이집 운영 기준의 변화과정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Ⅲ-1-9〉공공형어린이집 운영 기준 주요 변경사항(2012-2015)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 보육교사 급여○ 보육교사 월 급여를 국공립어린 이집 1호봉(최저 수준임) 이상으로 지급	□ 보육교사 급여 ○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 1호봉 기준을 준용 ○ 공공형으로 선정된 다음 월부터 적용 ○ 국공립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 기준 개정사항과 연동하여 지급	-	-
□ 표준보육과정에 기반을 둔 연령 별 보육프로그램을 필수적으로 운영	□ 특별활동 적정 관리방안 준수	-	_
□ 한국보육진흥원 주관 사후품질관리 의무 참석 - 설명회(필수교육), 자율공부모임, 운영 컨설팅 등	□ 사후품질관리 참여 실적 등의 내 용은 공공형어린이집 재선정 시 반영	□ 사후품질관리: 필수교육, 자율 공부모임, 품질관리 컨설팅(운 영컨설팅+재무회계컨설팅) 등	□ 사후품질관리: 교사연수, 자율 공부모임, 재무회계 컨설팅 등

<u>(표 Ⅲ-1-9</u> 계속)

2012 년도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 어린이집 상세 정보를 주기적으로 부모·지역사회 등에 공개 ○ 어린이집별 평가인증 영역별 점수, 보육교직원 현황, 급식 식단표, 특별활동 프로그램 현황 등을 공공형어린이집 홈페이지 및 아이사랑보육포털을 통해 공개 	○ 어린이집 상세 정보를 주기적으로 부모지역사회 등에 공개 ○ 어린이집별 평가인증 총점 및 영역별 점수, 보육교직원 현황, 특별활동 프로그램 현황, 급식, 예결산 내역 등을 아이사랑보육포털을 통해 공개 ○ 신규 선정 어린이집은 공공형어린이집 운영 첫 달 20일까지 모든 정보를 아이사랑보육포털에 공개 완료	○ 어린이집의 상세 정보를 주기 적으로 업데이트하여 부모지 역사회 등에 공개 ○ 어린이집의 시설, 설치·운영자, 보육교직원 등 기본현황, 법 제29조에 따른 보육과정에 관 한 사항, 법 제38조에 따라 수납하는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에 관한 사항, 어린 이집 예결산 등 회계에 관한 사항,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신 설>	□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기준 준수 ○ 공공형어린이집은 세부 선정기준 중 건물 소유 형태와 관련하여 선 정확정 이후 변경사항이 발생(자가)임대, 전용→복합에 한함)할 경우 해당 사·군구에 보고하고 사·군구는 재평가를 실시(변경사항 발생 익일부터 30일 이내, 전체 선정기준)하여 사·도별 해당 어린이집 선정 시점의 커트라인 점수 이	□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기준 준수 ○ 재평가 시 시·군·구는 <u>선정 당</u> <u>시의 기준으로</u> 재평가를 시행	-

(표 Ⅲ-1-9 계속)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상일 경우에 한해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유지		

- 자료: 1) 보건복지부(2015b). 2015 공공형어린이집 업무 매뉴얼. pp. 10-11. 2) 보건복지부(2014). 2014 공공형어린이집 업무 매뉴얼. pp. 5-6. 3) 보건복지부(2013). 2013 공공형어린이집 업무 매뉴얼. pp. 5-7.

다. 지원 내용

공공형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에는 크게 운영비 지원과 서비스 질적 수준 제고 를 위한 교육 지원 등이 있다.

1) 운영비 지급

운영비는 어린이집 규모(정원)에 따라 매월 정해진 일자에 차등으로 지급하였다. 다만, 기존에는 어린이집 정원을 6구간으로 나누어 최소 96만원부터 최대 870만원까지 지원하던 운영비를 2013년 7월부터는 10구간으로 좀 더 세분화하여 최소 116만원부터 최대 875만원을 지원하였다(보건복지부, 2015b: 32; 보건복지부, 2013: 26). 이 같은 정원을 기준으로 한 운영비 지원 방식에 따라 특히, 소규모인 가정어린이집의 운영비 지원 수준이 가장 낮은 상황이었다.

이 같은 지원 방식은 2015년 9월에 개편되어 ① 보육교사 급여 상승분에 대한 지원, ② 유아반 운영비 지원, ③ 교육·환경개선비로 구분하여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국공립 수준으로 지급해야 하는 보육교사 급여 상승분에 대한 인건비 지원 방식을 따르는 것인데, 종일반 담임교사 1명에 대해 35만원을 지원한다. 유아반 운영비는 3~5세 반을 운영하는 1개소당 60만원을 지급하는데 지급 기준은 3세의 경우 현원 8인 이상이어야 하며, 4세 이상은 현원 11인 이상이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교육·환경개선비는 재원 아동 1인당 1만5천 원을 지급한다. 방과후 아동은 제외하며, 기관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한다(표 III-14 참조). 새로운 지원 방식으로 인해 규모별 큰 차이가 있던 지원액은 다소 균등해질 것으로 보이나, 기존에 최대 액을 지원받던 규모가 큰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지원액의 감소에 따른 대비책이 필요해 보인다.

2) 지자체 특수시책 예산의 우선 지원

공공형어린이집 업무 매뉴얼에 따르면(보건복지부, 2015b: 33), 공공형어린이집은 정부에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정부지원시설로서 해당 지자체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선정된 어린이집에 대하여 운영비, 종사자 인건비, 환경개선비 등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3) 사후품질관리

보건복지부는 공공형어린이집의 우수한 질적 수준을 유지·향상시킴으로써 수 요자에게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한국보육진흥원에 공공형어린이 집 사후품질관리사업을 위탁하여 필수교육, 자율공부모임, 재무회계 컨설팅 등 을 실시하고 있다.

가) 자율공부모임

자율공부모임은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을 제공하고, 소 그룹 워크숍을 통해 보육교직원 간 적극적인 의견 교류를 유도함으로써 보육서 비스 질적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자율적 질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연도별로 교육과정을 구분 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필수교육과 기본과정은 신규선정 어린이집 원장이며, 심 화과정은 선정 2~3년 차 어린이집, 자율과정은 선정 4년 차 이상 어린이집을 대 상으로 한다(보건복지부, 2015b: 39-40).

나) 교사 연수

교사 연수는 보육교사로서 갖추어야 하는 기본지식, 소양과 더불어 실천적 지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공공형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기본과정 및 심화과정으로 구분되는데, 공공형어 린이집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하여 신청제로 운영한다(보건복지부, 2015b: 41).

다) 재무회계 컨설팅

재무회계 컨설팅은 공공형어린이집의 재무회계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 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전체 공공형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며, 진흥원에서 선발한 재무회계 코디네이터가 공공형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재무회계 운영수준 에 따른 1:1 맞춤형 컨설팅을 수행한다. 주로 예·결산 편성 및 집행방법, 재무회 계 관련 증빙서류 관리 및 문서 작성, 유지방법 등을 내용으로 한다(보건복지부, 2015b: 42).

〈표 Ⅲ-1-10〉공공형어린이집 지원 내용 주요 변경사항(2012-2015)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 운영비 지급 기준	□ 운영비 지급 기준	□ 운영비 지급 기준	□ 운영비 지급 기준 변경(2015. 9.)
20 21~ 50~ 77~ 98~ 12.4 정 인 49 76 97 123 인	정 인 21~ 36~ 50~ 63~ 정 인 35 49 62 76	○ 사군구는 공공형어린이집의 자이오 조이되었는	○ 전월 현황자료를 토대로 다음 기준에 따라 산출하 되,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
원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정원을 증원하려는 경우 보육수요와	구분 단가 기준 세부사항
월 248	하 면 면 면 면 면 면 면 면 면 면 면 면 면 면 면 면 만 만 만 만 만 만 만 만 만 만 만 만 된 원 원 원 원 원 원	함께 운영비 지원예산을 고려하여야 함	보육교 35 종일반 -현원 1명 이상인 담임교 다급여 만 사 -종일반이 아닌 방과후, 시 1인당 간연장, 시간제 등 제외
(핵	액 년 년 년 년 년 년 정 86 97 111 ~123 인 원 인 인 인 인 상		 유아반 운영비 원 40 유아반 운영비 원 (조지급 기준> -3세: 현원 8인 이상인 반 -4세 이상 현원 11인 이상인 반 *단, 지급 기준 인원수를 채우지 못한 경우라도 현원 5인 이상인 반에 대해서는 단가의 50% 지급
	지 300 500 623 644 613 원 만 만 만 만 만 액 원 원 원 원 원		교육· 1.5 재원 -현원 기준 환경 만 아동 -기관당 최대 300만원까지 개선비 원 1인당 지급
			※ 위 기준은 신규기관과 재선정기관에 대해서는 2015. 9.부터 적용하며, 기존에 운영 중인 기관에 대해서는 2016. 1.부터 적용예정 ○ 공공형어란이집의 정원을 증원하려는 경우 시군구는 <u>시도와</u> 합하여 보육수요와 함께 운영비 지원예산을 고려하여야 함

(표 Ⅲ-1-10 계속)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2014년도 2015년도 □ '지자체 특수시책' 예산(자체 지방비) 지원 ○ 해당 지자체의 예산의 범위 내에 ○ 공공형어린이집은 정부에서 운영	
지방비) 지원 o 해당 지자체의 예산의 범위 내에	
○ 해당 지자체의 예산의 범위 내에 ○ <u>공공형어린이집은 정부에서 운영</u>	∥지방
	·영비를
서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선정된 지원하는 정부지원시설로서 해당	내당 지
어린이집에 대하여 운영비, 종사 자체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공	-공형어
자 인건비, 환경개선비 등을 우선 린이집으로 선정된 어린이집에] 대하
적으로 지원할 수 있음 여 운영비, 종사자 인건비, 환경	경개선
비 등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음	음
□ 사후품질관리(한국보육진흥원 주 □ 사후품질관리 지원 □ 사후품질관리 지원 □ 사후품질관리지원	
관) 지원 - 2013. 9부터 재무회계컨설팅 시범 - 필수교육, 자율공부모 - 교사연수, 자율공부모임, <u>재무회계</u>	<u> 1 컨설</u>
- 설명회(필수교육), 자율공부모임, 사업 시작 임, <u>품질관리 컨설팅</u> <u>팅</u> 등	
운영 컨설팅 등 <u>(운영컨설팅+재무회계</u>	
<u>컨설팅</u>) 등	

자료: 1) 보건복지부(2015b). 2015 공공형어린이집 업무 매뉴얼. pp. 27-28, 34-39.

2) 보건복지부(2014). 2014 공공형어린이집 업무 매뉴얼. p. 21, 23. 3) 보건복지부(2013). 2013 공공형어린이집 업무 매뉴얼. pp. 5-6, 26.

2. 유사기관 관련 규정

공공성 차원에서 현행 공공형어린이집 제도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 위탁 운영되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 기준과 서울형어린이집 제도를 살펴보았다.

가. 국공립(위탁)어린이집 지원 내용

1) 인건비 지원

가) 원장

원장에 대해서는 인건비 80%를 지원한다. 다만, 정원 20인(농어촌 11인) 이하어린이집, 정원 21인 이상 어린이집 중 현원 20인(농어촌 11인) 이하인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직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보건복지부, 2015a: 293).

나) 보육교사

(1) 영아반 교사: 인건비의 80% 지원

0세 반의 경우 아동 3명을 기준으로 재원 아동이 최소 2명 이상인 반의 교사 인건비를 지원하며, 1세 반은 아동 5명 기준, 재원 아동 최소 3명 이상, 2세 반 은 아동 7명 기준, 재원 아동 최소 4명 이상인 반의 교사 인건비를 지원한다(보 건복지부, 2015a: 294).

(2) 유아반 교사: 인건비의 30% 지원

3세 반은 아동 15명을 기준으로 재원 아동이 최소 8명 이상인 반의 교사 인건비를 지원하며, 4세 이상 반은 아동 20명을 기준으로 재원 아동이 최소 11명이상인 반의 교사 인건비를 지원한다(보건복지부, 2015a: 294).

(3) 방과후반 교사

2004년 이전에 방과후 어린이집으로 지정되어 지원받고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만 인건비의 50%를 지원한다(보건복지부, 2015a: 294).

(4) 기타

시간제보육교사 인건비는 지원하지 않으므로 보육료에서 충당하여야 하며, 농촌 소규모 어린이집에서 혼합반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낮은 연령을 기준으로 교사 인건비를 지원한다(보건복지부, 2015a: 294).

한편, 서울시의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 취사부, 비담임교사(또는 보육 도우미)에 대해 4대 보험료를 포함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

다) 대체교직원

기존 인건비 지원 대상자의 출산휴가로 인해 대체교직원 채용 시 출산 휴가 자의 호봉을 기준으로 해당 어린이집에 인거비를 지원한다. 만약 기존 인거비 지원 대상자의 육아휴직, 산재휴직 등에 따라 대체교직원을 채용한 경우에는 대 체교사의 호봉에 따라 인건비를 지원한다(보건복지부, 2015a: 294-295).

(1) 농어촌 등 취약지역 추가 인건비 지원

농어촌지역, 폐광지역, 도서벽지지역 시설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 육교사 1명 인건비를 100% 추가로 지원하며, 취사부를 별도로 채용한 경우에는 월 지급액의 100%를 1명에 한하여 지원한다.(보건복지부, 2015a: 295)

(2) 중소도시·대도시 평가인증 통과 어린이집 취사부 지원 평가인증발표일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지원하며, 취사부를 별도 채용한 경우 에만 월 지급액의 100%를 1명에 한하여 지원한다(보건복지부, 2015a: 296).

2) 설치비 지원

서울시의 경우 기존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리모델링 비를 지원하고 있다(서울특별시, 2015a: 44). 임대 기간과 계약 형태에 따라 약 간의 차이는 있으나 민간어린이집의 경우 기자재비 포함 최대 1억5천만원을 지 원하며,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최대 5천만원을 지원한다. 그리고 공동주택의 경 우 기자재비 포함 최대 1억5천만원 외에 최대 7천만원의 주민 공동이용시설 개 선비를 지원해주고 있다.

나. 서울형어린이집

서울시는 민간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기본요건, 맞춤보육, 안 심보육, 클린운영, 보육인력 전문성, 공인심의 등 서울형어린이집 공인 평가지표 를 마련하여 서울형어린이집에 대해 평가 및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서울특별시, 2015b). 또한, 서울특별시는 서울형어린이집 평가지표에 부합하는 민간어린이집

에 인건비, 처우개선비, 중식비, 환경개선비, 기타 인건비 등에 공적 자금을 지원한다(서울특별시, 2015b).

〈표 Ⅲ-2-1〉서울형어린이집 공인 시설 현황(2014-2015)

단위: 개소(%)

구분	합계	법인	민간	가정	부모 협동	직장	법인 단체등
증감 수	-143	-2	-44	-91	-	-	-6
전년 대비 증감률	-8.5	-8.3	-5.8	-11.2	-	-	-9.8
 2015년	1,548	22	721	723	8	19	55
2015년	(100.0)	(1.4)	(46.6)	(46.7)	(0.8)	(1.2)	(3.6)
 2014년	1,691	24	765	814	8	19	61
2014년	(100.0)	(1.4)	(45.2)	(48.1)	(0.5)	(1.1)	(3.6)

자료: 1) 서울특별시 보육포털서비스 홈페이지(iseoul.seoul.go.kr, 검색일 2015년 7월 2일).

2014년 및 2015년 현재 공인된 서울형어린이집 현황은 <표 Ⅱ-2-1>과 같다. 전체 개소 수는 2014년에 비해 2015년 7월 현재 143개소 감소하였으며, 전년 대비 약 8.5% 감소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울특별시, 2014; 서울특별시 보육포털서비스 홈페이지, 검색일 2015년 7월 2일). 세부적으로 부모협동과 직장어린이집은 전년 대비 증감률을 보이지 않았으며, 이외의 모든 유형은 감소율을나타냈다.

한편, 공인된 서울형어린이집 수를 어린이집 연도별 및 유형별로 살펴보면 2014년 및 2015년 모두 가정어린이집이 각각 814개소(48.1%), 723개소(46.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울특별시, 2014; 서울특별시 보육포 털서비스 홈페이지, 검색일 2015년 7월 2일). 다음으로는 민간이 각각 765개소(45.2%), 721개소(46.6%), 법인단체 등 61개소(3.6%) 및 55개소(3.6%), 법인 24개소(1.4%) 및 22개소(1.4%), 직장 19개소(1.1%) 및 19개소(1.2), 부모협동 8개소(0.5%) 및 8개소(0.8%)로 2014, 2015년 모두 동일한 순이다.

1) 선정 요건 및 평가지표

서울형어린이집 신청 대상은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단체등어린이집, 민 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부모협동어린이집이며, 신청 제한 대상은 다음과 같 다. 1) 국공립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장애아전문어린이집, 방과후 전담어린이

²⁾ 서울특별시(2014). 서울형어린이집 공인 유지 현황.

집, 주거겸용 어린이집, 2) 공고일이 속한 이전 6개월간 정원 충족률이 평균 70% 미만 어린이집이거나 11명 이하인 어린이집, 3) 공인 신청 마감일 현재 정 부 평가인증 점수가 90점 미만 어린이집, 4) 공고일이 속한 월부터 어린이집입 소관리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은 어린이집, 5) 공인취소 2항에 해당하는 행정처분 중이거나 행정처분을 받는 어린이집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어린이집, 5) 공인 취소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어린이집, 6) 신규인가 또는 대표자 변경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어린이집, 7) 공인인증 처분을 받은 어린이 집의 대표자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대표자 변경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어린이집, 8) 서울형어린이집 매도 경력이 2회 이상 있는 대표자가 운영하는 어 린이집은 영구적으로 공인신청 제한, 9) 공인취소 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대표자 가 공인신청 마감일 기준 최근 5년간 신규로 인가받은 어린이집이다(서울특별 시, 2015a: 63-64).

〈표 Ⅲ-2-2〉서울형어린이집 공인 평가지표(2015)¹⁾

		분야	 평가내용	배점
		_ · · · · · · · · · · · · · · · · · · ·	- 정부 평가인증 취득점수: 20점(2단계)	<u> 20점</u>
		맞춤보육	- 맞춤보육실시 여부 등	
	안 심 님	시설 안전	- 비상재해대피시설 설치 등의 재해 대책 마련 - 영유아 안전관리 등	-
현장	보 · 육	시설의 급식·위생	- 보육시설 청결 위생 등 - 급간식 위생 여부 등	-
실사 3)	클 린	회계 투명성	- 1시설 1계좌 등 회계관리 투명성 등 - 보육료 등 경비 수납의 클린성 등	66점
	운 영	시설 운영의 투명성	- 외부에 어린이집 정보 공개 등	-
	j	보육인력 전문성	- 전문인력 확보 및 보육교직원 자질 향상 노력 등	
	-	공인심의	- 14점(실사자 종합소견 4점, 자치구 추천의견 3점, 심사위원회 심의 7점)	14점
계				100점

주: 1) 백선희(2011).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 방안. p. 66 <표 Ⅲ-7>에 추가·보완함. 2) 95점 이상 20점, 90~94점 19점으로, 2015년 신규 공인시설은 2016년부터 평가인증 90점 이상 유지해야 함.

³⁾ 현장 실사 점수는 66점으로, 4개 분야 9개 지표로서 총 46개 항목임. 자료: 서울특별시(2015b). 서울형어린이집 신규 공인 안내. p. 10.

신규 공인은 필수지표(항목)를 충족하고, 종합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고득점순대로 결정한다. 필수항목으로는 ① 비상재해대비시설 현행기준 준수,② 어린이집 명의의 1계좌(클린카드 통장) 사용,③ 금융기관을 통한 보육료 및 필요경비 수납,④ 임대료 및 융자금 이자 10% 미만으로 사용,⑤ 클린운영 지표 평가결과 70% 이상으로 재정 건전성 확보 등이다. 필수 항목 중 1개 지표라도 미이행 시 평가 점수와 관계없이 서울형어린이집 신규 공인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 밖에 평가 항목은 기본요건 20점, 현장 실사 66점, 공인심의 14점 외에가(+10점)·감점(-6점) 사항으로 이루어진다(서울특별시, 2015a: 64; 서울특별시, 2015b: 10).

재평가 역시 필수요건 5개를 충족하고, 85점 이상인 경우 공인을 통과하게 되는데, 총 배점은 기본요건 10점과 공인심의 15점 외에 현장 실사 75점에 가(+5점)·감점(-2점)이 포함된다. 재평가공인에서 필수항목은 신규 공인 때와 같지만, 현장 실사가 강화되고 배점이 높아진다(서울특별시, 2015c: 4).

2) 운영 기준

'2015년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에 의하면, 서울형어린이집 운영의 기본 원칙 및 세부 운영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기본 원칙: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 및 관리 기준의 적용

서울형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기준을 적용한다. 즉 보육료 및 필요경비 수납기준, 보육교직원 보수기준, 국공립어린이집 예산 편성 및 지출 기준, 초과보육 기준 등은 국공립어린이집 관련 규정에 준한다. 서울형어린이집의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주요 항목별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표준보육프로그램 및 누리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서울특별시, 2015a: 66).

나) 맞춤(취약) 보육서비스 제공

서울형어린이집은 맞춤(취약)보육(시간연장, 14시간, 휴일, 장애아통합, 다문화통합)을 1개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자치구에서 수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보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맞춤보육서비스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맞춤보육 운영계획(보육 목적, 프로그램 특성, 보육시간, 보육료,

교직원 배치, 특성에 맞는 공간 확보 및 환경 조성)을 수립해야 한다. 그 밖에도 어린이집 맞춤보육 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하며, 맞춤보육 특성에 맞는 시설환경 을 조성해야 한다(서울특별시, 2015a: 66).

다) 안심보육서비스 제공

서울형어린이집은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교육, 컨설팅 등에 참여해 야 하며, 서울형어린이집의 운영 실태 및 공인기준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한 서울시 및 자치구의 지도 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 또한, 급식관리를 위해 농수 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경우 식단표에 원산지를 기재하여 공 개하여야 하며, 서울시 보육포털에 공지하여야 한다. 그 밖에도 위생관리 측면 에서 어린이집의 모든 실내 공간(보육실, 유희실, 자료실, 식당, 화장실, 계단 등) 은 매일 청소하고, 2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소독을 시행하여야 하며, 인가 받은 면적과 관계없이 석면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할 구청에 제출하여 야 한다(서울특별시, 2015a: 67).

라) 회계의 투명한 관리

(1) 회계관리

어린이집 관리시스템으로 회계관리를 하고, 모든 예산 집행은 승인(등록)된 클린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서울특별시, 2015a: 67).

모든 비용은 어린이집 명의 클린카드로 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 이한 경우에 계좌입금,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나, 현금지출 은 3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다(서울특별시, 2015a: 68).

보육료 및 기타 필요경비는 아이행복카드 등 금융기관을 통해 수납하여야 하 며, 분기별로 보육료 및 기타 필요경비 결산내역을 가정통신문, 홈페이지 등을 통해 부모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한편, 기타 운영비는 보육료 수입의 10% 이내 사용 가능하며, 감가상각비는 3년 이내로만 적립할 수 있다. 서울형어린이집 공 인 유효 기간 내에 감가상각비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적립액은 전액 반환하여 야 한다(서울특별시, 2015a: 68-69).

(2) 보육료 등의 수납

보육료는 어린이집 유형에 상관없이 정부지원시설 보육료 지원 단가 범위 내 에서 실비를 수납하여야 한다(서울특별시, 2015a: 69).

필요경비(특별활동비, 입학준비금, 현장학습비 등)는 서울시 및 자치구별 국공립어린이집 수납 한도액 범위 내에서 실비를 수납하여야 하며, 보육료 및 필요경비 이외의 잡부금을 수납해서는 안 된다.

그 밖에 보육료 등 납부고지서를 발급해야 하며, 보육료 및 필요경비 수납액을 어린이집에 게시하고, 보호자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특별활동비는 교재교구비, 외부 강사 인건비 및 특별활동 운영 소요 경비에 한하며, 건강진단비 명목으로 비용을 수납해서는 안 된다.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 가입한 시설은 상해 보험료를 수납할 수 없으며, 재입소료 명목의 별도 비용을 수납할 수 없다.

마) 기타 사항

서울형어린이집은 어린이집 운영 시간 및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준수하여야 하며, 초과보육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만2세와 만3세 혼합반 운영은 불가하며, 보육교직원 채용은 공개경쟁에 의한 방법으로 시행해야 한다. 그리고 교직원 채용 시에는 임금, 근로시간 및 그 밖의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서울특별시, 2015a: 70).

3) 지원 내용

가) 인건비 지원

(1) 원장

원장 인건비는 정부의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의 원장 1호봉 기준으로 매년 지원하며, 인건비의 80%를 지원한다. 그리고 가정어린이집의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매년 원장 1호봉 기준으로 지원한다. 다만, 정원 21인 이상 어린이집에 한하며, 정원 20인 이하 어린이집 또는 정원 21인 이상 어린이집 중 현원 20인 이하 어린이집은 제외한다(서울특별시, 2015a: 71).

(2) 보육교사 및 취사부

보육교사, 취사부 인건비는 정부의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의 보육교사 및 취사부 1호봉 기준으로 지원하되, 매년 호봉승급을 적용하여 지원한다. 서울 형어린이집 비담임교사가 서울형어린이집 교사로 임용될 경우에는 보육교사 근무경력은 인정하되, 인건비 지원호봉은 경력의 50%를 인정하여 확정한다. 한편, 보육교사, 취사부가 다른 어린이집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서울형어린이집 공인

영아반 교사는 인건비의 80%를 지원하며, 영아반 교사는 인건비의 30%를 지원한다. 그리고 취사부는 1인에 한하여 인건비의 100%를 지원하나, 현원 40인이상 어린이집에 한하여 지원한다.

(3) 시간연장 어린이집 전담교사

월 지급액의 80%를 지원한다. 19시 30분 이후 시간연장 보육아동 2명 이상 그리고 해당 시간연장반 전체 아동 시간연장 보육시간 총합이 월 20시간 이상 인 때에만 시간연장 전담교사 인건비를 지원한다. 1인당 120만원은 국비보조사 업비로 지원 후 서울형어린이집 인건비에서 나머지 차액을 추가로 지원한다. 따라서 시간연장 전담교사는 어린이집 정원 범위 내에서 최대 5명까지 월 120만 원 지원하는 국비 사업으로 우선 집행하고, 6명 이상부터는 서울형어린이집 인 건비에서 월 지급액의 80%를 전액 지원한다(서울특별시, 2015a: 72).

(4) 24시간 어린이집 전담교사

월 지급액의 80%를 지원한다. 1인당 120만원은 국비보조사업비로 지원 후 서울형어린이집 인건비에서 나머지 차액을 추가로 지원한다(서울특별시, 2015a: 72).

(5)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전담교사

관할 구청장이 장애아통합어린이집으로 지정한 시설로 미취학 장애아 3명 이상을 보육하고 교사 대 아동 비율 준수를 전제로 장애아 보육을 위한 장애아전담교사를 채용한 경우 장애아전담교사 인건비를 지원한다. 월 지급액의 80%를 지원하며, 1인당 130만원은 국비보조사업비로 지원 후 서울형어린이집 인건비에서 나머지 차액을 추가로 지원한다(서울특별시, 2015a: 72-73).

(6) 비담임교사 및 보육 도우미

1일 6시간(휴게 시간 미포함), 주 5일 이상 근무하는 경우 지원한다. 이때 4대 보험 사업자 부담금 및 퇴직적립금은 어린이집에서 부담하여야 하며, 2가지 중 1가지만을 선택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 비담임교사의 경우 114만원을 지원하며, 보육도우미는 88만원을 지원한다(서울특별시, 2015a: 74).

나) 처우개선비 및 중식비 지원

국공립어린이집과 동일 기준을 적용하며, 다만, 기능보강비는 제외한다. 가정

어린이집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직하는 경우 처우개선비는 원장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중식비는 지원하지 않는다(서울특별시, 2015a: 73).

다) 기타 운영비

현원을 기준으로 평균보육료 수입의 10%를 지원한다. 아동현원은 매월 신청일 기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등재된 수를 기준으로 하며, 방과후 아동은 포함하지 않는다. 평균보육료의 단가는 매년 서울시에서 정하며, 2015년 현재 아동 1인 평균보육료는 286,330원이다(서울특별시, 2015a: 73).

라) 환경개선비 지원

환경개선비는 신규 공인시설에 한하여 지원한다. 서울형어린이집 현관·간판 및 시설개·보수비를 지원하며, 지원액은 시설규모별로 차등을 둔다(서울특별시, 2015a: 73).

〈표 Ⅲ-2-3〉서울형어린이집 지원 내용¹⁾

구분	지원 내용
인건비	 정원 및 현원 21인 이상 시설의 원장, 영아반 교사 인건비의 80% 지원 유아반 교사 인건비의 30% 지원 현원 40인 이상 어린이집의 취사부 1인 인건비 100% 지원 시간연장·24시간장애아통합 어린이집 전담교사 월 지급액의 80% 지원
처우개선비, 중식비 등	- 국공립어린이집과 동일 기준 적용(다만, 기능보강비는 제 외)
기타 운영비	- 현원 기준 평균보육료 수입의 10%
환경개선비	- 서울형 신규 공인 시에 한해 지원
비담임교사 및 보육 도우미 인거비 ²⁾	 1일 6시간, 주 5일 이상 근무 시 비담임교사는 114만원 지원, 보육 도우미 88만원 지원

주: 1) 백선희(2011).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 방안. p. 67 <표 Ⅲ-8>에 추가·보완함. 2) 4대 보험 사업자 부담금 및 퇴직적립금은 어린이집에서 부담.

3. 종합 비교 및 시사점

이상에서 살펴본 공공형어린이집 제도의 주요 내용 즉 선정 기준, 운영 기준,

자료: 서울특별시(2015a). 2015년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pp. 71-74.

지원 내용을 국공립어린이집, 서울형어린이집과 비교하여 공공성 차원의 시사점 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가. 신청 대상 및 선정 기준

1) 신청 대상

서울형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제13조에 따라 설치된 서울 소재 어린이 집 중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 집, 부모협동어린이집을 그 신청 대상으로 하고 있다(서울특별시, 2015a: 63). 반 면에 공공형어린이집은 보육사업안내에 따라 인건비를 지원받는 정부지원어린 이집8)과 공공기관 또는 고용보험기금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직장어린이집 은 그 신청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 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보건복지부, 2015b: 13).

한편, 서울형어린이집의 경우 2012년 도입 당시에는 「영유아보육법」제12조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및 제13조(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의 설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서울 소재 어린이집을 대상 시설로 하면서 국공립어린이집 과 직장어린이집을 모두 신청 대상에 포함하였으나, 2013년도부터 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라 설치된 서울 소재 어린이집으로 한정함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과 직장어린이집을 신청 대상에서 제외하였다(서울특별시, 2013: 7, 17 참조). 이 는 정부보조금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서 중복적으로 지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변경 이후에도 서울형어린이집의 경우는 정부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과 법인단체등어린이집은 신청 대상 자격이 유 지된다. 이들 기관의 서비스 질이 국공립어린이집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추 가 지원을 통한 개선이 고려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정부로부터 운영비를 지 원받는 기관의 추가 지원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숙고가 필요하다고 본다.

⁸⁾ 통상 정부지원어린이집은 인건비를 지원받는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영아전담, 장애아전문 어린이집과 공공기관 또는 고용보험기금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직장어린이집 을 말한다(보건복지부, 2015a: 320 참조).

〈표 Ⅲ-3-1〉서울형어린이집/공공형어린이집 신청 대상 비교

서울형어린이집	공공형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제13조에 따라 설치된 서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어린이집		
울 소재 어린이집 중 사회복지법인어린이	- 『보육사업안내』에 따라 인건비를 지원		
집, 법인· 단체 등 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받는 "정부지원어린이집 제외"		
및 가정어린이집, 부모협동어린이집	- 공공기관 또는 공용보험기금으로부터 운		
	영비를 지원받는 직장어린이집 제외		

- 자료: 1) 보건복지부(2015b). 2015 공공형어린이집 업무 매뉴얼. p. 9.
 - 2) 서울특별시(2015a). 2015년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p. 63.

2) 선정 기준 및 평가지표

가) 평가 및 배점

서울형어린이집은 필수항목(5개)을 기본적으로 충족한 후 평가지표를 85점 이상 득점한 어린이집 중 평가점수 고득점순대로 선정한다. 평가지표는 기본요건 20점과 현장 실사 66점, 공인심의 14점 등 총 100점에 가점사항 10점과 감점사항 6점으로 배점되어 있다(서울특별시, 2015b: 10).

공공형어린이집 역시 참여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평가지표를 85점 이상 득점한 어린이집 중 평가점수 고득점순대로 선정한다. 평가지표는 기본점수 100점에 가점사항 21점과 감점사항 8점으로 배점되어 있다(보건복지부, 2015b: 19).

나) 필수항목 및 참여 기본요건 등

우선, 서울형어린이집의 필수항목은 ① 비상재해대비시설 현행기준 준수, ② 어린이집 명의의 1계좌(클린카드 통장) 사용, ③ 금융기관을 통한 보육료 및 필요경비 수납, ④ 임대료 및 융자금 이자 10% 미만으로 사용, ⑤ 클린운영 지표평가결과 70% 이상으로 재정 건전성 확보 등인데, 공공형어린이집의 경우 ①과④ 요건은 선정제외 대상 요건에 해당하여 영유아보육법령에 따른 비상재해대비시설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월 임대료 및 융자금 상환액이 보육료 수입의 10%이상인 어린이집은 공공형어린이집 선정에 참여할 수 없다(서울특별시, 2015b: 10; 보건복지부, 2015b: 16-18).

한편, 공공형어린이집과 서울형어린이집 모두 평가인증 유효 기간 내의 점수가 90점 이상일 것을 필요로 하는데, 서울형어린이집은 평가인증 점수가 95점 이상인 경우에는 20점, 90점~94점인 경우 19점으로 2단계로 나누어 점수를 배점하고 있으며, 공공형은 2013년까지는 4단계로 구분하여 28점부터 35점까지 점수

를 배분하다가 2014년부터는 배점방식을 변경하여 평가인증 총점 산식에 따른 환산점수에 따라 25점부터 35점까지 점수 차이를 크게 두고 있다. 그 밖에 공공 형어린이집은 어린이집별 정원 충족률이 평균적으로 80% 이상 유지할 것을 참 여 기본요건으로 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5b: 15).

다) 기타 가·감점 사항 등 지표

서울형어린이집의 경우 맞춤보육, 안심보육, 클린운영, 보육인력 전문성 등 4 대 분야 9개 지표 47개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고, 현장 실사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설 안전이나 급식 위생시설 등에 대한 면밀한 평가가 가능하다. 항목 별로 다면적 평가를 적용하고(문서, 관찰 등), 평가 기간과 시점, 방법 등이 구 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또한, 가·감점 사항도 특별활동비, 특성화비 등 부모부 담비용 여부와 놀이시설의 안전 여부, 차량운행의 안전 소홀 여부 등 부모들의 서비스 만족도와 직결되는 현장 중심의 평가 항목들이 적용된다(서울특별시, 2015b: 10-11).

〈표 Ⅲ-3-2〉서울형어린이집/공공형어린이집 선정 기준 비교

 구분	서울형어린이집	공공형어린이집
	, = 0 , = , =	중중영어단이십
선정 기준	 『2015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V. 서울형어린이집 운영 평가지표에 따름 필수항목(5개) 충족 + 85점 이상득점: 평가점수 고득점순 총배점: 100점(기본요건 20점 + 현장실사 66점 + 공인심의 14점) ± 가점(10)·감점(6) 	『공공형어린이집 업무 매뉴얼』(2015, 보건복지부 지침) 1.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기준표에 따름 - 참여 기본요건 + 85점 이상 득점: 평가점수 고득점순 - 기본점수(100점) ± 가점(21)·감점(8)
필수 항목 및 기본 요건	- 평가인증 점수 90점 이상 - 비상재해대비시설 현행기준 준수 - 어란이집 명의의 1계좌(클란키드 통장) 사용 - 금융기관을 통한 보육료 및 필요경비 수납 - 임대료 및 융자금 이자 10% 미만으로 사용 - 클란운영 지표 평가결과 70% 이 상으로 재정 건전성 확보	- 평가인증 점수 90점 이상 - 어린이집 정원 충족률 평균 80% 이상 - 영유아보육법령 및 지침에 따라 적 절하게 운영되고 있을 것

(표 Ⅲ-3-2 계속)

구분 서울형어린이집 공공형어린이집 - 맞춤보육 실시 여부 등(2개 항목/4점) - 건물 소유이용 형태(2개 항목/기 항목/기 한목/기 한목/기 한목/기 한목/기 한목/기 한목/기 한목/기 한
- 비상재해대피시설 설치 등 재해 20점, 감점 5점) 대책 마련(2개 항목/5점) - 보육교직원 전문성(6개 항목/ 기
- 영유아 안전관리 등(5개 항목/8점) - 보육시설 청결 위생 등(1개 항목/3점) - 급간식 위생 여부 등(6개 항목/7점) - 1시설 1계좌 등 회계관리 투명성 등(4개 항목/17점) - 보육료 등 경비 수납의 클린성 등(4개 항목/5점) - 보우에 어린이집 정보 공개 등(6개 항목/9점) - 전문인력 확보 및 보육교직원 자질 항상 노력 등(5개 항목/8점)

자료: 1) 보건복지부(2015b). 2015 공공형어린이집 업무 매뉴얼. pp. 9-13, 42-44.

- 2) 서울특별시(2015a). 2015년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pp. 63-64.
- 3) 서울특별시(2015b). 2015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신규 공인 안내. pp. 10-14.

반면에 공공형어린이집의 경우는 건물의 소유·이용 형태 등이 가·감점 사항이 아니라 보다 세분화하여 점수를 부여하거나, 보육교직원의 전문성을 단순하게 1급 보육교사의 비율과 원장의 재직 경력에 따라 단계별로 점수를 배분하는 등 적용 방식이 상이함을 알 수 있다(보건복지부, 2015b: 45-46 참조).

이처럼 공공형어린이집의 선정은 서울형어린이집에 비해 현장 실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그 적용이 간소하고, 세부 평가 기준으로 서울형어린이집이 공공성 차원에서 중요시하는 이른바 안심보육 측면 즉 영유아 안전관리, 건강 위생관리와 회계 투명성을 담보를 위한 평가 항목이 상대적으로 간과되는 측면이었다. 이들 항목에서 공공형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과의 격차가 크고, 부모들의 불만족 수준이 높을 경우, 평가 기준으로 해당 요소들을 강화하여 적용할필요성이 제기된다.

나. 운영 기준

1) 국공립어린이집 기준 적용의 정도

가) 일반 운영 기준

서울형어린이집의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 및 관리 기준을 적용하는 것 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국공립어린이집의 시설기준(비상대피시설 기준 등), 운영시간, 반편성 기준과 같은 일반 운영 기준 외에 보육료 및 필요경비 수납기 준, 보육교직원의 보수 기준, 예산 편성 및 지출 기준 등도 국공립어린이집에 따르고 있으며, 2015년부터는 초과보육을 금지함에 따라 올해 4월부터 초과보육 으로 인한 신규 입소를 금지하고 있다(서울특별시, 2015a: 66). 공공형어린이집 의 경우는 일반적인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기준을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며, 부 모 부담 보육료 수납 제한과 보육교사 급여 등에 있어서 국공립어린이집 기준 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5b: 29-30).

나) 취약(맞춤)보육 서비스 제공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영아보육, 장애아보육, 다문화보육, 시간연장형 보육 을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하나(영유아보육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 서울형어린이집은 장애아보육, 다문화아동 보육, 시간연장, 휴일, 24시간 보육 중 1개 이상을 실시하도록 요구된다(서울특별시, 2015a: 66). 또한, 공공형어린이 집은 관할 지자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간연장, 장애아통합보육, 휴 일보육, 다문화보육, 시간제보육 중 1개 이상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보건복지 부, 2015b: 29). 취약보육 대상으로 서울형과 공공형어린이집 모두에서 영아보육 은 제외되며, 서울형어린이집의 경우 휴일, 24시간 보육이, 공공형어린이집의 경 우 휴일, 시간제보육이 취약보육에 포함되어 있다. 공공형어린이집의 취약보육 범위에 시간제보육이 포함된 것을 정부의 시간제보육 실시 강화 조치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취약보육 운영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 취약보육 규정과는 그 내용이 일부 달리 적용되어 혼선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공공성 차원에서 취약보육에 대한 일관된 적용이 필요하다고 본다.

2) 회계 관리

서울형어린이집은 서울시 회계관리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보육료수납제한은 물론 기타 운영비 사용도 일정비율 이상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클린카드 사용을 의무화하고, 현금사용 역시 제한하고 있어 투명한 회계관리를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서울특별시, 2015a: 67-68). 이에 비하여 공공형어린이집의 경우는 별도의 회계관리시스템이 활용되지 않으며, 다만, 사후품질관리 참여를 의무화하고, 그에 따른 회계관리 컨설팅을 통해 이를 보완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5b: 39-42).

3) 기타 사항

서울형어린이집은 안심보육이 강조되는데, 이는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교육, 컨설팅에 참여하는 것과 서울형어린이집의 운영 실태 및 공인 기준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한 서울시 및 자치구의 지도 점검에 협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급식 관리에 있어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경우 식단표에 원산지를 기재하여 공개하는 것은 물론, 서울시 보육포털에 공지해야 한다. 위생 관리에 있어서도 인가받은 면적과 관계없이 석면 조사를실시하여 그 결과를 관할 구청에 제출해야 한다. 그 밖에도 만 2세와 만 3세 아동의 혼합반 운영을 금지하고 있다(서울특별시, 2015a: 67, 70).

한편, 공공형어린이집은 사후품질관리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자율공부모임, 교사연수, 재무회계 컨설팅이 포함된다(보건복지부, 2015b: 39-42).

이상과 같이 공공형어린이집의 운영 기준을 서울형어린이집과 비교하면, 안심보육 관련 사항과 회계관리 사항이 미비하여, 기관 신뢰도 제고 차원에서 한계가 있다고 우려된다. 반면에 공공형어린이집은 선정기관들에 대한 지속적인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사후품질관리 참여를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해당 제도들의 실효성 여부가 운영비 지원 효과에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표 Ⅲ-3-3〉서울형어린이집/공공형어린이집 운영 기준 비교

.1 6 % .1 -1 .1 -1	773.121.121
서울형어린이집	공공형어린이집
□ 기본 원칙: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기준 적용 - 일반 운영 기준(시설 기준, 운영 시간, 반편성 기준 등) 외에 보육료 및 필요 경비 수납기준, 보육교직원 보수기준, 예산편성 및 지출은 국공립어린이집에 따르며, 초과보육 금지 ※ 2015년 4월부터 초과보육으로 신규 입소 전면 불가 □ 맞춤(취약) 보육서비스 제공 - 맞춤(취약) 보육서비스 제공 - 맞춤(취약)보육(장애아보육, 다문화아동보육, 시간연장, 휴일, 24시간 보육) 중1개 이상 실시하여야함 □ 안심보육서비스 제공 - 모니터링·컨설팅 참여 및 지도 점검 급식관리 - 위생관리 □ 회계의 투명한 관리 - 클린카드 사용 의무화/현금 사용 제한 - 보육료 수납 제한(부모 부담 보육료 수납제한 등) - 기타 운영비 사용제한 - 서울시 회계관리시스템 사용 의무화□기타 사항 - 만 2세와 만 3세 아동의 혼합반 운영 불가	□ 평가인증 점수 90.00점 이상 유지 □ 취약계층 우선 보육 및 입소 우선순위 부여 - 관할 지자체 요청 시 시간연장, 장애아 통합보육, 휴일보육, 다문화보육, 시간 제보육 중 1개 이상을 실시하여야 함 □ 부모부담 보육료 수납 제한 □ 보육교사 국공립 급여수준 준수 □ 운영시간 준수 □ 표준보육과정 □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의무가입 □ 사후품질관리 의무참여 □ 어린이집 정보공개 의무 □ 공공형어린이집 선정기준 준수(유예기 간 有)

자료: 1) 보건복지부(2015b). 2015 공공형어린이집 업무 매뉴얼. pp. 23-26. 2) 서울특별시(2015a). 2015년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pp. 66-70.

다. 지원 내용

1) 인건비

인건비 지원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은 원장 및 영아반 교사의 경우 인건비의 80%, 유아반 교사 인건비의 30%를 지원하며, 그 밖에 대체교사 인건비를 지원 한다(보건복지부, 2015a: 293-294). 서울형어린이집과 가장 큰 차이는 원장에 대 한 인건비 지원인데, 국공립어린이집은 원장의 실제 호봉을 기준으로 인건비 80%를 지원하는 데 반하여, 서울형어린이집은 1호봉의 80%를 지원한다. 한편, 공공형어린이집의 경우 2015년 8월까지는 별도의 인건비 지원은 없었으나, 2015년 9월부터 보육교사 급여 상승분을 지원하기 위해 종일반 담임교사 1인당 35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다. 그러나 보육교사 1호봉 인건비 지급 기준이 1,521,380원(보건복지부, 2015a: 292)임을 고려하여 25%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국공립이나 서울형어린이집의 지원액과 비교하여 낮은 수준이다.

2) 설치비 등 환경개선비

국공립 전환 어린이집의 경우는 무상임대 기간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리모델 링비와 공동 이용시설 개선비 등을 지원받지만, 서울형어린이집은 별도의 환경 개선비는 없고, 신규 공인 시에 한하여 현판·간판 설치 등의 비용을 지원받는다 (서울특별시, 2015a: 44, 71). 공공형어린이집의 경우 2015년 9월부터 재원 아동 1인당 1만5천 원이 지원되는데, 기관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3) 기타 운영비 등

서울형어린이집의 경우는 기능보강비를 제외하고 국공립어린이집과 동일한 처우개선비, 중식비 등을 지원받는다. 또한, 서울형어린이집은 기타 운영비를 지원받는데, 평균보육료 수입의 10%이다. ** 공공형어린이집의 경우 2015년 9월부터 유아반의 경우에 한하여 3~5세반 1개소당 60만원을 지원하는데, 3세반의 경우 현원 8인 이상인 반이어야 하며 4세와 5세반은 현원 11인 이상인 반에 한하여 지원한다(서울특별시, 2015a: 73; 보건복지부, 2015c).

기관별 지원 내용을 종합해보면, 서울형어린이집의 경우는 국공립어린이집에 준하는 인건비가 지원되고, 처우개선비와 중식비도 국공립어린이집과 동일한 기준으로 별도 지원되므로, 전반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에 준하는 지원과 운영 기준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공공형어린이집의 경우는 2015년 9월 기준으로 근무연한에 따른 보육교 사의 급여 상승분을 일부 보조하여 안정적인 인력 확보가 가능하도록 하고, 부 모 이용비용 부담 완화와 환경 개선 등을 위한 유아반 운영비 지원과 환경개선 비를 별도 항목으로 지원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서울

⁹⁾ 서울시에서 정한 2015년 아동 1인 평균보육료는 286,330원이다(서울특별시(2015a). 2015년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p. 41. 참조).

형어린이집과는 달리 서비스 질적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보조인력 지원 등이 고려되지 않아 공공성 차원의 서비스 개선 효과 측면에서 한계가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표 Ⅲ-3-4〉서울형어린이집/공공형어린이집 지원 내용 비교

서울형어린이집			공공	?형어린o	집
□ 인건비 지원		□ 지원 기	지급액 7	기준 (2015	5. 9. 시행)
- 정원 및 현원 21인 이상 시설의 원장		ㅇ 전월	현황자료	료를 토대	로 다음 기준에
에 대해 인건비의 80% 지원(단, 1호봉		따라 ረ	산출하되,	, 최대 1,0	00만원까지 지급
기준)		구분	단가	기준	세부사항
- 영아반 교사 인건비의 80% 지원		보육		종일반	취이 4명 시기
- 유아반 교사 인건비의 30% 지원		교사	35만	담임	-현원 1명 이상
- 현원 40인 이상 어린이집의 취사부 1		급여	원	교사	-장애아반, 방과 후반은 제외
인 인건비 100% 지원		상승분		1인당	
※ 보육교사 및 취사부의 경우 최초에는			,	3~5세	-3세: 현원 8인
1호봉을 기준으로 지원하되, 매년 호		유아반	60만	반	이상인 반
봉승급을 적용하여 지원함.		운영비	원	1 개소	- 4 세 이상: 현원
				당	11인 이상인 반 - 현원 기준
- 시간연장·24시간·장애아통합어린이집		교육・	1.5	재원	•연전 기군 •기관당 최대
전담교사 월 지급액의 80% 지원		환경	T.0 만원	아동	300만원까지 지
- 1일 6시간, 주 5일 이상 근무 시 비담		개선비	""	1인당	급
임교사는 114만원 지원, 보육 도우미					Ц
88만원 지원					
□ 처우개선비, 중식비 등 지원					
- 국공립어린이집과 동일 기준 적용(다					
만, 기능보강비는 제외)					
□ 기타 운영비 지원					
- 현원 기준 평균 보육료 수입의 10%					
□ 환경개선비 지원					
- 서울형 신규 공인 시에 한해 지원					
자료: 1) 보건복지부(2015b), 2015 공공형어린이	기주	입무 매	뉴얼, p.	28.	

자료: 1) 보건복지부(2015b). 2015 공공형어린이집 업무 매뉴얼. p. 28. 2) 서울특별시(2015a). 2015년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pp. 70-74.

〈표 Ⅲ-3-5〉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서울형어린이집/공공형어린이집 제도 비교

구분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전환)	서울형어린이집	공공형어린이집
설치 (법적) 근거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서울시 보육사업안내』(2015)	「서울특별시 보육조례」(제5673호, 2014. 3. 20. 개 정·시행) 제18조제2항	『보육사업안내』(제2015-000호, 보건복지부지침) 지침) 『공공형어린이집 업무 매뉴얼』(2015, 보건복지부지침)
신청 대상	□ 운영 위탁의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 □ 전환의 경우 민간, 가정, 공동주택단지 내 어린이집(서울시 기준)	□ 「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라 설치된 서울 소재 어린이집 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 단체 등 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및 가정어린 이집, 부모협동어린이집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어린이집 -『보육사업안내』에 따라 인건비를 지원받 는 "정부지원어린이집 제외" - 공공기관 또는 공용보험기금으로부터 운영 비를 지원받는 직장어린이집 제외
선정 기준 (평가 지표)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후 단,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및 별표 8의2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 리 세부심사기준』(제2014-244호, 보건복지부 고시)	□ 『2015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V. 서울형어린이 집 운영 평가지표에 따름 - 필수항목(5개) 충족 + 85점 이상 득점: 평가점수 고득점순 - 총 배점: 100점(기본 요건 20점 + 현장 실사 66 점 + 공인심의 14점) ± 가점(10)·감점(6)	□ 『공공형어린이집 업무 매뉴얼』(2015, 보 건복지부 지침) 1. 공공형어린이집 세부 선정 기준표에 따름 - 참여 기본 요건 + 85점 이상 득점: 평가점수 고득점순 - 기본 점수(100점) ± 가점(21)·감점(8)

(표 Ⅲ-3-5 계속)

구분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전환) ¹⁾	서울형어린이집	공공형어린이집
	□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 및 관리기	□ 기본 원칙: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 및 관리기준	□ 평가인증 점수 90.00점 이상 유지
	준의 적용	의 적용	□ 취약계층 우선 보육 및 입소 우선순위 부여
	- 비상대피시설 기준, 정원·입소 우선순	- 일반 운영 기준(시설 기준, 운영 시간, 반편성	- 관할 지자체 요청 시 시간연장, 장애아통합
	위·반편성 기준, 인건비 지급 기준 등	기준 등) 외에 보육료 및 필요경비 수납 기준,	보육, 휴일보육, 다문화보육, 시간제보육
	- 기타 운영비(감가상각비, 차량할부	보육교직원 보수 기준, 예산 편성 및 지출은 국	중 <u>1개 이상</u> 을 실시하여야 함
	금 등)는 반드시 자치구 승인 후	공립어린이집에 따르며, 초과보육 금지	□ 부모 부담 보육료 수납 제한
	<u>사용</u>	※ 2015. 4.부터 초과보육으로 신규 입소 전면 불가	□ 보육교사 국공립 급여 수준 준수
	- 취약보육(영아보육, 장애아보육, 다문	□ 맞춤(취약) 보육서비스 제공	□ 운영 시간 준수
	화아동 보육, 시간연장형 보육) 중 2	- 맞춤(취약)보육(장애아보육, 다문화아동 보육, 시	□ 표준보육과정
운영	<u>개 이상</u> 을 실시하여야 함	간연장, 휴일, 24시간 보육) 중 <u>1개 이상</u> 을 실시	□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의무가입
기준	□ 기존 민간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시	하여야 함	□ 사후품질관리 의무참여
, , ,	승계된 보육교사 교육평가 의무	□ 안심보육서비스 제공	□ 어린이집 정보공개 의무
	□ 운영자 친인척 근무 제한	- 모니터링·컨설팅 참여 및 지도 점검에 협조	□ 공공형어린이집 선정기준 준수(유예기간 有)
	□ 어린이집의 중대한 문제 발생 시	- 급식관리	
	결과 도출 시까지 해당 교직원 직	- 위생관리	
	<u>무정지</u>	□ 회계의 투명한 관리	
	□ 종교단체, 기업체 등과 민관 연대	- 클린카드 사용 의무화/ 현금 사용 제한	
	전환시설의 경우 보육교직원 채용	- 보육료 수납 제한(부모 부담 보육료 수납제한 등)	
	시 자치구 참여 의무화	- 기타 운영비 사용제한	
	□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u>200만 화소</u>	- 서울시 회계관리시스템 사용 의무화	

(표 Ⅲ-3-5 계속)

구분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전환) ¹⁾	서울형어린이집		공공형어린이집			
	이상의 CCTV를 설치하고 2개월	□ 기타 사항					
	이상 보관	- 만2세와 만3세 아동의 혼합반 운영 불가					
	□ 부모 부담 특별활동 원천 금지						
	□ 신규 입소 아동은 0~2세로 제한, 차						
	량운행 금지						
	□ 인건비 지원	□ 인건비 지원	Γ	□ 지원 지	급액 기	[준 (2015.	9. 시행)
	- 정원 및 현원 21인 이상 시설의 원	- 정원 및 현원 21인 이상 시설의 원장에 대해 인		전월 현	황자료	를 토대로	다음 기준에 따
	장에 대해 인건비의 80% 지원	건비의 80% 지원(단, 1호봉 기준)		라 산출	하되, 2	최대 1,000명	만원까지 지급
	- 영아반 교사 인건비의 80% 지원	- 영아반 교사 인건비의 80% 지원	[구분	단가	기준	세부사항
	- 유아반 교사 인건비의 30% 지원	- 유아반 교사 인건비의 30% 지원					-현원 1 명 이상
	- 대체교직원 인건비 지원	- 현원 40인 이상 어린이집 취사부 1인 인건비		보육교사 급여상승	35	종일반 담임교사	-장애아반,
	- 농어촌 등 취약지역 보육교사 1명	100% 지원		분	만원	1인당	방과후반은
지원	인건비 추가지원 및 취사부 1명 인	※ 보육교사 및 취사부의 경우 최초에는 <u>l호봉을</u>				-20	제외
내용	건비 100% 지원	<u>기준</u> 으로 지원하되, 매년 호봉승급을 적용하여		유아반	60	3~5세반	-3세: 현원 8인 이상인 반
	- 중소도시·대도시 평가인증 통과 어린	지원함.		운영비	 만원	1개소당	- 4 세 이상: 현원
	이집 취사부 1인 인건비 100% 지원	- 시간연장24시간장애아통합 어린이집 전담교사 월					11 인 이상인 반
	□ 설치비 지원	지급액의 80% 지원		교육·		재원	-현원 기준
	- 기존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이 국	- 1일 6시간, 주 5일 이상 근무 시 비담임교사는		환경	1.5	아동	-기관당 최대
	공립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 방법	114만원 지원, 보육 도우미 88만원 지원		개선비	만원	1인당	300만원까지
	및 계약 형태에 따라 리모델링 및	□ 처우개선비, 중식비 등 지원	[지급

(표 Ⅲ-3-5 계속)

	0 0 7 1 7		
구분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전환) ¹⁾	서울형어린이집	공공형어린이집
	기자재비 지원(서울시)	- 국공립어린이집과 동일 기준 적용(다만, 기능보	
	- 그 외에 기능보강비 有	강비는 제외)	
		□ 기타 운영비 지원	
		- 현원 기준 평균보육료 수입의 10%	
		□ 환경개선비 지원	
		- 서울형 신규 공인 시에 한해 지원	
재선	□ 재위탁 심사	□ 재공인(재평가)	□ 유효 기간 및 재평가
	- 최초 위탁 시 위탁 기간은 계약에	- 서울형어린이집 공인 유지시설 중 유효 기간 만	-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선정이 확정된 달의
정 (재위	의하기 때문에 재위탁 심사는 계약	료 시점이 도래한 시설(공인 후 3년이 되는 해)	익월 1일부터 3년간 유효.
	만료일 3개월 이전에 함	- 필수지표를 충족하고 종합평가점수가 85점 이상	- 다만, 시범사업 기간(2011. 7 2012. 6.)에
탁) 심사	- 심사기준은 "재위탁 선정관리 표	인 어린이집에 대해 재공인 결정	선정된 어린이집의 유효 기간은 2015. 8.까
	준안"에 따름	- 현장 실사 점수가 75점으로 높아지는 등 별도의	지이므로 올해 처음 재선정이 이루어졌음.
여부		재평가 지표가 있음.	

- 주: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전환)의 세부 기준 설명은 서울시 기준에 따름.
 자료: 1) 보건복지부(2015a). 2015 보육사업안내. pp. 291-296, 359-364.
 2) 보건복지부(2015b). 2015 공공형어린이집 업무 매뉴얼. p. 7 이하.
 3) 서울특별시(2015a). 2015년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pp. 43-51, 63-75.
 4) 서울특별시(2015b). 2015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신규 공인 안내. pp. 1-14.

Ⅳ. 공공형어린이집 성과 분석

이 장에서는 공공형어린이집 이용 부모의 이용기관의 제도 인지 및 공공성 인식 수준을 파악하고, 서비스 이용 만족도 전반을 평가하며, 타 기관 변경 의 향 등을 종합하여 수요자 측면에서 공공형어린이집의 성과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특히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부모와의 비교를 시도하였다. 그 밖에도 공공형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담 분석 결과를 담았다.

1. 보육 공공성 인식 수준

공공형어린이집 이용 부모를 대상으로 공공형어린이집의 공공성에 대한 인식 을 조사하였다.

가. 공공형어린이집 인지 수준

우선 현재 이용 중인 기관이 공공형어린이집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지를 질문 하였는데,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의 99.0%를 차지하여 공공형어린이 집에 대해서는 대부분 인지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이는 기관유형 즉 민간 과 가정어린이집 이용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고 일관되게 확인된다.

〈표 IV-1-1〉 공공형어린이집 인지 여부

단위: %(명)

구분	알고 있음	모름	계(수)	$X^2(df)$
전체	99.0	1.0	100.0(707)	
공공형-민간	99.3	0.7	100.0(429)	0.941(1)
공공형-가정	98.6	1.4	100.0(278)	0.941(1)

자료: 이 연구의 '어린이집 이용 만족도 및 요구 조사' 결과임.

공공형어린이집이라는 점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부모를 대상으로 공공형어린 이집으로 인증된 기관이라는 점이 기관 선택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조사한 결과,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한 비율(매우 그렇다+대체로 그렇다)이 85.3%로 나타났 다. 해당 비율은 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에서 약간 더 높게 나타난다.

〈표 IV-1-2〉기관 선택 시 공공형어린이집 영향 정도(4점 척도)

단위: %(명),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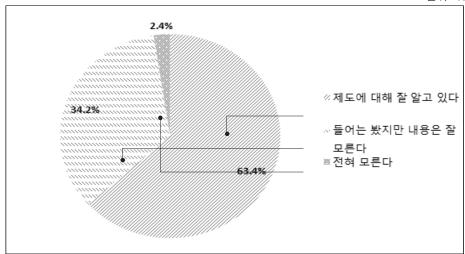
						· - // _
——————————————————————————————————————	전혀	대체로	대체로	매우	계(수)	 평균
구분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그렇다	州十)	でぜ
전체	7.3	7.4	39.0	46.3	100.0(700)	3.24
공공형 민간	7.3	7.5	43.2	42.0	100.0(426)	3.20
공공형-가정	7.3	7.3	32.5	52.9	100.0(274)	3.31
$X^2(df)/t$		9).196(3) [*]			1.630

주: 유사 인식 평균 점수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매우 그렇다' 4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이 연구의 '어린이집 이용 만족도 및 요구 조사' 결과임.

* p < .05

한편 공공형어린이집 제도에 대한 이해 정도를 보다 구체적으로 질문한 결과, '제도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3.4%로, 대체로 이해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현재 기관을 이용 중인 부모임에도 불구하고 '들어는 봤으나 내용은 잘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이 34.2%에 달하여, 지속적인 제도 홍보가 요구된다고 보여진다.

단위: %



자료: 이 연구의 '어린이집 이용 만족도 및 요구 조사' 결과임.

[그림 IV-1-1] 공공형어린이집 제도 이해 정도

다음으로 공공형어린이집의 장점으로는 자녀가 안전하게 보호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1순위와 1, 2순위를 합한 기준으로 각각 37%와 56.4%로서 공히 가장 높게 나타난다. 그 다음으로는 질 높은 보육프로그램, 저렴한 이용비용, 일하는 부모 자녀의 보육, 투명한 기관 운영, 교사의 전문성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IV-1-3〉 공공형어린이집의 장점

		단위: %(명)
구분	1순위	1+2순위
자녀가 안전하게 보호됨(학대, 안전사고 예방 등)	37.0	56.4
질 높은 보육프로그램이 운영됨	15.4	36.2
이용비용이 저렴함	13.4	20.3
일하는 부모가 근로시간 동안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음	11.6	23.6
기관이 투명하게 운영됨(각종 비리 없음, 정보 공개 등)	10.9	27.1
교사의 전문성 수준이 높음	7.5	24.3
법정 운영시간(07:30~17:30)과 운영 일수가 준수됨	2.5	7.4
별다른 장점이 없다	1.3	2.3
취약계층 가구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이 보장됨	0.2	0.7
잘 모름	0.2	1.3
계(수)	100.0(597)	_

자료: 이 연구의 '어린이집 이용 만족도 및 요구 조사' 결과임.

단위: % 1.0% ◈ 현재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을 11.7% 1.0% 통해 3.6% ■ 인터넷(보건 복지부 홈페이지, 보육포털)를 통해 매스컴(신문, TV 등을 통해) 15.4% √ 공공기관 이용시 (주민 자치센터 등) 알게됨 67.3% ··· 주변 사람을 통해 (주변 소개 등) -₩기타

자료: 이 연구의 '어린이집 이용 만족도 및 요구 조사' 결과임.

[그림 IV-1-2] 공공형어린이집 제도 인지 경로

공공형어린이집 제도의 인지 경로는 현재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이 67.2%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 인터넷 15.4%, 주변 사람의 소개 11.7% 순으로 조사되었다(그림 IV-1-2 참조). 다양한 채널을 통한 홍보 강화 노력이 요구되는 지점이다.

나. 기관 선택 사유

현재 이용 중인 공공형어린이집을 선택한 사유로는 원장과 교사에 대한 신뢰 도가 1순위와 1, 2순위를 합한 비율이 각각 48.1%와 67.2%로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그다음으로는 집에서 가까워서가 1순위 기준으로 22.6%였으 며, 공공형어린이집이므로 선택하였다는 응답도 높게 나타나 1순위와 1, 2순위 를 합한 비율은 각각 14.2%와 38.6%로 조사되었다.

일반적인 기관 선택 사유로서 교사에 대한 신뢰와 접근성이 기관유형과 상관 없이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고려하면, 공공형어린이집이라는 점이 기관 선택 사 유로서 지적된 비율은 그 성과 측면에서 주목할 만하다고 본다.

〈표 IV-1-4〉 현재 이용 중인 어린이집의 선택 사유

단위: %(명)

구분	1순위	1+2순위
교사와 원장이 신뢰가 가서	48.1	67.2
집에서 가까워서	22.6	36.2
국가가 인증한 공공형어린이집이므로	14.1	38.6
보육프로그램이 마음에 들어서	4.2	12.7
운영 시간이 적절해서	3.4	8.1
시설·설비가 마음에 들어서	2.7	5.9
주변 환경이 좋아서	1.4	4.0
안전한 먹거리(급간식)가 보장되어서	1.1	1.4
보육프로그램이 좋아서	0.8	7.5
특별활동 운영이 마음에 들어서	0.7	1.6
이용비용이 저렴해서	0.4	4.2
기타	0.3	12.3
계(수)	100.0(707)	(707)

자료: 이 연구의 '어린이집 이용 만족도 및 요구 조사' 결과임.

공공성 차원에서 공공형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과 유사하게 인식하는지를 조사한 결과, 양 기관이 유사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약 80%에 육박하며 4점 평

균에 3점에 가깝게 나타났다. 이는 현재 공공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들의 경우는 공공형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에 준하는 기관으로 인식함을 말해준다. 이러한 인식은 이용기관유형이나 기관규모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일관되게 나타난다.

한편 공공형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심층면담에 의하면,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후 전문성 높은 교사의 채용와 부모들의 기관에 대한 신뢰도 측면에서 운영상 개선 효과가 있다고 지적되므로 이는 부모들의 기관 선택 사유와일맥 상통한다.

다. 국공립어린이집과의 비교 인식

공공형어린이집 이용 부모들의 현재 이용기관을 국공립어린이집과 유사하다고 인식하는지를 질문한 결과, 그렇다(그렇다+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80.6%로 조사되었다. 기관유형별로는 공공형-가정어린이집의 해당 비율이 공공형-민간어린이집에 비해 더 높은 83.5%로 나타났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며, 기관규모에 따른 인식 차도 보이지 않는다.

〈표 IV-1-5〉 공공형어린이집과 국공립어린이집의 유사 인식 정도(4점 척도)

단위: %(명), 점

					L 71. 70.	(0), 0
 구분	전혀	대체로	대체로	매우	계(수)	 평균
丁七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그렇다	AI(T)	정민
전체	4.0	15.4	60.8	19.8	100.0(707)	2.96
이용기관유형						
공공형-민간	4.0	17.2	60.8	17.9	100.0(429)	2.93
공공형-가정	4.0	12.6	60.8	22.7	100.0(278)	3.02
X²(<i>df)/t</i>		4.268	3(3)			1.71
정원규모						
20인 이하	4.0	12.6	60.6	22.7	100.0(277)	3.02
21~49인 이하	5.0	15.8	57.5	21.7	100.0(120)	2.96
50~97인 이하	4.9	19.0	62.6	13.5	100.0(163)	2.85
98~123인 이하	2.2	16.7	60.0	21.1	100.0(90)	3.00
124인 이상	1.8	15.8	64.9	17.5	100.0(57)	2.98
X²(<i>df)/t</i>		10.342	2(12)			1.63

주: 유사 인식 평균 점수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매우 그렇다' 4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이 연구의 '어린이집 이용 만족도 및 요구 조사' 결과임.

한편 공공형어린이집과 국공립어린이집의 유사성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보

이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차이를 보이는지를 질문하였다. 전반적으로 이용비용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6.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부모와의 소통, 보육프로그램의 질, 급간식 관리 순으로 차이가 있 다고 인식하였다.

또한, 이러한 인식은 기관유형과 기관규모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먼저 기관 규모별로는 민간어린이집의 경우는 이용비용에서 차이를 보인다고 응답한 비율이 56.0%로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나, 공공형-가정어린이집 이용 부모는 부모와의 소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1.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기관규모에 따라서는 49인 이하 기관을 이용하는 부모들은 부모와의 소통을 주된 차이점으로 인식하였고, 50인 이상 기관을 이용하는 부모들은 이용비용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특히 규모가 큰 공공형어린이집의 경우 기타 필요경비 등 추가비용에 대한 규제에 더욱 주목해야 함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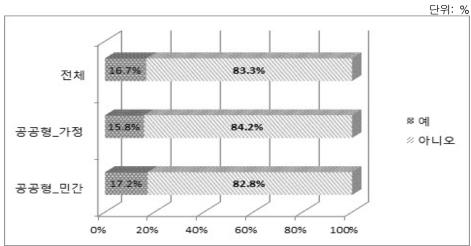
〈표 IV-1-6〉 국공립어린이집의 차별화 내용(중복응답)

단위: %(명)

							근기	. /0(0)
	0]-	용기관유	-형			정원 규모		
구분	전체	n) 7).		20인	21~49인	50~97인	98~123인	124인
	신세	민간	가정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상
교사와 원장의 전문성	24.1	25.3	21.7	21.7	36.0	15.4	35.3	20.0
보육프로그램의 질	28.5	34.1	17.4	17.4	44.0	30.8	17.6	50.0
이용비용	46.7	56.0	28.3	28.3	48.0	64.1	58.8	40.0
급간식 관리	13.1	15.4	8.7	8.7	20.0	12.8	11.8	20.0
건강관리	2.2	3.3	-	_	4.0	-	11.8	-
부모와의 소통(상담 등)	16.1	17.6	13.0	13.0	16.0	15.4	29.4	10.0
기관에 대한 신뢰도	30.7	25.3	41.3	41.3	40.0	17.9	29.4	10.0
기타	5.1	4.4	6.5	6.5	4.0	5.1	-	10.0
모름	21.2	19.8	23.9	23.9	20.0	23.1	17.6	10.0
(수)	(137)	(91)	(46)	(46)	(25)	(39)	(17)	(10)

자료: 이 연구의 '어린이집 이용 만족도 및 요구 조사' 결과임.

현재 공공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들에게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변경할 의향이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변경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6.7%로 나타났다. 이처럼 공공형어린이집 이용 부모들은 대체로 공공형어린이집의 공공성 수준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자료: 이 연구의 '어린이집 이용 만족도 및 요구 조사' 결과임.

[그림 IV-1-3] 공공형어린이집 이용 부모의 국공립어린이집 변경 의향 여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이용기관을 변경하려는 사유로는 '비용이 저렴해서'가 30.5%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교육 환경 및 시설이 우수해서' 19.5%, '전문성 있는 교사가 있어서' 17.8%, '교육프로그램이 다양하고 우수해서' 14.4%, '국가에서 관리하여 믿을 수 있어서' 13.6%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IV-1-7〉 국공립어린이집 변경 사유

		단위: %(명)
 구분	비율	(수)
비용이 저렴해서	30.5	(36)
교육 환경 및 시설이 우수해서	19.5	(23)
전문성 있는 교사가 있어서	17.8	(21)
교육프로그램이 다양하고 우수해서	14.4	(17)
국가에서 관리하여 믿을 수 있어서	13.6	(16)
규모가 더 커서	9.3	(11)
상급반이 있어서	9.3	(11)
운영시간이 더 길어서	7.6	(9)
나라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아이가 더 안전할 것 같아서	3.4	(4)
주변에서 국공립이 좋다고 많이 얘기해서	3.4	(4)
추가비용이 들지 않아서	3.4	(4)
어린이집 운영이 투명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2.5	(3)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이 있어서	2.5	(3)
거리가 가까워서	1.7	(2)

구분	비율	 (수)
질 좋고, 풍성한, 안전한 먹거리 때문에	1.7	(2)
맞벌이 가정을 배려하여 어린이집을 운영해서	1.7	(2)
기타	4.0	(5)
모름/무응답	4.2	(5)
계(수)	100.0	(118)

주: 기타 내용은 '형제끼리 같이 다니게 하려고', '영리목적이 아니라서', '대체휴일 등에도 아이를 맡길 수 있어서' 등임.

이상의 공공형어린이집 이용 부모의 국공립어린이집 대비 인식을 종합해보면, 공통적으로 이용비용에서의 차별화 인식이 가장 두드러짐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국공립어린이집을 선호하는 이유와 기관 변경 사유가 모두 저렴한 비용으로 지적됨에 따라 공공형어린이집의 공공성 수준 제고는 비용 규제가 일차적인 과제임을 알 수 있다.

2. 서비스 만족도 및 요구

공공형어린이집의 서비스 이용 만족도를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부모와 비교하고, 대기 현황 등을 통한 요구를 파악하였다.

가. 서비스 이용 실태 및 만족도

1) 타 기관 이용 경험

현재 이용 중인 기관을 다니기 이전에 다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닌 경험이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50.5%로 나타났다.

과거 기관 이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부모에게 가장 최근에 이용한 기관을 기준으로 해당 유형을 조사한 결과, 가정과 민간어린이집의 비율이 각각 46.1% 와 37.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해당 비율은 특히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부모들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공공형-민간어린이집과 공공형-가정어린이집의 경우는 공히 가정어린이집으로부터 변경한 비율이 50%에 육박하는 높은 비

자료: 이 연구의 '어린이집 이용 만족도 및 요구 조사' 결과임.

율을 보였다.

〈표 IV-2-1〉과거 이용기관유형

단위: %(명)

				L /11· /0(0)	
 구분	국공립	공공	 _ 전체(수)		
Tゼ	498	민간	가정	- 也机干)	
국공립어린이집	5.8	3.3	3.6	4.8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1.2	0.8	-	1.0	
법인단체등어린이집	1.4	1.3	-	1.3	
민간어린이집	39.9	35.4	32.7	37.8	
가정어린이집(놀이방)	41.5	51.7	56.4	46.1	
직장어린이집	1.0	0.4	-	0.7	
부모협동어린이집	0.2	-	-	0.1	
국/공립유치원	2.2	0.8	-	1.6	
사립유치원	4.8	5.0	1.8	4.7	
기타(반일제) 학원	1.2	-	1.8	0.8	
모름	0.7	1.3	3.6	1.1	
계(수)	100.0(414)	100.0(240)	100.0(55)	100.0(709)	

자료: 이 연구의 '어린이집 이용 만족도 및 요구 조사' 결과임.

과거에 다니던 기관을 그만 다니게 된 가장 큰 이유로는 전반적으로 희망하는 기관에 다닐 수 있어서가 32.6%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가운데, 해당 비율은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부모에서 41.8%로 두드러지게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공공형-민간과 가정어린이집의 해당 비율은 각각 19.2%와 21.8%에 불과하여 국 공립어린이집에 비해 공공형어린이집의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낮음을 말해준다. 이외에도 기관에 상급반이 없어서와 같이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면, '기관이불만족스러워서'가 주된 사유로서 공통적으로 지적된다.

〈표 IV-2-2〉기관 이용 중단 사유

단위: %(명)

구분	국공립	공공형		- 전체(수)
		민간	가정	선세(十)
집에서 너무 멀어서	7.2	10.4	16.4	9.0
기관이 불만족스러워서	17.9	17.9	32.7	19.0
희망하는 기관에 다닐 수 있게 되어서	41.8	19.2	21.8	32.6
기관에 상급반이 없어서	19.3	35.0	5.5	23.6
아이가 적응을 못해서	1.9	3.3	1.8	2.4
기타	11.8	14.2	21.8	13.4
계(수)	100.0(414)	100.0(240)	100.0(55)	100.0(709)

자료: 이 연구의 '어린이집 이용 만족도 및 요구 조사' 결과임.

2) 입소 대기 경험

현재 이용 중인 기관에 입소하기 위해 대기한 경험이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공공형어린이집 이용 부모의 대기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7.0%로 국공 립어린이집 이용 부모의 해당 응답률이 72.6%와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공공형어린이집 중에서는 공공형-가정어린이집의 대기 유경험률이 54.3%로 공공형-민간어린이집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기관 선호도 측면에서 공공형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에 미치지 못하며, 공공형어린이집 중에서는 가정어린이집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대기 경험이 있는 부모들의 경우 해당 대기 기간은 공공형어린이집의 경우 1~6개월 미만에 해당하는 비율이 76.8%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해당 평균 기간은 3.6개월로, 국공립어린이집의 평균 대기 기간이 8.5개월과 차이를 보였다. 해당 기간은 공공형어린이집 유형별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IV-2-3〉 어린이집 입소 대기 경험 여부 및 입소 대기 기간

단위: %(명), 개월

	대기경험		입소 대기 기간							
구분	있음	1-6	6-12	12-18	18-24	24-30	30-36	36	계(수)	ᆏ그
干七	있는 비율	개월	개월	개월	개월	개월	개월	개월	A(T)	평균
	비포	미만	미만	미만	미만	미만	미만	이상		
전체	59.7	55.7	22.9	14.6	2.3	3.3	0.4	0.8	100.0(838)	6.56
국공립	72.6	41.9	26.3	20.8	3.6	5.5	0.6	1.4	100.0(506)	8.49
공공형	47.0	76.8	17.8	5.1	0.3	-	-	-	100.0(332)	3.62
X²(<i>df)/t</i>	95.879(1)***					-				12.839***
공공형 민간	42.2	79.0	16.0	4.4	0.6	-	_	-	100.0(181)	3.54
공공형기정	54.3	74.2	19.9	6.0	-	-	_	-	100.0(151)	3.72
X²(<i>df)/t</i>	9.957(1)**					-				0.515

자료: 이 연구의 '어린이집 이용 만족도 및 요구 조사' 결과임.

3) 이용시간

공공형어린이집 이용 부모의 기관 이용시간은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부모와 유사하게 나타난다. 양 기관의 평일 기준 평균 등원 시각은 대략 오전 9시이고 평균 하원 시각은 대략 오후 5시로 나타난다. 이는 기관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부모는 물론, 공공형어린이집 중 민간과 가

^{**} p < .01, *** p < .001

정어린이집과도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표 IV-2-4〉어린이집 이용시간-등원 시각(평일 기준)

단위: %, 시(명)

						, , , , , ,
 구분	7:00	7:01~	8:01~	9:01~	10:01	 평균(수)
丁七	이전	8:00	9:00	10:00	이후	お担(十)
전체	4.1	28.9	59.6	7.2	0.2	9.02(1,404)
국공립	4.0	29.4	60.0	6.5	0.1	9.01(697)
공공형	4.1	28.4	59.3	7.9	0.3	9.02(707)
공공형-민간	3.0	32.4	58.3	6.3	_	8.99(429)
공공형-가정	5.8	22.3	60.8	10.4	0.7	9.07(278)

자료: 이 연구의 '어린이집 이용 만족도 및 요구 조사' 결과임.

〈표 IV-2-5〉어린이집 이용시간-하원 시각(평일 기준)

단위: %, 시(명)

									_ // /0, //(0)
	15:00	15:01	16:01	17:01	18:01	19:01	20:01	21:01	
구분	15.00 이전	~	~	~	~	~	~	21.01 이후	평균(수)
		16:00	17:00	18:00	19:00	20:00	21:00	이주	
전체	2.4	9.6	38.2	25.5	16.9	3.9	2.1	1.4	16.97(1,404)
국공립	1.6	8.9	38.7	25.5	17.8	4.0	2.3	1.1	17.01(697)
공공형	3.1	10.3	37.6	25.5	16.0	3.8	2.0	1.7	16.93(707)
공공형-민간	3.0	14.5	36.1	24.5	15.6	3.3	1.2	1.9	16.86(429)
공공형-가정	3.2	4.0	39.9	27.0	16.5	4.7	3.2	1.4	17.04(278)

자료: 이 연구의 '어린이집 이용 만족도 및 요구 조사' 결과임.

또한, 이 같은 기관 이용시간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약 98.0%가 만족한 다고 응답하였고, 이는 이용기관의 유형과 규모, 거주지역 규모와 아동 연령별 로도 일관되게 나타났다.

〈표 IV-2-6〉어린이집 이용시간 만족 여부

단위: %(명)

	17	11 17	2(1)
구분	만족	불만족	계(수)
전체	98.0	2.0	100.0(1,404)
이용기관유형			
국공립	98.1	1.9	100.0(697)
공공형	97.9	2.1	100.0(707)
공공형-민간	96.7	3.3	100.0(429)
공공형-가정	99.6	0.4	100.0(278)

(표 IV-2-6 계속)

(並 11/-2-10 州市)			
구분	만족	불만족	계(수)
정원규모			
20인 이하	99.6	0.4	100.0(279)
21~49인 이하	98.3	1.7	100.0(293)
50~97인 이하	98.1	1.9	100.0(466)
98~123인 이하	95.6	4.4	100.0(180)
124인 이상	97.3	2.7	100.0(186)
지역 규모			
중소도시	98.3	1.7	100.0(1,095)
읍면지역	97.1	2.9	100.0(309)
자녀연령			
만0세	100.0	-	100.0(14)
만1세	96.4	3.6	100.0(112)
만2세	97.5	2.5	100.0(278)
만3세	97.6	2.4	100.0(371)
만4세	98.9	1.1	100.0(279)
만5세	98.6	1.4	100.0(350)

자료: 이 연구의 '어린이집 이용 만족도 및 요구 조사' 결과임.

4) 이용비용

특별활동비와 기타 비용을 합한 월평균 추가 이용비용은 약 77,000원선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관유형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우선 공공형어린이집의 총 추가 이용비용은 국공립어린이집에 비해 약 3만원 선이 더 많은 평균 91,387원이며, 특별활동비는 61,661원, 기타 비용은 29,726원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해당 비용은 공공형어린이집 유형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여, 총 이용비용은 민간어린이집 11,194원, 가정어린이집 51,564원으로 두 배가까이 차이를 보였다. 특히 특별활동비의 경우는 공공형-민간어린이집이 월평균 78.830원, 가정어린이집이 35,167원으로 조사되어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영아 비율이 높은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공공형-민간어린이집의 경우 이용비용 측면에서 국공립어린이집과 비교하여 그 격차가 극심하며,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용비용 측면에서 국공립어린이집과의 차별화 인식이 가장 두드러진 사항으로 지적된 바와 일 맥상통한다.

〈표 IV-2-7〉월 평균 추가 이용비용

단위: 원(명)

				L / 1. L(0)	
	평	균	— 총계(A+B)	 (수)	
丁七 一	특별활동비(A)	기타 비용(B)	- 子州(A+D)	(十)	
전체	52,810	24,117	76,927	(1,404)	
국공립	43,832	18,427	62,259	(697)	
공공형	61,661	29,726	91,387	(707)	
t	-7.647***	-6.284***	-11.064***		
공공형-민간	78,830	38,364	117,194	(429)	
공공형-가정	35,167	16,397	51,564	(278)	
t	-12.988***	-7.863***	-17.877***		

자료: 이 연구의 '어린이집 이용 만족도 및 요구 조사' 결과임.

*** p < .001

월평균 특별활동비 수준의 차이를 보인 바와 같이 특별활동 갯수도 공공형어린이집 유형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 국공립어린이집의 특별활동 개수는 평균 2.1개로 나타나, 공공형어린이집 전체 평균과 동일한 수준이나, 공공형-민간과 공공형-가정어린이집은 각각 약 2.6개와 약 1.5개로 현저한 차이를 나타낸다.

〈표 IV-2-8〉특별활동 참여 개수

단위: %, 개(명)

구분	0개	1개	2개	3개	4개	5개	평균(수)	t
전체	19.4	10.6	22.2	35.8	8.3	3.7	2.14(1,404)	
국공립	16.5	9.6	28.6	36.3	6.9	2.2	2.14(697)	0.008
공공형	22.3	11.6	16.0	35.2	9.6	5.2	2.14(707)	0.000
공공형-민간	12.1	11.0	11.9	45.5	13.3	6.3	2.56(429)	-9.813****
공공형-가정	38.1	12.6	22.3	19.4	4.0	3.6	1.49(278)	-3:019

자료: 이 연구의 '어린이집 이용 만족도 및 요구 조사' 결과임.

*** *p* < .001

한편 현행 규정에 의하면, 특별활동 시행 여부는 부모들의 동의를 얻어 결정 해야 하는데, 이를 조사한 결과, 모두 선택 가능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69.9%에 그치고 있다. 모두 의무적으로 수강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국공립어린이집에 비해(19.9%) 공공형어린이집의 비율이 26.2%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다. 또한, 공공형어린이집 유형별로도 차이를 보여, 공공형-민간어린이집의 경우 특별활동을 의무적으로 수강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31.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관련 규제의 강화가 요구된다.

〈표 IV-2-9〉특별활동 참여 선택 가능 여부

단위: %(명)

					L /1 /4(C)
구분	모두 선택 가능	일부 선택 가능	모두 의무 수강	계(수)	$X^2(df)/t$
전체	69.9	7.1	23.1	100.0(1,404)	
국공립	72.7	7.3	19.9	100.0(697)	7.661(2)*
공공형	67.0	6.8	26.2	100.0(707)	
공공형-민간	60.6	7.5	31.9	100.0(429)	21.377(2)***
공공형-가정	77.0	5.8	17.3	100.0(278)	21.377(2)

자료: 이 연구의 '어린이집 이용 만족도 및 요구 조사' 결과임.

5) 서비스 만족도와 운영 평가

가) 주요 항목별 이용 만족도

공공형어린이집 이용 부모의 서비스 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해 주요 항목 전반에 걸친 이용 만족도를 5점 척도로 조사하고, 운영 관리 사항에 대해 5점 만점으로 각각 평가하게 하여, 이를 국공립어린이집과 공공형어린이집 유형별로 비교하였다.

주요 항목 전반에 걸친 서비스 이용 만족도를 살펴보면, 모든 항목에 걸쳐 4.2점이 넘게 나타나, 만족도 수준이 높다고 판단된다. 항목별로 원장과 교사에 대해 각각 4.58점과 4.56점으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인 반면, 물리적 환경 부문 즉 주변 환경과 시설 설비, 실내환경 부문에 대한 만족도가 각각 4.28점과 4.31점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또한 공공성 측면에서 주목해야 할 건강관리, 급간식 관리, 안전관리, 교육내용 등에서 4.4점을 넘는 만족도를 나타내어 고무적이라고 판단된다. 이들 항목은 국공립어린이집과 비교하여 유사하거나 약간 높은 수준을 보여 그 성과 측면에서 주목할 만하다고 본다. 그러나 이용비용 측면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과 비교하여 공공형-민간어린이집은 4.24점으로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기관유형별로는 공공형-민간어린이집에 비해 공공형-가정어린이집의 만족도가모든 항목에서 더 높게 나타나며, 국공립어린이집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인 이용비용 항목에서도 만족도의 차이를 보이지 않아 수요자 측면에서그 성과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가능하다고 본다. 그 밖에도 공공형-민간어린이집은 건강관리, 급간식 관리 부문에서 국공립이나 공공형-가정어린이집에 비해 낮은 만족도를 보이므로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

^{*} p < .05, *** p < .001

〈표 IV-2-10〉이용 만족도-전반(5첨 척도)

다위: 전

					<u> </u>
 구분	 국공립 -				
丁七	구오립 -	가정	민간	전체	- t
원장	4.40	4.65	4.53	4.58	-3.861***
교사	4.49	4.63	4.52	4.56	-1.645
주변 환경	4.14	4.42	4.18	4.28	-2.725**
시설·설비, 실내 환경	4.27	4.39	4.27	4.31	-0.884
교재 교구 및 장비	4.26	4.37	4.30	4.33	-1.486
내부 분위기	4.37	4.48	4.38	4.42	-1.011
이용비용	4.46	4.47	4.24	4.33	2.830**
건강 관리	4.43	4.52	4.38	4.43	0.076
급간식 관리	4.52	4.58	4.41	4.48	0.869
안전관리	4.47	4.51	4.46	4.48	-0.24 5
교육내용	4.36	4.49	4.45	4.47	-2.454*
부모참여(운영위원회 등)	4.19	4.38	4.25	4.30	-2 .379*
부모교육/부모상담	4.28	4.45	4.30	4.36	-1.623

주. 항목별 어린이집 이용 만족도-전반은, '매우 불만족' 1점~'매우 만족'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이 연구의 '어린이집 이용 만족도 및 요구 조사' 결과임.

나) 운영 사항에 대한 평가

기관 운영 측면에 대한 공공형어린이집 이용 부모의 평가를 살펴보면, 보육 교사/상호작용 부문이 5점 만점에 평균 4.58점으로 가장 높고, 보육 환경과 안 전관리 부문이 가장 낮은 4.36점으로 나타난다.

기관유형별로는 보육교사/상호작용, 보육환경/안전관리 부문에서 공공형어린이집 이용 부모가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부모보다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건강·영양관리, 보육교사/상호작용, 운영관리 항목에서 공공형-가정어린이집이 공공형-민간어린이집보다 높게 평가되었다.

〈표 IV-2-11〉 기관 이용 부모의 평가-운영 전반

단위: 점

구분	건강·영양관리) 보육환경 보		 유영관리
	신성'경장된다	/안전관리	/상호작용	군장선다
전체	4.50	4.31	4.53	4.39
국공립	4.50	4.25	4.48	4.39
공공형	4.51	4.36	4.58	4.39

^{*} p < .05, ** p < .01, *** p < .001

(표 IV-2-11 계속)

	·			
 구분	건강영양관리	보육환경	보육교사	 유영관리
丁七	신경 경장된다	/안전관리	/상호작용	ਦਰਦਾਰ
\overline{t}	-0.268	-2.953**	-3.127**	-0.077
공공형-민간	4.43	4.36	4.52	4.30
공공형-가정	4.62	4.36	4.67	4.53
t	3.989***	-0.117	3.202***	4.542***

주: 항목별 어린이집 이용 만족도는, '매우 불만족' 1점~'매우 만족'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이 연구의 '어린이집 이용 만족도 및 요구 조사' 결과임.

p < .01, *p < .001

항목별 평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건강·영양관리 부문은 전반적으로 4.3점 이상의 높은 평가를 나타내는데, 기관유형별로는 '아프거나 다친 영유아의 보호가 잘 이루어진다'는 항목에서 공공형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에 비해 높게 평가되었다. 이외 항목의 경우는 국공립과 공공형어린이집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전반적으로 공공형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에 비해 높은 평가 점수를, 공공형-민간어린이집은 낮은 평가 점수를 얻었다.

〈표 IV-2-12〉기관 이용 부모의 평가-건강·영양관리 부문(5첨 척도)

단위: 점

 구분	국공립		공공형		
T世	428	전체	민간	가정	- t
실내 공간은 청결하게 유지된다	4.47	4.50	4.42	4.64	-0.874
놀잇감은 청결하게 유지된다	4.41	4.44	4.36	4.57	-0.661
화장실과 세면장은 청결하게 유지된다	4.46	4.46	4.37	4.59	0.099
조리실은 위생적으로 관리된다	4.49	4.50	4.43	4.61	-0.121
유아의 급간식은 영양적으로 균형 있게 제공된다	4.57	4.55	4.48	4.65	0.749
급식 및 간식 제공 정보가 매일 공개된다	4.66	4.59	4.54	4.67	1.929
아프거나 다친 영유아의 보호가 잘 이루어진다	4.41	4.51	4.43	4.62	-2.497*

주: 항목별 어린이집 건강·영양관리는, '매우 불만족' 1점~'매우 만족'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이 연구의 '어린이집 이용 만족도 및 요구 조사' 결과임.

* p < .05

보육환경과 안전관리 부문에서 공공형어린이집 이용 부모는 '영유아용 가구와 설비가 구비되어 있다'는 항목에 대해 4.42점으로 가장 높게 평가했으나, '실외놀 이터와 놀이기구를 갖추고 있다'는 항목은 4.18점으로 가장 낮게 평가하였다.

기관유형별로는 국공립어린이집과 비교하여 '실외놀이터와 놀이기구를 갖추

고 있다'는 항목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부모가 4.29점으로 평가하여 공공 형어린이집 이용 부모보다 높게 평가하였으며, 반면에 '등하원 차량이 안전하게 운영된다'는 항목에서는 공공형어린이집 이용 부모의 평가 점수가 더 높게 나타 났다. 또한, 공공형어린이집 중에서는 항목별로 기관유형별 평가가 달리 나타나 서, 실외놀이터와 놀이기구 구비, 등하원 차량 안전 운행 부문에서는 공공형-민 간어린이집, 이외 항목에서는 공공형-가정어린이집이 더 높게 평가되었다.

〈표 IV-2-13〉 기관 이용 부모의 평가-보육환경/안전관리 부문(5첨 척도)

단위: 점

					271. 0
 구분	구고리		공공형		
Tゼ	국공립	전체	민간	가정	- <i>t</i>
영유아용 가구와 설비가 구비되어 있다	4.43	4.42	4.35	4.53	0.125
실외놀이터와 놀이기구가 갖추어져 있다	4.29	4.18	4.19	4.16	2.351*
다양한 보육활동 자료가 구비되어 있다	4.34	4.40	4.37	4.44	-1.463
등하원 차량이 안전하게 운행된다	3.71	4.28	4.44	4.05	-9.053 ^{***}
실내외 시설 및 설비가 안전하게 설치, 관리된다	4.36	4.41	4.39	4.45	-1.406
비상사태 대비 설비 및 방안이 갖추어져 있다	4.41	4.47	4.44	4.52	-1.572

주: 1) 이 연구의 '어린이집 이용 만족도 및 요구 조사' 결과임.

보육교사와 상호작용 부문은 이외 부문들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보인 가운데, 특히 '교사는 영유아를 존중하고 평등하게 대한다'와 '교사는 자녀와 상호작용을 잘한다'에서는 각각 4.60점과 4.61점으로 높게 평가되었다. 해당 항목의 경우 공공형어린이집 이용 부모는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부모에 비해서도 높게 평가하였다. 또한, 이들 항목에 대한 평가는 공공형어린이집 중에서 공공형-가정어린이집의 평가 점수가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난다.

그러나 교사와의 소통은 전반적으로 가장 낮은 평가를 보여 개선 노력이 필 요하다고 본다.

〈표 IV-2-14〉기관 이용 부모의 평가-보육교사/상호작용 부문(5첨 척도)

단위: 점

 구분	그고리		공공형		
T七	국공립 -	전체	민간	가정	- <i>t</i>
교사는 영유아를 존중하고 평등하게 대한다	4.48	4.60	4.55	4.67	-3.211 ^{***}
교사는 자녀와 상호작용을 잘한다	4.49	4.61	4.57	4.68	<i>-</i> 3.377 ^{***}
교사는 보육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다	4.49	4.58	4.52	4.67	-2.352 [*]

²⁾ 항목별 어린이집 보육환경/안전관리는, '매우 불만족' 1점~'매우 만족'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 p < .05, *** p < .001

그ㅂ			공공형		1
ी स	401	전체	민간	가정	- <i>t</i>
교사는 부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진다	4.44	4.55	4.47	4.68	-2.778 ^{**}

주: 항목별 어린이집 보육교사/상호작용은 '매우 불만족' 1점~'매우 만족'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이 연구의 '어린이집 이용 만족도 및 요구 조사' 결과임.

** *p* < .01, *** *p* < .001

공공형어린이집의 운영 관리 부문에 대해서는 '기타 필요경비가 적정한 수준이다'와 '부모 참여 등 일정이 부모를 배려하여 계획된다'가 공히 4.44점으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반면, '재정 운영이 투명하게 이루어진다'는 4.33점으로 가장 낮게 평가되었다.

기관유형별로는 국공립어린이집과 비교하여 '어린이집 운영에 부모의 의사가 잘 반영된다'는 항목에서 공공형어린이집 이용 부모의 평가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공공형어린이집 중에서는 '재정 운영이 투명하게 이루어진다'는 항목에서 차이를 보여, 공공형-가정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에 비해서도 높은 4.47점으로 평가된 반면, 공공형-민간어린이집은 4.24점으로 낮은 평가를 얻었다. 이는 공공형-민간어린이집의 회계관리 강화의 필요성을 암시한다. 또한, 기타 필요경비와 특별활동비의 수준에 대해서도 공공형-가정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에 비해서도 높은 평가를 보이는 반면, 공공형-민간어린이집은 가장 낮은 평가를얻어 관련 규제의 강화가 요구된다. 이용비용 측면은 앞에서 다룬 주요 항목별이용 만족도에서도 공공형-민간어린이집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여 시사점 측면에서 일관된 결과를 보인다.

〈표 IV-2-15〉 기관 이용 부모의 평가-운영 관리 부문(5첨 척도)

단위: 점

구분	국공립 -		공공형		4
1 正	40日	전체	민간	가정	- <i>t</i>
재정 운영이 투명하게 이루어진다	4.39	4.33	4.24	4.47	1.403
기타 필요경비(현장학습비 등)가 적정한 수준이다	4.51	4.44	4.36	4.58	1.633
특별활동비가 적정한 수준이다	4.48	4.41	4.30	4.56	1.876
부모에게 전반적인 운영을 공개한다	4.40	4.41	4.30	4.58	-0.228
어린이집 운영에 부모의 의사가 잘 반영된다	4.19	4.35	4.24	4.52	-3.372***
부모참여 등 일정이 부모를 배려하여 계획된다	4.38	4.44	4.35	4.59	-1.542
지역사회 참여 및 연계 활동이 활발하다	4.37	4.36	4.33	4.41	0.399

주: 항목별 어린이집 운영관리는 매우 불만족' 1점~'매우 만족'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이 연구의 '어린이집 이용 만족도 및 요구 조사' 결과임.

*** p < .001

나. 수요

공공형어린이집 이용 부모의 수요 전반을 파악하기 위해 타 기관 변경 의향과 현재 이용기관 권유 의향, 기관 이용시간이 불만족하다고 응답한 부모의 희망 이용시간, 그리고 보육 공공성 인식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국공립어린이집의 장점을 질문하였다.

1) 타 기관 변경 의향

우선 현재 이용기관의 변경 의향을 파악하기 위해 대기 신청 기관 유무와 대기 기관 현황을 조사하였다.

현재 이용 중인 기관 이외에 대기 신청을 해두었는지를 질문한 결과 '그렇다'고 응답한 공공형어린이집 이용 부모는 8.6%로 조사되어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부모에 비해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또한, 대기 기관 수는 평균 1.49개로서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부모의 평균 대기 기관 수인 1.45개와 유사한 수준이었다. 공공형어린이집 중에서는 공공형-가정어린이집의 긍정 응답률이 12.6%로더 높게 나타났으며, 대기 기관 수도 1.51개로 공공형-민간어린이집에 비해 더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V-2-16〉대기 신청기관 유무 및 대기 신청 중인 기관 수

단위: %(명), 개소

						· · (0 /)
 구분	대기 기관 유무	대기	기 신청 기관	수	 - 계(수)	 평균
丁七	있음 비율	1개소	2개소	3개소	7(十)	생긴
전체	9.7	56.6	39.7	3.7	100.0(136)	1.47
국공립	10.8	57.3	40.0	2.7	100.0(75)	1.45
공공형	8.6	55.7	39.3	4.9	100.0(61)	1.49
공공형 민긴	6.1	57.7	38.5	3.8	100.0(26)	1.46
공공형-기정	12.6	54.3	40.0	5.7	100.0(35)	1.51

자료: 이 연구의 '어린이집 이용 만족도 및 요구 조사' 결과임.

대기 신청을 해둔 부모를 대상으로 대기 신청 기관유형을 조사한 결과, 전반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희망하는 비율이 61.6%로 나타났다. 해당 비율을 기관유형별로 살펴보면,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부모의 비율이 69.2%로 가장 높고, 공공형-가정어린이집 60.0%, 공공형-민간어린이집 45.5%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반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가운데, 특히 현재 국공립어린

이집을 이용 중인 부모가 더 높은 선호를 보임을 알 수 있다.

〈표 IV-2-17〉대기 신청 기관유형(중복응답)

단위: %(명)

				E 71. 70(8)	
 구분	국공립	공	공형	 - 전체	
丁七	42月	민간	가정	ㅡ 전세	
국공립어린이집	69.2	45.5	60.0	61.6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5.1	3.0	_	3.4	
법인단체등 어린이집	12.8	9.1	2.9	9.6	
민간어린이집	14.1	18.2	22.9	17.1	
가정어린이집(놀이방)	2.6	6.1	5.7	4.1	
국/공립유치원	5.1	12.1	_	5.5	
사립유치원	1.3	9.1	11.4	5.5	
모름	3.8	18.2	_	6.2	
(수)	(78)	(33)	(35)	(146)	

자료: 이 연구의 '어린이집 이용 만족도 및 요구 조사' 결과임.

한편 현재 이용 중인 기관 이외에도 타 기관에 대기 신청을 해둔 이유로는 '현재 이용 중인 기관을 계속 이용할 수 없어서'가 43.2%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이는 특히 공공형-가정어린이집과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부모에서 높게 나타나, 이들기관을 이용 중인 부모의 경우 타 기관으로의 변경 사유가 현재 이용 중인 기관의 서비스에 대한 불만과는 무관할 여지가 있음을 암시한다(표 IV-2-18 참조).

반면 공공형-민간어린이집 이용 부모의 경우 타 기관 대기 신청 사유로서 '국 공립 기관에 보내고 싶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39.4%에 달하는 반면 '현재 이용 중인 기관을 계속 이용할 수 없어서'라고 응답한 비율은 18.2%에 그치고 있어 성과 측면에서 해당 공공형어린이집 제도 적용 사항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표 IV-2-18 참조). 다른 한편 공공형-가정어린이집의 이용 부모에서 '이용 중인 기관이 불만족스러워서'라는 응답이 전무하다는 점은 공공형어린이집 기관유형에 따라 그 성과 평가가 달리 이루어져야 함을 말해준다.

〈표 IV-2-18〉 타 기관 대기 신청 이유

단위: %(명)

				(0,
 구분	국공립	공증	 - 전체(수)	
1 正	401	민간	가정	- 선세(干)
전체	100.0(78)	100.0(33)	100.0(35)	100.0(146)
집에서 가까운 기관으로 옮기려고	20.5	12.1	5.7	15.1
현재 이용 중인 기관이 불만족스러워서	11.5	9.1	_	8.2

(표 IV-2-18 계속)

	 국공립 -	공증	공형	 - 전체(수)
正	10H	민간	가정	선생(1)
국공립 기관에 보내고 싶어서	12.8	39.4	28.6	22.6
현재 이용 중인 기관을 계속 이용할 수 없어서	44.9	18.2	62.9	43.2
기타	10.3	21.2	2.9	11.0

자료: 이 연구의 '어린이집 이용 만족도 및 요구 조사' 결과임.

나아가 위의 타 대기 기관 신청 사유 중 '현재 이용 중인 기관이 불만족스러 워서'라고 응답한 부모에게 불만족 내용을 질문한 결과, 공공형-민간어린이집 이 용 부모는 '이용비용이 비싸서', '기관 운영시간이 근무시간과 맞지 않아서', '보 육·교육프로그램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를 지적하였다. 해당 사례 수가 매우 적 어 일반화할 수는 없으나, 가정어린이집과 비교하여 주목할 부문이다.

〈표 IV-2-19〉 현재 이용 중인 어린이집의 불만족스러운 내용

단위: %(명)

 구분	국공립	공공		 - 전체(수)
	10 1	민간	가정	
전체	100.0(9)	100.0(3)	-	100.0(12)
이용비용이 비싸서	-	33.3	-	8.3
원장이 마음에 안 들어서	22.2	-	-	16.7
교사가 마음에 안 들어서	22.2	-	-	16.7
기관 운영시간이 근무시간과 맞지 않아서	11.1	33.3	-	16.7
보육교육프로그램이 마음에 들지 들어서	44.4	33.3	-	41.7

자료: 이 연구의 '어린이집 이용 만족도 및 요구 조사' 결과임.

〈표 IV-2-20〉 현재 이용 중인 어린이집 권유 의향(5점 척도)

단위: %(명). 점

						그게 : /0	(8), 8
 구분	전혀 그렇지	대체로	보통	대체로	매우	계(수)	평균
丁七	않다	그렇지 않다	이다	그렇다	그렇다	/((十)	物世
전체	0.6	0.9	3.8	24.5	70.3	100.0(1,404)	4.63
국공립	1.0	1.3	3.4	25.7	68.6	100.0(697)	4.60
공공형	0.1	0.4	4.1	23.3	72.0	100.0(707)	4.67
$X^2(df)/t$		<u>-</u>	$X^2 = 9.44$	44(4)			2.026*
공공형-민간	_	0.7	5.4	29.6	64.3	100.0(429)	4.58
공공형-가정	0.4	-	2.2	13.7	83.8	100.0(278)	4.81
$X^2(df)/t$		X	² =34.94	8(4)***			5.427***

주. 유사 인식 평균 점수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매우 그렇다'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이 연구의 '어린이집 이용 만족도 및 요구 조사' 결과임. * p < .05, *** p < .001

현재 이용 중인 기관에 대한 수요를 전반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주변에 소개 하거나 입소를 권유할 의향이 있는지를 질문하였다. 공공형어린이집 이용 부모 의 경우 긍정으로 응답한 비율(그렇다+매우 그렇다)은 72%로,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부모에 비해서도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해당 비율은 공공형-가정어린이집에 서 83.8%로 가장 높게 나타나, 이들 기관에 대한 높은 만족도와 일관된 결과를 보여준다.

2) 희망 이용시간

현재 기관 이용시간이 불만족(불만족+매우 불만족)하다고 응답한 부모를 대 상으로 희망하는 기관 이용시간을 질문하였다.

〈표 IV-2-21〉어린이집 희망 이용-등원 시각(평일 기준)

단위: %, 시(명)

				<u> </u>
구분	07:00 이전	7:01~8:00	8:01~9:00	평균(수)
전체	21.4	39.3	39.3	8.41(28)
국공립	23.1	38.5	38.5	8.38(13)
공공형	20.0	40.0	40.0	8.43(15)
공공형-민간	14.3	42.9	42.9	8.54(14)
공공형-가정	100.0	-	-	7.00(1)

자료: 이 연구의 '어린이집 이용 만족도 및 요구 조사' 결과임.

공공형어린이집 이용 부모의 희망 등원 시각은 현재 시각(약 오전 9시)보다 약 36분이 빠른 약 8시 24분, 희망 하원 시각은 현재 시각(오후 4시 54분)보다 1 시간 29분이 늦은 오후 7시 24분으로 조사되었다. 이 같은 희망 이용시간은 현 행 12시간 내 운영에 포괄되는 시간대로서 실질적인 종일제 운영으로 시간 내 에서 반영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표 IV-2-22〉 어린이집 희망 이용-하원 시각(평일 기준)

단위: %, 시(명)

				_ // // // // //
구분	19:01~20:00	20:01~21:00	21:01 이후	평균(수)
전체	75.0	17.9	7.1	19.48(28)
국공립	61.5	30.8	7.7	19.58(13)
공공형	86.7	6.7	6.7	19.40(15)
공공형-민간	85.7	7.1	7.1	19.43(14)
공공형-가정	100.0	-	-	19.00(1)

자료: 이 연구의 '어린이집 이용 만족도 및 요구 조사' 결과임.

3) 국공립어린이집의 장점에 대한 인식

어린이집의 공공성에 대한 부모 인식 전반을 파악하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의 장점을 질문한 결과, 1순위와 1, 2순위를 종합하여 공히 '자녀가 안전하게 보호됨'이 각각 23.6%와 40.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이용비용이 저렴함', '일하는 부모가 근로시간 동안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음' '질 높은 보육서비스가 운영됨', '기관이 투명하게 운영됨', '교사의 전문성 수준이 높음' 등이 지적된다.

이러한 부모들의 인식은 보육서비스 공공성은 안전관리, 이용비용 규제, 운영 시간 준수, 보육·교육프로그램 질 관리, 교사 전문성 강화, 회계 투명성 확보 등 이 담보되어야 함을 말해준다.

〈표 IV-2-23〉 국공립어린이집의 장점

단위: %(명) ____ 1+2순위 구분 1순위 자녀가 안전하게 보호됨(학대, 안전사고 예방 등) 23.6 40.6 이용비용이 저렴함 23.0 35.8 일하는 부모가 근로시간 동안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음 17.4 34.5 질 높은 보육프로그램이 운영됨 10.5 24.8 기관이 투명하게 운영됨(각종 비리 없음, 정보공개 등) 9.2 22.6 교사의 전문성 수준이 높음 8.8 23.3 법정 운영시간(07:30~17:30)과 운영 일수가 준수됨 5.7 12.2 별다른 장점이 없음 0.9 2.6 취약계층 가구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이 보장됨 0.4 1.6 1.9 모름 0.6 계(수) 100.0(1,404) (1,404)

자료: 이 연구의 '어린이집 이용 만족도 및 요구 조사' 결과임.

3. 소결

지금까지 살펴본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공공형어린이집 제도의 성과를 평가하고, 제도 개선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형어린이집 제도의 성과로는 전반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대체할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나, 서비스 질적 측면에서는 일부 개선 효과가 있다고 평 가된다. 앞서 다룬 공공형어린이집 이용 부모들의 공공형어린이집에 대한 인지 도는 대체로 높은 수준이며, 기관 선택 시에 공공형어린이집이라는 점이 고려된 점도 지적되므로 고무적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이들이 현재 이용 중인 기관을 국공립어린이집과 유사하다고 인식하는 비율도 전체 응답자의 80%에 육박하여 공공성 차원에서 양 기관과의 간극이 좁혀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제도 이해 부문에서는 현재 이용 중인 부모임에도 불구하고 제도 내용을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 응답자의 34%가 넘게 나타나므로 공공형어린이집 제도에 대한 홍보 노력이 지속적으로 요구됨을 알 수 있다. 또한, 국공립어린이집과의 차별화 인식과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기관 변경 의향도 드러나, 공공형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에 준하는 공보육 기관으로 인식되는 데는 일정한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특히 국공립어린이집의 차별화 내용과 국공립어린이집의 변경 사유로서 일관되게 지적된 이용비용 측면에서 두드러진 것으로 확인된다.

둘째, 이용 부모 측면에서 공공형어린이집 제도의 성과는 이용비용 측면에서는 미흡하나, 교사에 대한 신뢰도 등의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개선 효과가 있다고 평가된다. 공공형어린이집 이용 부모의 서비스 만족도는 국공립어린이집과 비교하여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 아니며, 일부 항목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보다 높은 만족도를 보인다. 특히 교사와 원장 부문의 만족도는 국공립어린이집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공공형어린이집에 지원된 운영비가 주로인건비에 활용된 데 따른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시설 환경 부문의 만족도도 국공립어린이집보다 높은 수준을 보여 공공형어린이집 원장과의 심층면담 결과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운영비 지원이 교구교재 구입과 환경개선 비용으로 활용되었음을 집작하게 한다.

그러나 이용비용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에 비해 현저히 낮은 만족도를 보이며, 이는 공공형-민간어린이집 특히 규모가 큰 기관에서 더 낮게 나타나므로 주의를 요한다. 이와 관련하여 총 추가비용과 특별활동 갯수도 공공형-민간어린이집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며, 특별활동에 모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23.1%로 가장 높게 나타나, 이들 기관의 특별활동 관리 강화를 포함하여추가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적극적인 개선이 요구된다. 또한, 운영 사항에 대해서도 보육교사/상호작용, 건강·영양관리 부문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에 비해 높은 평가를 보였는데, 이는 특히 공공형-가정어린이집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셋째, 공공형어린이집 제도의 평가는 기관유형에 따라 달리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앞서 다룬 이용 부모의 만족도와 운영 평가 결과는 공공형어린이집 유형에 따라 차이를 보이므로 그 성과 평가도 달리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교사에 대한 신뢰와 전문성 부문에서는 보육서비스의 질적 개선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그 성과가 가장 두드러지며, 특히 공공형-가정어린이집의 개선 효과는 주목할만하다. 반면에 이용비용 측면과 투명한 기관 운영 측면에서 공공형-민간어린이집의 성과는 미진한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 공공형-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들이 타 기관으로의 변경 사유로서 '국공립어린이집에 보내고 싶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39.4%에 달하는 점은 성과 측면에서 한계가 있음을 말해준다. 국 공립어린이집의 장점으로는 안전관리, 저렴한 이용비용, 회계 투명성 확보, 교사전문성, 프로그램의 질 등이 지적되므로 공공형어린이집 제도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특히 기관규모가 큰 공공형-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이용비용 규제가 일 차적인 개선 과제임을 알 수 있다.

V. 정책 방안

이 장에서는 앞에서 다룬 재무구조 등 공공형어린이집의 특성, 공공형어린이집 이용 부모의 공공성 인지 수준과 서비스 만족도, 그리고 현장(공공형어린이집 원장)의 효과 인식과 개선 요구를 종합하여 공공형어린이집의 운영 방향을 제시하고, 세부 발전 방안을 제시하였다.

1. 운영 방향

그동안 공공형어린이집은 공공성 차원에서 정체성이 모호하고, 추가 운영비지원에 따른 서비스 개선 효과도 의문시되었다. 이러한 부정적인 평가는 민간보육시설은 근본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설치·운영되므로 추가적인 운영비 지원만으로 보육 공공성을 기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이때보육 공공성은 앞서 논의된 바와 같이 질 높은 보육프로그램(교사의 전문성 전문질, 저렴한 보육비용, 투명한 기관 운영(회계관리의 투명성, 각종 비리와 부정없음, 정보공개 등), 교사의 높은 전문성 수준 등으로 구성된다.

앞에서 다룬 기관 특성과 이용 부모들의 이용 실태 및 만족도 조사결과에 의하면, 공공형어린이집은 교사의 전문성과 보육프로그램의 질적 측면에서는 개선효과가 확인되나, 서비스 이용비용과 투명한 기관 운영 측면에서는 그 성과가미흡하며, 이는 특히 공공형-민간어린이집에서 더욱 그러한 것으로 나타난다. 즉경기 지역의 공공형어린이집 이용 부모의 만족도는 교사와 원장, 교육내용, 부모참여 항목에서 보육프로그램, 부모참여, 부모교육과 상담 항목에서 같은 지역의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부모에 비해 높게 나타난 반면, 이용비용 측면의 만족도는 가장 낮은 수준으로 국공립어린이집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특별활동 실태에서도 일관되게 확인된다.

그러므로 공공형어린이집 제도 도입의 취지인 서비스 질적 수준 제고를 통한 국공립어린이집 수준의 공보육 인프라로서의 기능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교사의 전문성 강화에 따른 보육프로그램 질적 개선은 일부 이루어진 반면, 이용비용 규제 측면에서는 그 성과가 미흡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서비스 질적 개선 효과 는 공공형어린이집에 추가적으로 지원된 운영비가 주로 인건비에 소요되어 전 문성이 높은 교사의 채용을 가능하게 하고, 인건비 수준의 상승으로 안정적인 교사를 확보할 수 있게 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도 신규 선정 시부터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공공형어린이집 대상 교육지원 특히 의무적으로 참여하 도록 규정된 자율공부모임이 심층면담을 통해 확인된 바와 같이 교사의 역량 강화에 일정 부분 기여하였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육서비스 지원을 통해 대표적인 정책 효과로서 일·가정 양립지원을 통한 여성 경력단절 예방 및 노동권 보장, 아동 발달 증진, 출산율 제고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질 높은 보육서비스'가 주요한 전제가 되므로 공공형어린이집 제도에 따른 민간시설의 교사의 전문성 강화와 보육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제고는 보육 정책의 목표 측면에서 주목할 만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공공형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을 대체할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는 무엇보다 공공형어린이집을 이용 중인데도 여전히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선호를 보인 점을 통해서 확인된다. 공공형어린이집 이용 부모들의 경우 해당 기관이 국공립어린이집과 유사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80%에 육박하나, 다른 한편으로 국공립어린이집과의 차별화 내용으로 '이용비용'이 가장 많이 지적되고(46.7%),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변경 의향이 있는 부모의 경우 그 사유로서 '비용이 저렴해서'가 30.5%로 가장높은 응답률을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공공형-민간어린이집 재무구조상 기타 필요경비, 특별활동비의 세입 비중이 국공립어린이집이나 공공형-가정어린이집에비해월등히 높은 수준이며, 세출 항목 중 기타 필요경비의 수준과 아동 1인당기타 운영비 지출 비율은 77인 이상 또는 98인 이상 규모의 기관에서 두드러지게 높게 나타난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향후 공공형어린이집 제도의 운영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형어린이집 제도의 목표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대체하는 기능이 아니라, 민간시설의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 제고임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들 기관은 근본적으로 공보육 기관의 성격을 온전히 지니기는 어려우므로 공공성 요소 전반의 개선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우나, 인건비 지원을 통해 교사의 전문성 제고를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은 개선할 수 있다고 기대된다. 이런 측면에서 현행 보육사업안내에 명시된 공공형어린이집의 정의는 비교적 타당하다

고 판단된다. 보육사업안내에서 공공형어린이집 제도는 '우수한 어린이집을 선정하여 운영비를 지원하고 보다 강화된 운영 기준을 적용하여 양질의 보육을 영유아에게 제공하는 우수 보육 인프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정의된다(보건복지부, 2015a: 359). 공공형어린이집에 대한 명확한 자리매김은 공공형어린이집 제도의 일관된 운영이 가능하게 한다. 앞서 살펴본 제도 연혁에 의하면, 공공형어린이집의 선정 기준, 운영 기준, 지원내용은 2012년 이후 변화를 거듭해 왔으나, 일관된 개정 원리를 파악하기 어려운데, 이는 공공형어린이집 제도의 정체성이 모호한데서 비롯되었다고 보여진다.

둘째, 앞서 언급한 공공형어린이집의 태생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공공성 요소의 핵심을 이루는 이용비용에 대한 개선은 시급히 요구된다. 이용비용 부문은 국공립어린이집과의 차별화 지점임과 동시에 이용 만족도가 가장 낮은 항목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비용 규제의 강화 없이는 공공형어린이집의 성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판단된다.

셋째, 공공형어린이집 제도의 성과는 기관유형과 기관규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단적으로 말해 보육서비스의 질적 제고 측면에서 공공형-가정어린이집은 공공형-민간어린이집에 비해 그 개선 효과가 두드러진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므로 향후 성과 평가는 기관유형과 기관규모별로 세밀한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공공형어린이집의 성격을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서비스 질적 수준을 담보한 민간시설로'서 명확하게 자리매김할 경우, 인프라 확충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만하다고 판단된다. 단 그 성과가 의문시되는 '이용비용' 부문에 대한 규제 강화와 기관 운영의 투명성 제고 장치의 마련을 전제로 추진한다. 이와 더불어가장 주된 효과로서 파악된 교사의 전문성 수준이 견지되고 보육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이 제고될 수 있는 적정한 운영비 지원 수준을 모색하며, 사후관리를 위한 교사 대상 교육지원의 내실화도 요구된다.

2. 발전 방안

앞서 언급한 공공형어린이집 제도의 운영 방향을 토대로 접근성 제고와 선정 요건, 운영 기준, 지원내용 및 사후품질관리 전반에 걸친 세부 발전 방안을 제 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지리적 접근성 격차 해소

매년 공공형어린이집 예산의 배정 시에 전국 지역의 수요를 반영하여 그 확충 규모를 정하고, 지역별로 국공립어린이집 공급 수준을 동시에 고려하여 지역별로 고른 선정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공공형어린이집의 설치 현황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그 공급 수준은 커다란 격차를 보인다. 각 지역별로 만 0~5세 인구수를 공공형어린이집 수로 나눈 '공 공형어린이집 1개소당 영유아 수'는 인천 지역이 2,144명으로 가장 많고, 제주지역이 407명으로 가장 낮아 지역 간 격차를 보인다.

앞서 제기한 운영 방향에서와 같이 공공형어린이집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질 좋은 어린이집'을 표방한다면, 공공형어린이집 설치 공급은 서비스의 지리적 접 근성 측면의 형평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즉 공공형어린이집의 확충은 국공립어 린이집의 공급률은 낮으나 대기 아동이 많아 공보육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높 은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한다.

나. 선정 요건 및 제외대상 기준 강화

향후 선정요건의 개정은 앞서 제기한 공공형어린이집의 목표에 일관되게 부합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공공형어린이집의 선정 요건 및 제외대상 기준은 매년 그 기준을 변경하여 적용해왔으나, 이는 공공형어린이집에 진입하려는 현장의 혼란을 야기함은 물론, 보다 근본적으로 제도의 방향성을 모호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공형어린이집의 선정은 우수한 민간시설을 선별하여 운영비를 지원하여 서비스 질적 수준을 제고하려는 것이므로 이에 부합하는 요건에 주목한다. 이는 단적으로 매해 재정 운영상 어려움을 완화 또는 해소하기 위한 민간시설의 진입을 차단하고, 현재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측면에서 우수한 기관을 선정해야함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제외대상으로는 2014년에 보완된 재정구조와 보수교육 관련 사항은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할 적정한 요건으로 판단된다. 임대 로 및 융자금 상환액이 보육료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민간시설의 재무구조 상 운영비 지원의 효과성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앞서 다룬 기관 특성에 의하면, 특히 공공형-민간어린이집의 재무구조는 일반 민간어린이집과 거의 유사하며, 특별활동비와 기타 필요경비 비중이 높게 나타나 우려를 자아내므로 향후는 현 행 10% 수준을 유지하거나 하향 조정될 필요가 있다. 또한, 제외대상으로 2014 년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원장 및 보육교사 보수교육 이수 항목이 포함되 었는데, 이는 고무적이라고 판단된다. 교사의 전문성 강화를 통한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가 공공형어린이집의 핵심 운영 원리임을 고려하면, 해당 조치는 지속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선정 기준은 서울형어린이집 제도와 비교하여 현장 실사가 이루어 지지 않아 우수한 어린이집의 선정에 근본적인 한계를 지니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 일단 총점 기준은 거듭 변동되지 않도록 현행 85점으로 확정하되, 현장 실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안심보육 부문이 포괄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즉 현행 기본 점수는 평가인증 점수와 건물 소유 형태, 교사자격요건 등이 고려되고 있으나, 국공립어린이집의 가장 주된 장점으로 인식되는 '자녀가 안전하게 보호됨'에 부합하는 적용 기준은 전무한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요구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공공형어린이집의 선정 시에 전국 지역을 걸쳐 현장 실사를 진행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해당 사항에 대한 부모 만족도 등이 고무적이므로 선정 요건으로 신설하기보다는 사후관리에 포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다시 말해 공공형어린이집 이용 부모가 공공형어린이집의 장점으로 '자녀가 안전하게 보호됨'을 지적한 비율도 가장 높게 나타나며, 건강·영양관리와 안전관리 부문의 만족도 점수도 국공립어린이집에 비해 낮은 수준은 아니어서 기관 선정 단계부터 적용하지 않고, 사후관리를 통해 질적 수준을 유지 강화하는 방안이 보다 현실적이라고 판단된다.

한편 선정 시 가·감점 항목은 매년 그 배점이 축소되어 왔는데, 향후에도 그비중은 점차 줄여가는 것이 취지에 부합한다고 본다. 현행 가점 항목 중 교사와 원장의 근속 연수와 맞벌이 가구의 재원률은 지속적으로 적용하되, 대표자와 원장이 동일한 점은 일반적인 사항에 속하므로 가점을 부여하기보다는 대표자와 원장이 불일치할 경우에 감점을 부여하는 것이 보다 타당할 수 있다. 또한, 해당 항목으로 특별활동비, 특성화비 등 부모 부담 비용은 새롭게 고려될 필요가 있다. 앞서 다룬 공공형어린이집 이용 부모들의 만족도 결과에서 이용비용 항목

은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이며,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부모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또한, 이용비용은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주요 변경 사유로도 지적되므로, 가장 시급하게 보완되어야 할 사안이다. 따라서 서울형어린이집 선정 요건에서와 같이 보육료 등 경비 수납의 투명성을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을 추가한다.

이외에도 공공형어린이집의 성과는 교사의 전문성 강화에 좌우된다고 판단되므로 가점 항목으로 전문인력 확보 및 보육교직원 역량 강화 노력 등이 추가로고려될 수 있다. 이러한 기관의 노력은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이후 자율공부모임이나 교사 연수 등의 적극적인 참여와 직결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재선정기관의 선정 기준은 당해 연도 기준을 적용하되, 대상 기관들이 최초 인증 이후 변화된 선정 기준을 숙지하고, 기관 차원에서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미리 공지하고, 필요 시에 설명회를 개최하여 이해를 돕는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형어린이집 제도의 경우는 필수항목을 현행대로 적용함은 물론 현장 실사를 보다 강화하여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 운영비 지원 및향후 지원에 따른 사회적 책무성에 준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를 참조하여 일반어린이집에 비해 추가적으로 지원받은 기간에 상응하는 서비스 질적 수준의 제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운영 기준이나 사후관리 등에서 추가 요건을 부가하되, 재선정 이후 추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

다. 운영 기준 보완

운영 기준으로는 회계관리 투명성을 담보하려는 노력이 시급히 요청된다. 공 공형어린이집 이용 부모의 이용비용에 대한 불만족 수준이 높고, 특히 공공형-민간어린이집의 경우는 재무구조상 기타 운영비와 필요경비 등의 비중이 일반 어린이집과 다르지 않으며, 특별활동 개수와 해당 비용 수준도 가장 높게 나타 나, 그 성과가 의문시되기 때문이다. 이는 적정한 운영비 추가 지원을 고려할 경우 보다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기도 하다.

이는 근본적으로는 회계관리시스템의 도입 및 사용 의무화를 통해 해결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공공형어린이집의 전국적 확충에 따라 장기적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용 부모의 비용 규제를 위해 일차적으로 특별 활동 관리를 강화하는 조치가 요구된다. 특히 공공형어린이집 이용 부모 대상조사결과에 의하면, 특별활동 참여가 의무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응답한 비율도

23.1%에 달하고, 공공형-민간어린이집의 경우는 해당 비율이 31.9%로 높게 나타 나므로 특히 기관규모가 큰 공공형-민간어린이집의 특별활동에 대한 규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운영시간의 경우도 비교적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희망 이용시 간과 현재 이용시간과의 간극이 큰 것으로 나타나므로, 실질적인 종일제 운영 사항에 대한 관리도 엄격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들 내용을 종합하면, 공공형어린이집 운영 기준으로는 중장기적으로 회계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고, 단기적으로 특별활동 관리와 운영 시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다음의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

첫째, 공공형어린이집 확대에 따라 장기적으로 회계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사용을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보육료 수납 제한은 물론 기타 운영비 사용 비율 도 제한한다. 이 같은 투명한 회계관리 체계가 구축된 이후에 서울형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국공립어린이집 수준의 인건비 지원체계로의 전환이 모색될 수 있 을 것이다.

둘째, 현행 규정에 의하면, 특별활동의 시행은 사전에 부모로부터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데(보건복지부, 2015a: 79), 이때 의무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상황을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특별활동 갯수를 최대 3개 이하로 제한하고 해당 상한액도 엄격히 규제한다. 공공형어린이집 이용 부모들의 경우 특별활동에 참여하는 개수는 평균 2.14개로 국공립어린이집과 동일한 수준이나, 공공형-민간어린이집의 해당 개수는 2.56개로 공공형-가정어린이집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또한, 공공형어린이집 이용 부모가 4개 이상의 특별활동에 참여하는 15.1%이나, 공공형-민간어린이집의 해당 비율은 19.6%로 더 높게 나타났다.

셋째, 현행 어린이집 운영 시간은 오전 7시 반에서 오후 7시 반까지 12시간이나, 공공형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평균 하원 시각은 오후 5시경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이용시간에 대해 불만족하는 부모들의 희망 하원 시각은 대략 오후 7시 30분으로 현행 규정 이내 시간대였다. 따라서 현행 운영 시간은 반드시 준수할 수 있도록 설명회 등에서 보다 강조될 필요가 있다.

라. 운영비 지원 강화: 보조인력 인건비 지원

공공형어린이집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보조교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

이 새롭게 고려될 수 있다. 이는 앞서 강조한 공공형어린이집의 정체성에 부합 하여 그 성과와 직결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즉 공공형어린이집 제도로는 민 간시설에 인건비가 추가 지원되어 질 높은 교사의 채용을 가능하게 하며, 이로 써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를 추구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이는 보육교사가 보육활동에만 전념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속적으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 회를 부여하는 것을 통해 가능하다. 이를 위해 비담임교사와 보육 도우미 고용 시 인건비를 일정액까지 지원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공공형어린이집 원장 대상 심층면담 결과에 의하면, 기관 특성이나 특수보육시책에 따라 비담임교사 와 보육도우미 인건비 지원에 대한 수요는 일부 다를 수 있으나, 대체로 비담임 교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경향이 있다. 이를테면 영아보 육 위주인 가정어린이집의 경우는 원장이 교사를 겸직하고 있어 비담임교사의 필요성이 높고, 취사부 인건비가 별도 예산으로 지원되는 지역의 경우에도 비담 임교사 인건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된다. 따라서 기관 여건에 따라 비담임교 사와 보육 도우미를 각각 활용할 수 있도록 별도 인건비를 책정하여 선택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형어린이집의 경우는 1일 6시간 주 5일 이상 근무 시에 비담임교사는 114만원, 보육 도우미는 88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마. 사후품질관리 내실화

현행 공공형어린이집에 대한 사품질관리는 자율공부모임과 재무회계컨설팅이 주를 이루며, 교사 연수는 신청제에 의해 운영되므로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자율공부모임과 재무회계컨설팅 위주로 내실화한다.

우선 자율공부모임은 지난 2012년 이후 현재까지 4년 차에 이르므로 연차별 전환 방식을 모색한다. 교육 효과 측면에서 교육 시기에 따라 교육내용과 교육 방식은 차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과정은 현행과 같이 공공형어린이집 인증 시기로부터 신규 1년, 2년~3년, 3년 이후로 그 대상을 구분하여 진행하되, 3년 이후 또는 4년 이후부터는 기존 집합교육과 워크숍 방식의 교육을 보육컨설팅으로 전환한다. 공공형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담 조사에 의하면, 보육활동 및 프로그램에 대한 보육컨설팅의 수요는 매우 높게 나타난다. 또한, 일정 수준의 교육 이수 후에는 보육 현장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받는 것이 보육프로그램 운영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

다. 이를 위해 한국보육진흥원은 기본교육을 이수한 보육컨설팅 지원 대상 기관의 명단을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에 일괄 전달하고, 중앙센터는 해당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로 하달하는 체계를 명시한다. 또한 이때 각 시·도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가 해당 기관을 보육컨설팅 지원사업의 우선 지원 대상으로 조치하도록권고하고, 필요 시에 각 지역의 시·군·구 센터의 협조를 구한다. 나아가 공공형어린이집 대상 보육컨설팅은 일반 어린이집 대상 보육컨설팅과 그 내용상 선도적인 보육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차별화를 기할 수 있도록 고안될 필요가 있다.해당 부문으로는 이를테면 기관 신뢰와 직결되는 열린어린이집 운영이나, 교사역량과 직결되는 영유아 권리 존중 보육의 현장 적용, 공보육 인프라 기능으로서 취약계층 가구 아동에 대한 가정 연계 강화 등이 고려될 수 있다.

자율공부모임과 교사 연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대체인력이나 보조교사지원이 요구되므로 국고 지원 대체교사의 경우는 공공형어린이집에 우선적으로 배치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특히 가정어린이집의 경우는 원장이 교사를 겸임하여 교육 참여시 보육활동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될 수 있고, 교육 기회 측면에서 교사의 참여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대체교사 및 보조인력 지원이보다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앞서 제시된 보조교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는 교육 참여가 보다 원활해질 수 있을 것으로기대된다.

그 밖에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보육컨설팅 내용에는 보육활동 이외에도 안심보육 관련 사항을 포함하여 보육활동에 대한 보육컨설팅 유형별로 연간 의 무 참여 횟수를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적 개선과 함께 안전 한 보육환경이 유지되도록 한다.

재무회계컨설팅은 현장의 도움 인식 수준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지속적으로 강화하되, 재무회계 코디네이터의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양성 및 보수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안정적인 풀을 유지하여 전문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재무회계컨설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컨설팅 과정에서 시정 조치가 발견되는 경우는 개선 기간을 정하고 해당 기간내에 추가 컨설팅을 실시하여 개선 정도를 점검한다. 이를 위해 재무회계 코디네이터의 배치는 지역을 중심으로 일정하게 이루어져 안정된 인력이 보장되는 운영체계가 요구된다.

바. 기타 사항

공공형어린이집 제도는 2011년 시범 이후 시행 4년 차에 접어듦에 따라 이용 부모들의 인지도는 높은 수준을 보이나, 제도 이해 수준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제도 인지 경로도 주로 현재 이용 중인 어린이집을 통해 알게 되는 실정이므로 체계적인 제도 홍보 노력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참고문헌

- 김예린·김근세(2013). 서울형어린이집 인증제도와 보육서비스 품질: 인증시설과 미인증시설의 차이를 중심으로.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3(2), 139-164.
- 김재환(2009).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에 대한 조사·연구. 한국보육학회지, 9(4), 43-72.
- 김정호(2011).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정부의 역할. 보건복지부 공공 형·자율형 어린이집 시범사업 공청회 자료집, 27-31.
- 김종해(2011). 공공형, 자율형 어린이집의 문제: 양질의 보육서비스? 이대로는 안된다-보육서비스의 공공성 담보돼야. 월간 한국노총, 472, 26-27.
- 백선희(2011).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보건복지부(2011). 공공형·자율형 어린이집 시범사업 공청회 자료집.
- 보건복지부(2013). 2013 공공형어린이집 업무 매뉴얼.
- 보건복지부(2014). 2014 공공형어린이집 업무 매뉴얼.
- 보건복지부(2015a). 2015 보육사업안내.
- 보건복지부(2015b). 2015 공공형어린이집 업무 매뉴얼.
- 보건복지부(2015c). 내부자료.
- 사회복지사업법[법률 제12935호, 2014.12.30., 타법개정]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1998호, 2013.8.6., 타법개정]
- 서문희·양미선·도미향·송신영(2011). 공공형·자율형 어린이집 시범사업 모니터 링 및 평가.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 서문희·이혜민·이원선(2014). 공공형어린이집 제도 개선 및 발전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 서울특별시(2013). 2013년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 서울특별시(2014). 서울형어린이집 공인 유지 현황.

- 서울특별시(2015a). 2015년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 서울특별시(2015b). 2015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신규 공인 안내.
- 서울특별시(2015c). 2015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평가 설명회.
- 안현미·박소영(2010). 서울형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질 평가와 활성화 방안 연구.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안현미·김송이(2011). 한국의 보육공공성과 '제3의 보육체계': 서울형어린이집을 중심으로. 한국영유아보육학, 69, 107-137.
- 양미선(2014). 어린이집 운영의 공공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보육지원학회 지, 13(3), 31-46.
- 영유아보육법[법률 제13321호, 2015.5.18., 일부개정]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355호, 2015.9.18., 일부개정]
- 윤경미·전병주(2014). 어린이집 유형에 따른 보육교사의 이직의도에 관한 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13(1), 25~35.
- 윤경준·지경빈(2011). 보육교사의 이직의도와 정책적 시사점: 서울형어린이집의 구조적 특성과 근무환경을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5(2), 171-197.
- 이미정(2012). 공보육 확충정책과 공공형어린이집 정책 고찰. 한국보육학회지, 12(4), 1-24.
- 이한영(2014). 공공형어린이집의 실질적 변화인 교육지원, 전문성과 열정을 위한 지속적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2014년 공공형어린이집 안정적 운영 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집, 55-60.
- 임혜영·김현주(2014). 공공형어린이집 공인 인증제도에 대한 부모의 인식 연구.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0(5), 63-82.
- 정두석(2014). 공공형어린이집 발전 방안. 2014년 공공형어린이집 안정적 운영방 안을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집, 82-85.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2015). 공공형어린이집 재무회계 현황 자료.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각 년도). 공공형어린이집 현황 자료.

- Howes, C., Philips, D. A., & Whitebook, M.(1992). Thresholds of Quality: Implications for the Social Development of Children in Center-Based Child Care. *Child Development*. Vol. 63. No. 2. April 1992.
-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2008). OECD 영유 아 교육·보육 정책Ⅱ(교육과학기술부·육아정책개발센터 역). 교육과학기술부.
- Vandell, D. L., & Wolfe, B.(2000). Child Care Quality: Does It Matter and Does It Need to Be Improved? *Institute for Research on Poverty Special Report*. No. 78. November 2000.

【국내 웹사이트】

(재) 한국보육진흥원 홈페이지: http://www.kcpi.or.kr/thebcc 서울특별시 보육포털서비스 홈페이지: iseoul.seoul.go.kr

부록

부록 1. 어린이집 이용 만족도 및 요구 조사 설문지: 부모 대상

부록 2. 심층면담 질문지: 기관 대상

부록 1. 어린이집 이용 만족도 및 요구조사 설문지: 부모 대상

국무총리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육아정책연구소 Euro Institut of Child Core and Effection	이 설문에서 얻어진 모든 내용은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그 비밀이 보호되도록 통계법(제3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ID		
	어린이집 이용 만족도 및 요구 조시	ŀ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는 육아지원정책에 관한 연구를 보다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무총리 산하 국가정책연구기관입니다.

본 연구소는 보건복지부의 요청을 받아 학부모님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이용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어린이집 이용에 대한 만족도 및 요구를 조사하여 향후 어린이집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솔직하게 응답하여 주시면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통계법」제33조와 제34조에 의거하여 연구 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육아정책연구소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빌딩 3, 4층)
조사 주관 기관	[육아정책연구소]: 유해미 부연구위원 [육아정책연구소]: 박기원 연구원
	(주)밀워드브라운미디어리서치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445-3 국제전자센터 24층)
조사 실시 기관	[연구담당]: 미디어리서치 사업 5부 장호원 차장 (☎ 02-3488-2759) [실사담당]: 미디어리서치 실사 1팀 박하나 과장 (☎ 02-3488-1648)

SQ1. 어린이집 지역(리스	트에서 입력)
()시/도 ()시/군/구 ()일반구(수원/성남/고양/부천)
SQ2. 어린이집 유형(리스	트에서 입력)
□1) 국공립어린이집	□2) 민간어린이집 □3) 가정어린이집(놀이방)
SQ3. 아동정원 규모(리스	트에서 입력)
□1) 50인 미만	□2) 50인 이상
SQ4. 도시규모별(리스트의	게서 입력)
□1) 중소도시	□2) 읍면지역

※ 본 설문의 대상은 현재 자녀가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 기준입니다. 만약 해당 어린이집에 두명 이상의 자녀가 다니고 있다면 첫째 자녀 기준으로 응답해주시면 됩니다.

아 서는이라 이용 전용
문1. 귀하의 자녀는 현재 이용 중인 어린이집에 입소한지 1개월이 지났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조사중단
문2. 현재 자녀는 몇 세반에 속해 있습니까? ()세 반
문3. 현재 다니는 어린이집을 이용한 기간은 총 얼마나 됩니까? (총 이용 기간:년개월)
문4. 어린이집은 평일 기준으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용하십니까? (평일 기준 이용 시간: 오전시분)~ 오후시분)
문4-1. 문4번에서 응답하신 어린이집의 이용 시간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 ① 만족 ☞문5번으로 □ ② 불만족 ☞문4-2로
문4-2. (불만족한 경우)그럼, 희망하는 이용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입니까? (평일 기준 이용 시간: 오전시분) ~ 오후시분)
문5. 현재 이용 중인 어린이집을 다니기 전에 다른 기관(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을 이용한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예 ☞문5-1번으로 □ ② 아니오 ☞문6번으로
문5-1. (문5번에서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경우) 그럼 과거에 이용하셨던 기관은 무엇입니까? 이용한 기관이 2개 기관 이상인 경우는 가장 최근에 이용한 기관을 기준으로 응답해주세요.
□ ① 국공립어린이집 □ ②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 ③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 ④ 민간어린이집 □ ⑤ 가정어린이집(놀이방) □ ⑥ 직장어린이집 □ ⑦ 부모협동어린이집 □ ⑧ 국/공립유치원 □ ⑨ 사립유치원 □ ⑩ 기타 (반일제)학원 □ ⑪ 모름
문5-2. 과거에 다니던(문5-1번에서 응답한 기관) 기관을 그만 다니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집에서 너무 멀어서 □ ② 기관이 불만족스러워서 □ ③ 희망하는 기관에 다닐 수 있게 되어서 □ ④ 기관에 상급반이 없어서 □ ⑤ 아이가 적응을 못해서

문6. 현재 이용 중인 어린이집에 보육료를 제외하고 납부하고 있는 추가비용은 월 평균 얼마입니까? 상반기 이용 기간 평균으로 응답해주세요.

구분	추가 납부 비용		
1) 특별활동비 (A)	()원		
2) 기타 비용 (B)	()원		
3) 총계 (A+B)	()원		

문7. 현재 이용 중인 어린이집에서 추가 비용을 지	불하여 참여하고 있는 특별활동은 몇 개입니까? 총()개
문8. 그럼, 현재 이용 중인 어린이집에서는 자녀의 □ ① 모두 선택 가능 □ ② 일부만 선	
문9. 현재 이용 중인 어린이집에 입소하기 위해 대 ① 예 ☞문9-1번으로 ① ①	기한 경험이 있습니까? 아니오 ☞ 문10번으로
문9-1. (대기한 경험이 있는 경우) 그럼, 입소를 위	해 대기한 기간은 얼마 동안이었습니까? 총()개월
문10. 귀하께서 현재 이용 중인 어린이집 이외에 다 □ ③ 예 ☞문10-1번으로 □ ② 아니오 ☞SQ2의 ③(국공립)은 문16번으로, 문10-1. 현재 이용 중인 어린이집 이외에 대기 신청	SQ2의②, ③(민간/가정)은 문11번으로
문10 1. 현재 이중 중단 이런이답 이외에 내가 한경	3 중간 기단도 중 및 게임다까: 중(
문10-2. 대기 신청 중인 기관(문10-1번에서 응답) 주세요.	한 기관)의 유형은 무엇입니까? 신청 대기 중인 기관을 모두 응답해
□ ③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 ⑤ 가정어린이집(놀이방) □ ⑥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문10-3. 현재 이용 중인 어린이집 이외에 다른 기관	안에 대기 신청을 해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집에서 가까운 기관으로 옮기려고 ☞ 문11번 □ ② 현재 이용 중인 기관이 불만족스러워서 ☞ 문11번 □ ③ 국공립 기관(국공립어린이집/국공립유치원) □ ④ 현재 이용 중인 기관을 계속 이용할 수 없이 □ ⑤ 기타(구체적으로:	<mark>:10-4번으로</mark> │ 보내고 싶어서 ☞ 문11번으로
	경우)그럼, 현재 이용 중인 기관이 불만족스러운 이유는 구체적으로 6번으로, SQ2의②, ③(민간/가정)은 문11번으로)
□ ① 이용 비용이 비싸서 □ ② 원장이 마음에 안 들어서 □ ③ 교사가 마음에 안 들어서 □ ④ 기관 운영시간이 근무시간과 맞지 않아서 □ ⑤ 보육·교육프로그램이 마음에 안 들어서 □ ⑥ 특별활동/특성화프로그램이 마음에 안 들어. □ ⑦ 물리적 환경이 마음에 안 들어서 □ ⑧ 기타(구체적으로:	ч

♣ 공공형어린이집 인지도 및 공공성 인식

문11. 귀하는 현재 이용 중인 어린이집이 공공형어린이 ③ 알고 있었다 ☞문11-1번으로	이집으로 인증받은 기관인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 ② 잘 몰랐다 ☞문12번으로
문11-1.(문 11번에서 ①에 응답한 경우)공공형어린0 쳤습니까?	집으로 인증받은 기관이라는 점이 기관을 선택하는 데 영향을 미
① 매우 그렇다 ☞문11-2번으로 □ ③ 대체로 그렇지 않다 ☞문12번으로	② 대체로 그렇다 ☞문11-2번으로④ 전혀 그렇지 않다 ☞문12번으로
해당하는 번호를 각각 응답해 주십시오.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도에 따라 1순위와 2순위에 (1순위 :2순위 :)
□ ① 이용 비용이 저렴함 □ ② 자녀가 안전하게 보호됨(학대, 안전사고 예방 ·□ ③ 질 높은 보육프로그램이 운영됨 □ ④ 교사의 전문성 수준이 높음 □ ⑤ 기관이 투명하게 운영됨(각종 비리 없음, 정보 □ ⑥ 일하는 부모가 근로시간 동안 자녀를 믿고 말 □ ⑦ 취약계층(저소득층)가구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 ⑧ 법정 운영시간(07:30~19:30)과 운영 일수(연중 □ ⑨ 기타(구체적으로: □ ⑪ 별다른 장점이 없다 □ ⑪ 잘 모르겠다	공개 등) 길 수 있음 발달이 보장됨 운영)가 준수됨
문12. 공공형어린이집은 국공립시설(국공립어린이집 등 지원하고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하기 위한 등 1 제도에 대해 잘 알고 있다 ☞문12-1번으로 등 2 들어는 봤지만 내용은 잘 모른다 ☞문12-1번으로 등 전혀 모른다 ☞문13번으로	
문12-1. 그럼 공공형어린이집 제도를 어떻게 알게 되 □ 한 현재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을 통해 □ ② 인터넷(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보육포털)를 통해 □ ③ 매스컴(신문, TV 등)을 통해 □ ④ 공공기관 이용 시(주민자치센터 등) 알게 됨 □ ⑤ 주변 사람을 통해(주변 소개 등) □ ⑥ 기타(구체적으로:	
문13. 현재 이용 중인 어린이집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각각 응답해 주십시오.	= 무엇입니까? 중요도에 따라 1순위와 2순위에 해당하는 번호를 (1순위 :2순위 :)
□① 시설·설비가 마음에 들어서 □③ 교사와 원장이 신뢰가 가서 □⑤ 보육프로그램이 맘에 들어서 □⑦ 이용 비용이 저렴해서 □⑨ 주변 환경이 좋아서 □⑪ 안전한 먹거리(급간식)가 보장되어서 □⑩ 기타(구체적으로:	□② 집에서 가까워서 □④ 국가가 인증한 공공형어린이집이므로 □⑥ 운영 시간이 적절해서 □⑧ 보육프로그램이 좋아서 □⑩ 특별활동 운영이 마음에 들어서
문14. 귀하는 공공형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과 비	슷하다고 인식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문15번으로□ ③ 대체로 그렇지 않다 ☞문14-1번으로	② 대체로 그렇다 ☞문15번으로③ 전혀 그렇지 않다 ☞문14-1번으로

문14-1. (문14번에서 ③, ④에 응답한 경우)구체적 <u>9</u>	으로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되는 사항어
모두 응답해주세요.	
□ ① 교사와 원장의 전문성	□ ② 보육프로그램의 질
□ ③ 이용 비용	□ ④ 급간식 관리
□ ⑤ 건강관리	□ ⑥ 부모와의 소통(부모 상담 등)
□ ⑦ 기관에 대한 신뢰도(투명한 기관 운영 등)	□ ⑧ 기타(구체적으로:)
□ ⑨ 잘 모르겠다	
문15. 귀하께서는 만약 인근의 국공립어린이집에 자리 □ ① 예 ☞문15-1번으로	가 난다면 이용기관을 변경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 ② 아니오 ☞문16번으로
	_ © 0417 3 £106_±
문15-1.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옮기려는 이유는 구체적	으로 무엇입니까?

♣ 서비스 이용 만족도 및 수요

문16. 귀하는 현재 이용 중인 어린이집에 대해 각 항목별로 얼마나 만족합니까?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1) 원장	1	2	3	4	(5)
2) 교사	1)	2	3	4	(5)
3) 주변환경	1)	2	3	4	(5)
4) 시설·설비, 실내환경	1)	2	3	4	(5)
5) 교재교구 및 장비	1)	2	3	4	(5)
6) 내부 분위기	1)	2	3	4	(5)
7) 이용 비용	1)	2	3	4	(5)
8) 건강 관리	1)	2	3	4	(5)
9) 급간식 관리	1)	2	3	4	(5)
10) 안전관리	1)	2	3	4	(5)
11) 교육내용	1)	2	3	4	(5)
12) 부모참여(운영위원회 등)	1)	2	3	4	(5)
13) 부모교육/부모상담	1)	2	3	4	(5)

문17. 귀하는 현재 이용 중인 어린이집의 건강 · 영양관리에 대해 다음 각 문항별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건강·영양관리	매우 미흡	미흡	보통	만족	매우 만족
1) 실내 공간은 청결하게 유지된다	1	2	3	4	(5)
2) 놀이감은 청결하게 유지된다	1	2	3	4	(5)
3) 화장실과 세면장은 청결하게 유지된다	1	2	3	4	(5)
4) 조리실은 위생적으로 관리된다	1	2	3	4	(5)
5) 영유아의 급간식은 영양적으로 균형있게 제공된다	1	2	3	4	(5)
6) 급식 및 간식 제공 정보가 매일 공개된다	1	2	3	4	(5)
7) 아프거나 다친 영유아의 보호가 잘 이루어진다	1	2	3	4	(5)

문18. 귀하는 현재 이용 중인 어린이집의 보육환경/안전관리에 대해 다음 각 문항별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보육환경/안전관리	매우 미흡	미흡	보통	만족	매우 만족
1) 영유아용 가구와 설비가 구비되어 있다	1	2	3	4	6
2) 실외놀이터와 놀이기구가 갖추어져 있다	1	2	3	4	(5)
3) 다양한 보육활동 자료가 구비되어 있다	1	2	3	4	(5)
4) 등하원 차량이 안전하게 운행된다	1	2	3	4	(5)
5) 실내외 시설 및 설비가 안전하게 설치, 관리된다	1	2	3	4	(5)
6) 비상 사태에 대비한 설비(비상구, 비상약 등) 및 대처 방안이 갖추어져 있다	1	2	3	4	(5)

문19. 귀하는 현재 이용 중인 어린이집의 보육교사/상호작용에 대해 각 문항별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보육교사/상호작용	매우 미흡	미흡	보통	만족	매우 만족
1) 교사는 영유아를 존중하고 평등하게 대한다	1	2	3	4	(5)
2) 교사는 보육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다	1	2	3	4	6
3) 교사는 자녀와 상호작용을 잘 한다	1	2	3	4	(5)
4) 교사는 부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진다	1)	2	3	4	(5)

문20. 귀하는 현재 이용 중인 어린이집의 운영관리에 대해 다음 각 문항별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운영관리 (현재 이용 중인 어린이집은~)	매우 미흡	미흡	보통	만족	매우 만족
1) 재정 운영이 투명하게 이루어진다	1	2	3	4	(5)
2) 기타 필요경비(현장학습비, 행사비, 차량운행비 등)가 적정한 수준이다	1	2	3	4	(5)
3) 특별활동비가 적정한 수준이다	1	2	3	4	(5)
4) 부모에게 전반적인 운영을 공개한다	1	2	3	4	(5)
5) 어린이집 운영에 부모의 의사가 잘 반영된다	1	2	3	4	(5)
6) 부모참여 및 상담, 참관수업 등의 일정이 부모를 배려하여 계획된다	1	2	3	4	(5)
7) 어린이집은 지역사회 참여 및 연계 활동이 활발하다	1	2	3	4	(5)

_	귀하는 주변에 현재 이용 중인 어린이집을	– . – –		
	매우 그렇다		□ ③ 보통이다	
□ (4)	대체로 그렇지 않다	덯시 않나		
문22.	귀하는 공보육 기관(국공립어린이집)의 장점	넘은 무엇이라고 생각하	십니까? 중요도에 띠	라 1순위와 2순위에 해당
	하는 번호를 각각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	_ 2순위 :)
□ ①	이용 비용이 저렴함			
□ ②	자녀가 안전하게 보호됨(학대, 안전사고 예	방 등)		
□ ③	질 높은 보육프로그램이 운영됨			
□ ④	교사의 전문성 수준이 높음			
□ ⑤	기관이 투명하게 운영됨(각종 비리 없음, 정	영보 공개 등)		
□ 6	일하는 부모가 근로시간 동안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음		
	취약계층(저소득층 등) 가구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이 보장됨		
□ ⑧	법정 운영시간(07:30~19:30)과 운영 일수(연	연중 운영)가 준수됨		
□ 9	기타(구체적으로:)		
□ 10	별다른 장점이 없다			
□ (<u>1</u> 1)	잘 모르겠다			

*						질문을 드리? 도로 절대 시			니, 인	<u>.</u> 심하.	시고	성실하	게 대답	합해 주	시면 감시	하겠습	납니다.
DO1)	브ㅁ	님의 연형	려(마)	으 ^내	떻게 다	Ali linko											
DQII	T-L	부	8(L)	_ 0	동계 시	모											
	пL/		VIII				VIII										
	만(_)세			만(_)세										
DQ2)	부모	님의 최종	종 학	벽은 0	서떻게 5	티십니까?											
부		① 고졸	이하	Q	전문(2~	3년제)대학 졸		3) 4년제	대학 (기상	□4)	대학원	이상	_(5) t	비해당(부재	, 사망,	이혼)
모		① 고졸	이하	<u></u>	전문(2~	3년제)대학 졸		3 4년제	대학 (기상	4	대학원	이상	_(5) t	비해당(부재	, 사망,	이혼)
DQ3)	부모	님의 취임	업 상태	내는 대	음 중	어디에 해당	되십니	까?									
부		① 자영입 ⑤ 일 용 근			□② 고 □⑥ 무	용주 급가족종사자		□③ 상 □⑦ 무			규 출퇴	[근)		9 임시 8 비해			
모		① 자영입 ⑤ 일 용 근			□② 고 □⑥ 무	용주 급가족종사자		□③ 상 □⑦ 무			규 출퇴	[]근)		9 임시 8 비해			
DQ4)	부모	님의 직업	업은 5	무엇입	니까?												
부		① 사무직	4	<u></u>	생산직	□③ 전문적	딕	□④ 서	비스 !	및 판미	배직		주부	□6) 무직	□⑦ 7	타
모		① 사무직	4	<u> </u>	생산직	□③ 전문적	딕	□④ 서	비스 !	및 판미	배직	□(5)	주부	□6	무직	□⑦ 7	타
	1 149 4 250	의 월 평 9만 원 이)~299만 {)~499만 {	하 원]② 150~]⑤ 300~	마입니까? -199만 원 -349만 원 -599만 원		□3 ; □6 ; □9 (350~3	99만 위	원						
DQ6)	귀하	의 거주	지역원	은 어디	김입니까	?											
()시/도	E (_)시/	군/구 ()일반구:	: 수원/	/성남/	고양/부	천					
DQ7)	현재	어린이	집 이용	왕아동	의 출생	연월은 언제역	입니끼	- 해당	어린	이집0	세 두명	형 이상	의 자녀	가 다	니고 있다	면 첫째	l 자녀로
	응답	해주세요	2.														
()년	(_)월 /	만()세										
	응답 ① 첫째		이 동은 □②둘		에서 몇	! 번째 자녀입 □③ 셋째	니까	□4	넷째 (기상							
DQ9)	귀댁	의 총 지	녀수는	= 몇	명입니지	가? 총()명									
					•	▶ 조사에 침	남여해	두셔서	너대	단히	감사	합니다	•				

부록 2. 심층면담 질문지: 기관 대상

심층면담 질문지-어린이집 원장용 육아정책연구소

공공형어린이집 운영 실태 및 요구

1. 공공형어린이집 신청 동기 및 개선 효과 인식

- 1) 귀하께서 공공형어린이집을 신청하여 운영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 신청 배경
 - 공공형어린이집 선정에 따른 기대 효과
- 2)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이후 어린이집 운영상 주요 변화는 무엇입니까?
 - 이용자 현황 변화: 정원충족율 상승, 대기 아동수 증가 등
 - 기관 운영관련 변화: 운영 시간, 프로그램 운영 등 각종 규제 강화 등
 - 인력 확보 및 배치 관련 변화
 - 연혁별 비교
- 3)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이후 주된 개선 효과는 무엇입니까?
 - 재정 운영 측면
 -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 제고 측면
- 4) 귀 기관의 공공성 수준은 어떠하다고 판단하십니까?
- 보육 공공성의 주요 내용
- 국공립어린이집 대비 공공형어린이집의 차별성 여부

2.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요건 및 운영 기준의 적절성 인식

- 1) 현행(2015년 기준)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기준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십니까?
 - 참여 요건: 정원 충족율 80%이상 유지 등
 - 제외 대상: 월 임대료 및 상환액이 보육료 수입의 10%이상인 어린이집
 - 세부 선정기준: 1급 보육교사 비율 등, 가점 항목(10년 이상 근속 원장 등)
- 2) 선정 절차상 불합리한 점은 없습니까?
 - 신청접수(어린이집) → 선정요건 1차 확인(시군구) → 선정기관 추천(시군구)
 - 선정 심사단 운영
 - 선정 확정 등
- 3) 현행 공공형어린이집의 운영 기준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십니까?
 - 취약계층 우선 보육 및 입소 우선순위 부여, 운영 시간 준수 등
- 4) 현행 운영비 지원 방식 및 수준은 적절하다고 판단하십니까?
 - 지원 방식: 규모별 세분화
- 규모별 지원 수준
- 5) 공공형어린이집 사후품질관리는 운영상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자율공부모임, 교사 연수, 재무회계 컨설팅 등
- 6) 2011년 시범사업 이후 현재까지 관련 규정 개정에서 가장 주요한 변화를 야기한 내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개정의 타당성 등

3. 서비스 이용 만족도 및 기관 선호도 인식

- 1) 귀 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부모의 서비스 만족도는 어떠하다고 평가하십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영역에서 만족도가 크다고 평가하십니까?
- 2) 현재 이용 중인 부모의 만족/불만족 내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3) 기관 이용 부모들의 만족도는 공공형어린이집에 대한 지원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 4) 귀하는 영유아를 둔 부모들이 공공형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 수준으로 인식한다고 보십니까?

4. 공공형어린이집 운영 시 애로사항 및 요구

- 1) 공공형어린이집 운영상 주된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 2) 귀하는 향후 공공형어린이집 신청을 지속적으로 도모할 의향이 있습니까?

	의향이 없다면/의향이 있다면 각각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3)	공공형어린이집의 선정 및 운영관련 주된 개선 요구는 무엇입니까?
4)	귀하는 공공형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과 비교하여 공공성 차원에서 차이가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M-12
	차이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그 내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5)	귀하는 현재 운영 중인 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 수준으로 운영되기 위해 필
	요한 정부 지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린이집 원장용>

면담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응답해 주신 내용은 보다 나은 보육을 위하여 통계 목적 이외에는 절 대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니, 솔직하게 응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린이집 명	()어린이집
기관 유형	□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민간□ 가정□ 직장
기관 소재지	시/도 시/군/구
최종 학력	□ 고졸 미만 □ 고졸 □ 전문대졸 □ 4년제대학졸 □ 대학원 이상
성별 / 연령	□남 □여 / 만()세
현기관 근무기간	근무 기간 : 년 개월
총 경력(교사)	근무 기간 : 년 개월
전공	□유아교육 □보육 □ 아동학 □사회복지 □기타()

연구보고 2015-04

공공형어린이집 성과 평가 및 발전 방안 연구

발행일 2015년 **9**월

발행인 우남희

발행처 육아정책연구소

주 소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빌딩 3층, 4층

전화: 02) 398-7700 팩스: 02) 730-3313 http://www.kicce.re.kr

인쇄처 승림디앤시 02)2271-2581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ISBN 979-11-85941-29-5 93330